

2018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말레이시아 종합보고서

2018. 12.





**2018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말레이시아 종합보고서



## 주요 수출대상국(말레이시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Contents

조사요약 .....	1
일러두기 .....	3

###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9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 목적	
3. 기대 효과	
제2절. 조사 내용 및 방법 .....	11
1. 조사대상 선정 및 설계	
2. 가공식품 교역 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3.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 수집	
4.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제3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	13

### 제2장 조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말레이시아 개요 .....	19
1. 국가 개요	
2. 식품관련 법률 및 기관	
제2절. 가공식품 교역 현황 .....	35
1. 말레이시아 식품시장 동향	
2. 한국 식품 수출 동향 및 전망	

## 주요 수출대상국(말레이시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Contents

제3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	51
1. 수출계약 단계	
2. 서류준비 단계	
3. 선적/운송 단계	
4. 수입신고/검역 단계	
5. 통관/국내유통 단계	
제4절. 할랄식품 관리제도 .....	87
1. 제반 환경 및 정책 동향	
2. 할랄인증 규정	
3. 할랄인증 절차	
제5절. 식품표시 .....	105
1. 식품표시 기준	
2. 식품표시 예시	
3.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	
제6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	121
1. 말레이시아 식품기준 및 규격	
2.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3. 유해물질 관련 규정	
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제7절.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151
1. 식품안전 이슈	
2.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3. 말레이시아 수출 관련 Q&A	

## 주요 수출대상국(말레이시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Contents

### 부 록

1. 대한민국 신식품공전 식품 분류 .....	161
2. 말레이시아 관련정부기관 연락처 .....	171
3. 말레이시아 세관신고서 No.1 양식 .....	173
4. 위생증명요건 .....	175
5.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시 추가 준비서류 필요 식품 리스트 .....	183
6.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식재료 표시사항 규정 .....	187
7.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인증 발급 및 기준 관련서류 .....	197

### 표

[표 1-1] 한국의 식품공전에서 분류하는 가공식품 분류 .....	14
[표 2-1] 말레이시아 식품관련 인증제도 및 담당기관 .....	33
[표 2-2]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시장 동향 .....	40
[표 2-3]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 가공식품 품목별 시장 동향 .....	40
[표 2-4] 말레이시아 유통채널별 식품 매출 현황 .....	41
[표 2-5] 최근 5년 간 對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입 현황 .....	48
[표 2-6] 최근 3년 간 對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Top5 목록 .....	48
[표 2-7] 對 말레이시아 가공식품 수출 동향 .....	49
[표 2-8] 對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 동향 (상위 30 품목) .....	50
[표 2-9] 수입신고/검역 단계별 사항 .....	60
[표 2-10] 6단계 식품 화물 검사 .....	70
[표 2-11]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말레이시아 식품유형 분류 .....	122
[표 2-12]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검색 결과 예시 .....	148

## 주요 수출대상국(말레이시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Contents

[표 2-13] 유해물질 사용 기준 검색 결과 예시 .....	148
------------------------------------	-----

### 그림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	10
[그림 2-1] 말레이시아 지도 .....	20
[그림 2-2] 식품관련 법·규정 및 관련기관 .....	29
[그림 2-3] 말레이시아 가공식품 유통망 도식도 .....	42
[그림 2-4] 말레이시아 관광객 한국 입국 통계 추이 .....	44
[그림 2-5]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5단계 .....	52
[그림 2-6] 말레이시아 상표등록과 관련기관 허가 .....	54
[그림 2-7] 식품법(1983) 및 식품규정(1985)에 따른 식품 수입 절차도 .....	64
[그림 2-8] 말레이시아 수입식품 검역 관련 정부기관과 주요 업무 .....	66
[그림 2-9]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시스템 .....	68
[그림 2-10]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식품 수입 허가 .....	69
[그림 2-11] 수입식품 화물 입항 절차 .....	73
[그림 2-12] 검사 3, 4, 5 단계와 수입업자 창고 보관 .....	74
[그림 2-13] 재처리 및 재조정 과정 .....	75
[그림 2-14] 재표기 과정 .....	76
[그림 2-15] 재수출 과정 .....	77
[그림 2-16] 검사 및 압류 해제 과정 .....	78
[그림 2-17] 화물 반송 절차 .....	79
[그림 2-18] 말레이시아 식품 안전 정보시스템 및 식품 수입 과정 .....	81



## 주요 수출대상국(말레이시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Contents

[그림 2-19] IHAB 설립 계획을 밝힌 홈페이지	89
[그림 2-20]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관련정부, 협력기관	91
[그림 2-21] 말레이시아 할랄 공식 홈페이지	93
[그림 2-22]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절차 메뉴얼	95
[그림 2-23] 할랄인증 시 비용 위임 절차 메뉴얼	95
[그림 2-24] 인증 가이드라인(Sertu Guidelines)	96
[그림 2-25] 할랄식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	97
[그림 2-26] 인증 절차의 흐름	97
[그림 2-27] 할랄의 정의	98
[그림 2-28] e-Codes 가이드라인	99
[그림 2-29] 할랄 육류 및 가금류 생산 프로토콜	99
[그림 2-30] 할랄 보증 체계	100
[그림 2-31]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홈페이지	104
[그림 2-32]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인증 관련 디렉토리	104
[그림 2-33]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DB 수출지원정보 사이트(aT Kati)	147

## 조사요약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연방제 입헌군주국으로,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2015년 기준 3,120만 명이며, 민족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외국인 및 기타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관련 행정은 보건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식품안전품질국이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과 관련된 규정은 식품규정1985에 수록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회복한 후 연 6%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시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Urban Lifestyle'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산층 화이트칼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 고급 브랜드와 고급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국민의 64%가 하루에 한 끼 외식을 할 정도로 외식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며, 맛별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HMR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의 여파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소비는 다소 위축돼있는 상황이다. 값비싼 식사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쌀, 파스타 및 면류의 성장률이 높는데, 그 중 인스턴트 면류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시장에서는 2017년 기준 음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류,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과류, 간편식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낵류 중 초콜릿 코팅 비스킷의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로 아침 식사 대용식으로 사용되는 스낵바의 수요가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현지인의 한국사회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한국산 휴대용 통신기기의 시장점유율은 1-2위를 점하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한국 식품으로는 라면, 김치, 쌀, 유자차 같은 차류, 알로에 베라 주스, 바나나 우유, 김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 내 무슬림 소비자는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수출 시 할랄인증 취득이 필수는 아니나 점유율 상위권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할랄인증을 취득한 상품들이다. 할랄인증은 JAKIM이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가 JAKIM이 인정하는 할랄인증기관으로 승인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반입이 거부되는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은 관련 법규 위반이나 오염된 경우에 해당된다. 말레이시아에서 가공식품 반입이 거부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입 문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위해한 박테리아 혹은 미생물이 발견된 경우 또는 할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말레이시아로 가공식품 수출 시 통관 지연으로 인해 한국 수입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지만, 한류로 인해 한국제품 소비가 늘고 이로 인해 통관이 예전보다 다소 수월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수출 시 말레이시아산 원재료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식품 안전검사과정보다 수월해지는 점이 있다.

본 과제의 수행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수출진흥정책 및 수출전략 수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일러두기

## 1. 조사 진행 단계

조사 진행 단계	내용
<b>1. 조사계획 및 설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기본 방향 설정</li> <li>· 조사대상 항목 설정 및 조사 계획 수립</li> <li>·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 대상 및 항목 선정</li> </ul>
<b>2. 조사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 현황조사, 면접조사 등</li> <li>· 전문가 인터뷰, 자문 등을 통한 자료 조사</li> <li>· 전문가,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방문조사</li> </ul>
<b>3. 자료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된 자료 정리 및 분류</li> <li>· 자료에 대한 분석</li> <li>· 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인터뷰와 자문</li> </ul>
<b>4. 현지 방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현지 식료품점과 한인마켓 방문 인터뷰</li> <li>· 말레이시아 식품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품규정과 수입식품 검사 체계 등에 대한 인터뷰 자문 및 자료 요청</li> </ul>
<b>5. 결과 보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내용과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에 관한 보고서 작성</li> </ul>

## 2. 조사 내용

- 말레이시아 식품 관련 법률 및 기관
-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에 관한 일반현황
- 식품표시제도
- 말레이시아 수입식품 관리제도
- 말레이시아 할랄식품 관리제도
- 말레이시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조사
-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3. 조사 방법

### 3.1. 온라인 검색을 통한 문헌,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 조사

- 온라인 사이트 및 정보 검색
- 관련 문헌, 연구, 정보 검색 및 수집
- 수입식품 관련 법규 및 규정집 정보 수집
- 온라인상 말레이시아 정부기관 홈페이지 자료 수집

### 3.2.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

- 식품 제조, 유통 관련 업계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협조 요청
- 관련업체 방문 요청 및 현장 견학

### 3.3. 현지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조사

- 말레이시아 현지 식품수입·유통업체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현황 파악
- 말레이시아 식품관련 유관기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및 자료 요청
- 현지 시장, 마트, 점포 등 방문을 통한 수입식품 유통 실태 조사

### 3.4.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수집된 자료 취합 및 내용 분류
-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장별, 절별 내용 구성 및 보고서 작성
- 추가적인 자료 보완과 보고서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및 자료 부록으로 취합
- 정부자료 및 관련 법규나 규정 정보 번역 추가

### 3.5. 검토 및 수정·보완

- 작성된 보고서 내용 검토 및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오류 및 수정·보완사

## 항 도출

- 지적된 내용과 실제 자료 비교·검토 후 필요 시 수정 보완
- 번역 자료 번역 내용 검토·확인
- 최종 검토

# 제1장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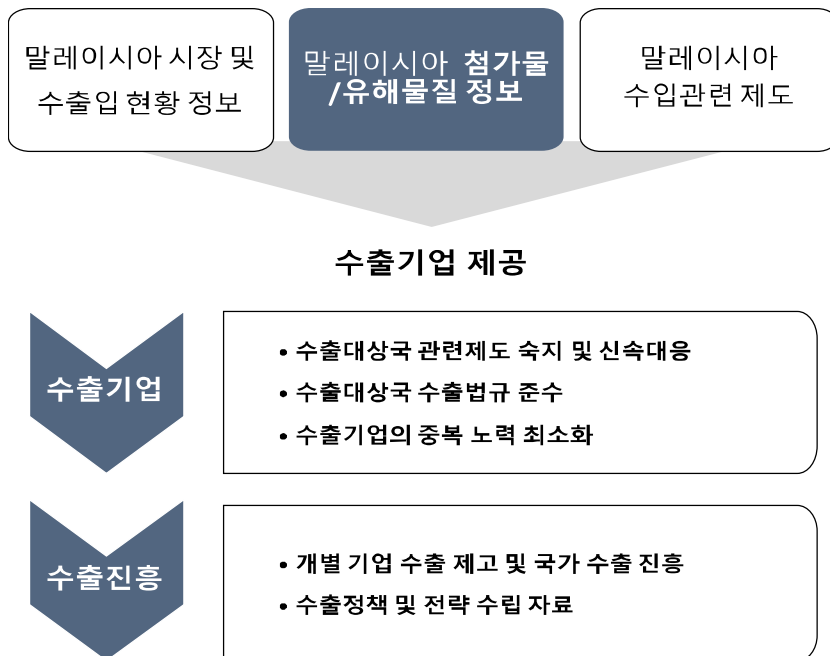
## ■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조사의 필요성

- 주요 수출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다양한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수출과정에서 부적합 등 수출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더불어, 식품관련제도 및 절차 등의 미숙지로 인한 통관억류 및 부적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어 중장기적으로 식품 수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제품 개발단계에서 정보 활용을 독려하고 예상되는 통관상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국제무역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다양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식품 수입관련 정보, 특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업데이트가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주요 수출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변동사항 업데이트와는 별개로 새롭게 추가되는 국가의 경우 전반적인 국가사항, 식품안전 기관 및 주요법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주요 규정, 식품안전 관련 기타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한 권의 보고서로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조사 목적

- 말레이시아의 수입 관련 법규·정보 수집 및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주요 규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 가공식품 수출 시 상이한 식품제도 및 규제로 인한 통관상의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데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수출기업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출 법규 위반 방지와 신속한 대응 및 개별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중복 노력을 최소화하며, 수출 정책 및 수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임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 ■ 3. 기대 효과

- 말레이시아의 관련 제도 및 정보 제공으로 수출 시 신속 대응
- 가공식품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관련 법규 준수
- 식품첨가물 DB 구축 등 정보 제공으로 개별기업의 정보 수집 중복 노력 최소화
-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효율화로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 수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출 진흥에 기여
- 기업 및 국가의 대외 신뢰도 증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 ■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 ■ 1. 조사대상 선정 및 설계

- 선정방법
  -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련 법규·정보와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규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18년에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선정함
  - 식품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사대상 가공식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조사 진행
- 조사 설계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보고서의 구조 및 내용 확정
- 식품 가공기업 및 수출회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 2. 가공식품 교역 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 조사내용
  - 말레이시아 수·출입 개요 및 양국 간의 교역상황
  - 수입검사제도(사전준비사항, 수입허가사항, 검역 및 통관절차 등)
  - 수입위생제도(식품위생기준, 검사기준 등)
  - 수입규제제도(수입관세, 식품표시제도 등)
  - 할랄식품 인증제도
  - 식품관련 정부기관 내역(기관명, 주소, 전화, 홈페이지, E-mail 등)

## ■ 3.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 수집

- 조사내용
  - 말레이시아 가공식품과 기준·규격(정의 및 분류, 식품기준·규격 등)
  -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가공식품 품목별 첨가물 규정현황(사용기준, 금지첨가물 종류 및 비교 등)

## ■ 4.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조사내용
  - 식품안전 이슈
  -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 말레이시아 수출 관련 기타 사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전문정보사이트,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 ■ 제3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 한국의 (신)식품공전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규정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등을 조사
  - 부록 1에 우리나라 식품공전 식품 분류가 제시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의 가공식품 분류체계는 한국의 가공식품 분류기준과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분류유형을 기준으로 이에 매칭되는 말레이시아 가공식품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법규 정보 등을 작성함
- 수출기업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주요 식품 유형, 기업의 주요 관심 가공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 수렴

[표 1-1] 한국의 식품공전에서 분류하는 가공식품 분류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개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5
2. 병과류	2-1. 아이스크림류	5
	2-2. 아이스크림믹스류	5
	2-3. 병과	1
	2-4. 얼음류	2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4
	3-2. 초콜릿류	5
4. 당류	4-1. 설탕류	2
	4-2. 당시럽류	1
	4-3. 올리고당류	2
	4-4. 포도당	1
	4-5. 과당류	2
	4-6. 엿류	3
	4-7. 당류가공품류	1
5. 잼류	-	2
6. 두부류 또는 묵류	-	4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20
	7-2. 동물성유지류	5
	7-3. 식용유지가공품	8
8. 면류	-	4
9. 음료류	9-1. 다류	3
	9-2. 커피	1
	9-3. 과일·채소류음료	3
	9-4. 탄산음료류	2
	9-5. 두유류	2
	9-6. 발효음료류	3
	9-7. 인삼, 홍삼음료	1
	9-8. 기타음료	2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2
	10-2. 영아용 조제식	1
	10-3. 성장기용 조제식	1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1
	10-5. 기타영·유아식	1
	10-6.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3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개수
	10-8. 임산·수유부용식품	1
11. 장류	-	14
12. 조미식품	12-1. 식초	2
	12-2. 소스류	4
	12-3. 카레(커리)	2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2
	12-5. 향신료가공품	2
	12-6. 식염	6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2
	13-2. 절임류	2
	13-3. 조림류	1
14. 주류	-	12
15. 농산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2
	15-2. 밀가루 류	2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2
	15-4. 시리얼류	1
	15-5. 찌낱	1
	15-6. 효소식품	1
	15-7. 기타 농산가공품	5
16. 식육가공품	16-1. 햄류	3
	16-2. 소시지 류	3
	16-3. 베이컨 류	1
	16-4. 건조저장육류	1
	16-5. 양념육 류	4
	16-6. 식육추출가공품	1
	16-7. 식육함유가공품	1
	16-8. 포장육	1
17.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7
	17-2. 알함유가공품	1
18. 유가공품	18-1. 우유류	2
	18-2. 가공유류	4
	18-3. 산양유	1
	18-4. 발효유 류	6
	18-5. 버터유	1
	18-6. 농축유 류	5
	18-7. 유크림 류	2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개수
	18-8. 버터류	3
	18-9. 치즈류	2
	18-10. 분유류	4
	18-11. 유청류	3
	18-12. 유당	1
	18-13.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1
19. 수산가공식품류	19-1. 어육가공품류	6
	19-2. 젓갈류	4
	19-3. 건포류	3
	19-4. 조미김	1
	19-5. 한천	1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1
20. 동물성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2
	20-2. 곤충가공식품	1
	20-3. 자라가공식품	3
	20-4. 추출가공식품	1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 벌꿀류	4
	21-2. 로얄젤리류	2
	21-3. 화분식품	2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2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3
	22-3. 만두류	2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1
	23-2. 기타가공품	1
24. 그 외 분류	장기보존식품	3
	식품원료	2
	그 외 분류	1
<b>총 가공식품 유형 수</b>		<b>277</b>

# 제2장 조사수행 내용 및 결과





# 제1절

## 말레이시아 개요

### 1. 국가 개요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연방제 입헌군주국,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직할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중국해로 나뉜 말리에 반도 지역과 보르네오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해상국경은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인접해 있음
-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지만, 연방정부기관들은 푸트라자야에 있음<sup>1)</sup> (그림 2-1 참고)

#### 가. 일반사항<sup>2)</sup>

- 국명 :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
- 위치 : 동남아 적도 북단
- 지리 : 말레이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약 13만km<sup>2</sup>)와 보르네오섬

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7%90%EB%A0%88%EC%9D%B4%EC%8B%9C%EC%95%84>

2) KOTRA, 국가정보, 말레이시아, <http://news.kotra.or.kr/pdfView/nationInfo/nationPDF/101076/101076.pdf>

북서부의 사라왁 및 사바로 이루어지는 동말레이시아(약 20만km<sup>2</sup>)로 구성

- 면적 : 330,252 km<sup>2</sup>(한국의 3.3배 / 한반도의 1.5배)



[그림 2-1] 말레이시아 지도<sup>3)</sup>

- 기후 : 전형적인 열대우림형으로 고온다습하며, 연 평균 기온은 27°C, 연 평균 강수량은 2,410mm임. 말레이반도의 동해안에서는 북동 몬순기(10월~2월)에 상당한 집중 강우를 볼 수 있음
- 수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인구 : 3,120만 명(2015년 기준)
- 주요 도시/지역 : 쿠알라룸푸르(167만 명), 셀랑고르주(565만 명), 조호주(139

3) CIA; KOTRA 국가정보-말레이시아 1p. 재인용

만 명), 페락주(242만 명), 페낭주(127만 명), 사바주(337만 명), 사라왁주(254만 명), 이뵤(66만), 말라카(48만)

- 민족 : 말레이족(50.1%), 중국계(22.6%), 토착민(11.8%), 인도계(6.7%), 기타(8.8%)<sup>4)</sup>
- 언어 :
  - 공용어: 말레이어(Bahasa Malaysia)
  - 상용어: 영어
  - 약 14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말레이시아 반도 40개, 사바 54개, 사라왁 46개)
- 종교 : 이슬람교(62%, 국교), 불교(21%), 기독교(9%), 힌두교(6%), 기타(2%)
- 건국일(독립일) : 1957년 8월 3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 국가형태 : 연방 입헌군주제(Federated Constitutional Monarchy)
  - 3개주 연방 직할지, 서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11개주 및 동말레이시아 2개주 등 13개주로 구성
    - 연방직할지 : 쿠알라룸푸르('74년 설정), 라부안('84년 설정). 푸트라자야('01년 설정)
    - 지방정부가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상당한 실권 행사
      - \* 말레이계 9개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 4개주(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에는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 존재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총리 : Mohamad Najib Bin Tun Abdul Razak(재무부 장관 겸임)

---

4)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7%90%EB%A0%88%EC%9D%B4%EC%8B%9C%EC%95%84>

- 국가 원수 : Sultan Muhammad V(15대 국왕, 2016.12.13 취임)
  - 말레이계 9 개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 나. 정부기관<sup>5)</sup>

-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 직할구로 구성된 '선출제'(순번제) 국왕이 있는 연방제 입헌군주국으로 9개 주 술탄이 모여 5년에 한 번씩 국왕을 선출
  - 선출된 국왕은 수상과 내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말레이시아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통솔권을 가짐
- 말레이시아 주요 정부기관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나뉨

### ① 행정부

- 총리(재무부장관 겸임)와 부총리(내무부장관 겸임)가 일부 부처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총 24부로 구성되어 있음

### ② 입법부

- 말레이시아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 나누어짐
- 각 주 별로 술탄을 두고 독립된 주 헌법과 의회를 가지고 있음
- 연방 정부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은 총리를 포함해서 총 63석 중 37석을 국왕이 임명하고, 26석은 13개 주에서 2명씩 임명함
- 하원의 경우에는 222석으로(2018년 현재) 5년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됨
- 상원의원은 공공분야, 전문분야나 상업, 산업, 농업, 문화, 사회적 활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 중에서 임명되고 있음

---

5) KOTRA, 국가정보, 말레이시아,, p.5.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6>)

### ③ 사법부

- 말레이시아 법은 영국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국왕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총리가 추천한 고등법원 판사도 임명함
  - 사법부는 연방법원, 상소법원, 고등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당조직과 관련해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로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이 국가의 최고 목표로 다양한 인종 그룹을 대표하는 14개 정당 연합체인 국민전선(BN)이 정권을 잡고 있음
- 단, 최근 말레이계 우대 정책(부미푸트라)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계와 말레이계 불만 계층의 지지를 받은 야당연합이 급부상하고 있음

### 다. 경제지표<sup>6)</sup>

- 명목 GDP : 3,124억 달러(2013년), 3,093억 달러(2014년), 2,721억 달러(2015년), 2,964억 달러(2016년), 3,145억 달러(2017년)
- 실질경제성장률 : 4.7%(2013년), 6.0%(2014년), 5.0%(2015년), 4.2%(2016년), 5.9%(2017년)
- 1인당 명목소득 : 10만 7,101달러(2013년), 1만 107달러(2014년), 8,877달러(2015년), 9,390달러(2016년), 9,818달러(2017년)
- 실업률 : 3.1%(2013년), 2.9%(2014년), 3.2%(2015년), 3.5%(2016년), 3.5%(2017년)
- 물가상승률 : 2.1%(2013년), 3.1%(2014년), 2.7%(2015년), 2.1%(2016년), 2.5%(2017년)

---

6) KOTRA 국가별경제지표, 말레이시아 (<http://poll.einfomax.co.kr/kotra.html#/country>)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말레이시아, 국가정보전문, 경제지표(<http://news.kotra.or.kr/pdfView/nationInfo/nationPDF/101076/101076.pdf>) 참조



- 화폐단위 : Ringgit Malaysia(RM)
- 환율 : US\$ 1 = RM 4.14(2018년 10월 12일 현재)
- 총 외채 : 2,092억 달러(2013년), 2,118억 달러(2014년), 1,860억 달러(2015년), 1,942(2016년)
  - 환율 영향으로 2015년 외채 달러가치 하락
- 외환보유고 : 1,349억 달러(2013년), 1,160억 달러(2014년), 953억 달러(2015년), 945억 달러(2016년), 1,024억 달러(2017년)
- 산업구조 : 서비스업 51.0%, 제조업 22.4%, 광업 13.8%, 농업 11.1%, 건설업 1.7%(2017년)
- 교역규모
  - 수출 : 1,999억 달러(2015년), 1,897억 달러(2016년), 2,179억 달러(2017년)
  - 수입 : 1,759억 달러(2015년), 1,686억 달러(2016년), 1,952억 달러(2017년)
  - 무역흑자 : 240억 달러(2015년), 248억 달러(2016년), 227억 달러(2017년)
- 교역품
  - 수출 : 전자집적회로, 석유/가스, 석유제품, 팜유, 석유정제품 등
  - 수입 : 기계류 및 운송장비, 전기전자 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 농업현황<sup>7)</sup>
  - 말레이시아의 농촌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기준 전체인구의 25.6%(약 700만 명)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 이상이지만, 생산되는 상품의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8.5%로 상대적 비중은 작음

---

7) AT Kati 홈페이지(www.kati.net) (말레이시아 국가개요: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1) 국가→아시아→말레이시아→국가개요→농업현황

- 농산물에서는 팜유, 쌀, 고무 순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음
- 농산물 중 주요 수출품목은 팜유 및 그 외 부산물,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옥수수임

## 라. 협정 가입

- 말레이시아는 ASEAN 10개국에 소속되어 있어 역내 자유무역협정 (AFTA: Asean Free Trade Agreement) 공동효과특혜관세(CEPT) 조약에 따라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를 실시하고 있음<sup>8)</sup>
  - ASEAN 회원 가맹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2008년부터 대상품목 중 99%에 대하여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함
  - 목제품, 자동차, 고무제품, 섬유, 농산물 가공품, 수산업, 일렉트로닉스, E-ASEAN, 헬스케어, 항공, 관광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2007년 1월에 모두 관세를 철폐함
  - 신규 가맹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인하도 진전되어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적용 품목의 80% 이상의 역내 관세가 5% 이하로 인하됐으며, 동 국가들은 2015년 역내 무관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양자 간 FTA를 체결한 국가 : 일본('06년7월), 파키스탄('08년 1월) 뉴질랜드('10년 8월), 인도('11년 7월), 칠레('12년 2월), 호주('13년 1월), 터키('14년 4월, 서명)
- ASEAN과 다자간 FTA를 체결한 국가: 한국('09년 9월), 일본('09년 12월), 중국('10년 1월), 인도('10년 1월), 호주/뉴질랜드('10년 1월)

8) KOTRA, 국가정보, 말레이시아, <http://news.kotra.or.kr/pdfView/nationInfo/nationPDF/101076/101076.pdf>

- 한-아세안 간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2007년에 체결됨
-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간 FTA는 현재 협상(검토) 중 (2018년 10월 현재)
- 한-아세안 간 FTA
  - ASEAN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로 한-말레이시아 간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짐
  - 한-ASEAN FTA는 2009년 이래 총 12차례의 이행위원회와 4차례의 임시위원회를 개최하며 일반 및 민감품목군의 관세철폐 이행 등에 대하여 논의함
  - 개정된 내용으로는 관세 법령 공표,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역내부가가치 기준 계산방식 기업별 선택, 사전심사 발급 등 무역 원활화 규정 도입 등이 포함됨

#### 마. 한국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결협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 협정(1962년)</li> <li>▪ 문화 협정(1965년)</li> <li>▪ 항공 협정(1967년)</li> <li>▪ 이중과세방지 협정(1983년)</li> <li>▪ 사증면제 협정(1983년)</li> <li>▪ 과학기술협력 협정(1985년)</li> <li>▪ 투자보장 협정(1988년)</li> <li>▪ 해운 협정(1988년)</li> <li>▪ 자원협력 양해각서(1995년)</li> <li>▪ 범죄인 인도조약(2013년)</li> </ul>
--	---

- 교역규모
  - 對 말레이시아 수출 : 85억 8,776만 달러(2013년), 75억 8,261만 달러(2014년), 77억 3,529만 달러(2015년), 75억 3,335만 달러(2016년), 80억 4,499만

달러(2017년), 60억 5,464만 달러(2018년 10월 현재)

- 對 말레이시아 수입 : 110억 9,582만 달러(2013년), 110억 9,790만 달러(2014년), 86억 943만 달러(2015년), 75억 777만 달러(2016년), 87억 1,472만 달러(2017년), 68만 2,527달러(2018년 10월 현재)
- 주요 교역품(우리나라 수출품)
  - 2014년 : 집적회로반도체(6억 3,800만 달러), 평판디스플레이(5억 9,000만 달러), 휘발유(5억 3,000만 달러), 기타 정밀화학 원료(3억 2,000만 달러), 경유(3억 1,000만 달러) 등
  - 2015년 : 경유(12억 7,000만 달러), 집적회로반도체(8억 1,000만 달러), 철구조물(3억 8,000만 달러), 평판디스플레이(3억 2,000만 달러), 기타 정밀화학 원료(3억 달러) 등
- 주요 교역품(우리나라 수입품)
  - 2014년 : 천연가스(32억 달러), 중유(14억 9,000만 달러), 집적회로반도체(8억 7,000만 달러), 원유(4억 5,000만 달러), 컴퓨터 부품(3억 7,000만 달러)
  - 2015년 : 천연가스(21억 3,000만 달러), 집적회로반도체(10억 달러), 중유(8억 5,000만 달러), 개별소자 반도체(3억 8,000만 달러), 컴퓨터 부품(3억 1,000만 달러)
- 말레이시아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신고기준)
  - 2억 8,066만 7천 달러(2014년)
  - 5,466만 9천 달러(2015년)
  - 2억 3,907만 2천 달러(2016년)
  - 3억 9,778만 3천 달러(2017년)
  - 80억 5,732만 달러(1980~2017년 누계)
- 우리나라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투자(신고기준)

- 2,823만 달러(2014년)
- 8,954만 달러(2015년)
- 75억 9,950만 달러(2015년 누계)
- 교민
  - 약 1만 5,000여 명

## ■ 2. 식품관련 법률 및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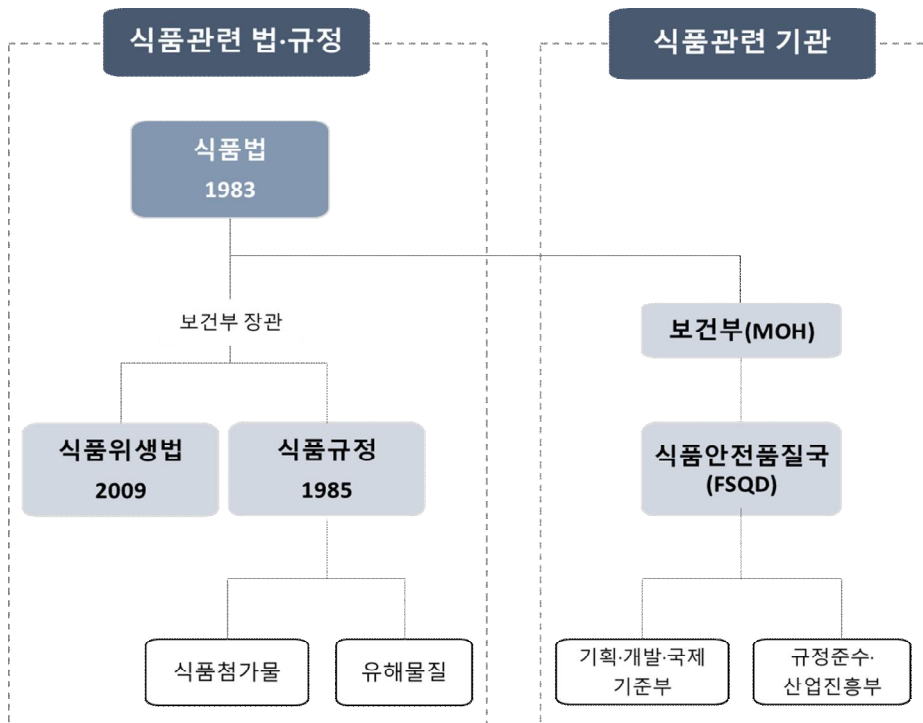
### 가. 식품관련 법률 체계<sup>9)</sup>

- 식품법 1983(Food Act 1983)[법률 281]
  - 식품의 제조, 판매, 소비에서 안전한 식품과 정직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 식품위생법 2009(Food Hygiene Regulations 2009)
  - 식품법 1983에 의거 해당 부처 장관이 식품위생법 2009로 명칭되는 규정을 제정
  - 이 법은 1) 식품 시설의 등록, 2) 식품 시설의 경영 및 유지관리: 식품 시설의 소유주 또는 점유자의 의무, 식품 시설에 대한 일반 요건, 식품 시설에 대한 특별 요건, 3) 식품 취급자: 식품 취급자의 교육, 건강 진단, 건강 상태, 복장 및 개인위생, 식품의 보호, 4) 특정 식품의 취급 제조, 포장, 제공, 저장 및 판매의 특별 요건, 5) 식품의 운반, 6) 기타 등을 다루고 있음
- 식품규정 1985(Food Regulations 1985)

---

9) Food Safety and Quality Program of the Ministry of Health Malaysia 사이트에 식품법 1983(Food Act 1983), 식품위생법 2009(Food Hygiene Regulations 2009), 식품규정 1985(Food Regulations 1985)이 제시되어 있음. <http://fsq.moh.gov.my/v5/ms/category/perundangan/>

- 식품법 1983의 제 34절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장관이 식품규정 1985로 명칭되는 규정을 제정
- 제 1편 서문, 제 2편 보증, 제 2A편 생명공학을 통해 생산된 식품의 판매에 대한 승인, 제 3편 시료 채취 절차, 제 4편 표시, 제 5편 식품첨가물 및 영양 강화제, 제 6편 식품 포장, 제 7편 비의도적인 성분, 제 8편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 사항, 제 9편 물, 얼음 또는 증기의 사용, 제 10편 기타로 구성됨



[그림 2-2] 식품관련 법·규정 및 관련기관

- 이 중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규정은 '제 5편 식품첨가물 및 영양강화제'(Food Additives and Added Nutrie)에 수록되어 있음

- 여기에는 식품첨가물, 보존료, 살균제, 착색료, 향료, 향미증진제, 산화방지제, 식품개량제, 영양강화제, 비피더스균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 또한, 이와 관련되어 별표 6, 별표 6(A),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의 내용이 부록으로 "Schedule"에 수록됨 (자세한 사항은 aT Kati 농식품수출정보 → 제도 →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 원문보기 중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말레이시아 편에서 확인 가능)
- 이 중 유해물질과 관련된 규정은 '제 7편 비의도적인 성분'(Incidental Constituent)에 수록되어 있음
  - 여기에는 비의도적인 성분, 금속성 오염물질,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 미생물과 그 독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 농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 또한, 이와 관련되어 별표 13, 별표 14, 별표 A, 별표 15, 별표 16, 별표 16B, 별표 17, 별표 20 A, 별표 21 표 II, 별표 21 A 표 II, 별표 22 표 II, 별표 23의 내용이 "Schedule"에 수록됨 (자세한 사항은 aT Kati 농식품수출정보 → 제도 →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 원문보기 중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말레이시아 편에서 확인 가능)
- 제 8편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에 식품유형이 제시되어 있음

## 나. 식품관련 정부기관<sup>10)</sup>

- 말레이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alaysia)<sup>11)</sup>
  - 국민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태의 건강 상태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10) 부록 2에 식품 인증 및 안전관련기관 주소와 연락처 등이 제시되어 있음

11) <http://www.moh.gov.my/english.php>

- 이를 위해 사후 치료 혹은 재활 서비스 등을 넘어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전 촉진 혹은 금지 정책 등을 도입하거나 제공
- 특히 사회적 약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임
- 식품안전품질프로그램(Food Safety and Quality Program of the Ministry of Health Malaysia)<sup>12)</sup>
  -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식품안전품질국(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FSQD)의 위상을 높임
  - FSQD는 식품법 1983(Food Act 1983)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식품분석법 2011(Food Analyst Act 2011)을 근거로 식품의 제조, 판매, 소비에 있어서 식품 위해 및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 FSQD 산하에 기획·개발·국제기준부서(Planning, Policy Development and Codex Standard Division)와 규정준수·산업진흥부(Compliance and Industry Development Division) 두 개의 부서가 있음
    - 이 두 개의 부서 아래에 여덟 개의 하위 부서가 있음
    - 소통 및 소비자주권(Communication and Consumerism), 정책 및 연구(Policy and Research), 표준 및 국제규격(Standard and Codex), 감시 및 실험(Surveillance and Laboratory),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국내규정 준수(Domestic Compliance), 수입 및 수출(Import and Export)
    - 이 부서들의 인력은 식품공학자, 영양학자, 의료공무원, 세균학자, 환경보건공무원, 정보통신공무원, 보건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준 및 국제규격부서(Standard and Codex Branch)
  - 2011년에 국제규격 및 국제표준진흥부서(Codex & International and

12) [http://fsq.moh.gov.my/v5/images/filepicker\\_users/5ec35272cb-78/Penerbitan/laporan%20tahun/AR\\_FSQD-2011-web.pdf](http://fsq.moh.gov.my/v5/images/filepicker_users/5ec35272cb-78/Penerbitan/laporan%20tahun/AR_FSQD-2011-web.pdf)



Standards Development Section)가 표준 및 국제규격부서로 명칭이 바뀜

- 이 부서는 국제식품규격 및 다른 주요국가들의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식품규정 1985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 수행
  - 식품법 1983년을 바탕으로 식품관련 입법 관보 발표
  - 생산품 분류 및 표시 검토 수행
  - 국제식품규격회의에 대표로서의 역할
  - 유지류 국제식품규격을 위한 주최국(말레이시아) 대표로서의 역할
  - 아세안국가의 식품안전활동의 조정자 역할

#### 다. 식품관련 인증

- 식품관련 주요 인증제도는 할랄, GMP, HACCP 등이 있음
  - The Malaysian Standard 1500: 2004 "Halal Food - Production, Preparation, Handling And Storage"는 할랄제품(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살,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JAKIM(Jabatan Kemjahuan Islam Malaysia)이 담당
  -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은 식품/의약품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규격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식품안전품질국(FSQD)이 담당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은 식품안전을 위한 예방적 접근 시스템으로 보건부(MOH) 식품안전품질국(FSQD)이 담당
- 이 밖에도 김, 꿀, 땅콩버터 등 특정 수입품은 Heal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Analysis 등의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함
- 수입업자와 포워딩업체는 식품 수입 전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시스템 (FoSIM)에 등록해야 함
  - FoSIM은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 및 감시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웹 기반 정보시스템

- 말레이시아의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 Department)의 세관정보시스템(CIS)과 연결되어 수입업자, 포워딩업체 및 공무원이 식품 수입활동을 전자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임

[표 2-1] 말레이시아 식품관련 인증제도 및 담당기관

	할랄제품 기준	GMP	HACCP
기관명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FSQD(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주소	G and 3rd Floor, Block 2200, Entreprise Building 3, Persiaran Apec, 63000 Cyberjaya	Level 3, Block E7, Parcel E, 62590 Putrajaya	
전화	603 8892 5000	603 8885 0797	603 8883 3888
팩스	603 8892 5005	603 8885 0790	603 8889 3341/3815
Email	webmaster@halal.gov.my	fsq-division@moh.gov.my	
URL	www.halal.gov.my, www.islam.gov.my	http://fsq.moh.gov.my	



## 제2절

# 가공식품 교역 현황

### 1. 말레이시아 식품시장 동향

#### 가. 시장 특성

##### 1)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 6% 내외의 경제성장</li><li>▪ 1인당 GDP 2012년 1만 달러 돌파</li></ul>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인구 지속적 증가</li><li>▪ 도시지역 거주자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음</li><li>▪ 'Urban Lifestyle'이 지방으로 확산</li></ul>
소비 고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산층 화이트칼라 계층 증가</li><li>▪ 해외 고급 브랜드와 고급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 증가</li></ul>
친환경 소비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li><li>▪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li></ul>

- ① 경제성장 : 2015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서 회복한 후 연 6%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1인당 GDP 역시 2012년 최초로 1만 달러를 돌파함
- ② 도시화 : 말레이시아 도시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도시지역 거주자

의 소득수준이 지방 거주자의 소득수준보다 높고, 소비액 또한 2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Urban Lifestyle'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음
- ③ 소비 고급화 : 경제성장, 도시화 등으로 중산층 화이트칼라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외 고급 브랜드와 가전, 자동차 등 고급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④ 친환경 소비의 확산 : 소득의 증가에 따라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열, 바이오매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소비 고급화와 친환경 소비의 확산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말레이시아에서 친환경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2) 현지 식품시장 동향

- 말레이시아 Taylor University 연구진이 Malaysian Food Barometer (MFB)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의 64%는 하루에 한 끼 외식을 하며, 나머지 집에서 먹는 사람 중에서도 12.5%는 밖에서 구매해서 먹는 것으로 나타남<sup>13)</sup>
  - 즉, 말레이시아는 전체 국민의 64%가 하루에 한 끼 외식을 할 정도로 외식문화가 발달되어 있음
  -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 및 해산물, 육류, 과일, 야채 등의 HMR(Home Meal Replacement)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의 여파로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어 간식, 아이

---

13) Taylor's University Study Finds That More Than Half Of The Ethnic Population Of Malaysia Are Exposing Themselves To Lifestyle Diseases  
(<https://university2.taylors.edu.my/news-events/the-malaysian-food-barometer-study-by-taylors-university>)

스크림 등 필수재가 아닌 식품의 소비 증가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불안정한 유가, 식용유, 설탕, 밀가루에 대한 보조금 삭감으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함. 제조업체는 해당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가공 식품 가격 또한 상승세임
-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식품가공업체들은 로드쇼, 무료 증정, 가격 할인 및 판촉, 요리 시연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유명 인사 및 요리사를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SNS를 통한 마케팅을 강화시키고, 기존 취급 제품과 다른 신제품 출시에 주력하고 있음
- Lazada, 11st, Shopee 등 다양한 온라인숍에서 식료품 판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SAM's Groceria, Tesco 등에서는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장려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제시하고 있음

## 다. 식품관련 주요 정부정책

### 1)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인센티브

- 농장, 생산 및 가공식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가 도입되고 있음. '식품생산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회사와 식품생산을 수행하는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감세 혜택을 받음
  - 식품생산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투자하는 회사는 그 해의 투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음
  - 식품생산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10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5년 법정수입에 대해 완전 면세가 고려됨. 면세 기간은 회사가 법정 소득을 받은 첫 해부터 시작이 되며, 면세 기간 전에 발생한 손실과 면세 기간동안 발생한 손실은 면세 기간 이후에 이월이 가능함

## 2) 할랄식품 생산 인센티브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할랄식품 생산 장려
  - MS 1500:2004에 따른 JAKIM 할랄인증을 받은 회사는 5년 내에 발생하는 자본 지출의 100%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ITA)를 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산업 개발 마스터플랜(Halal Industry Master Plan 2008-2020)'을 수립하여 할랄인증에 대해 자국 내 할랄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부문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좋은(Good) 할랄'이라는 의미의 '토이반 할랄(Halalan Thoyyiban)'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점차 할랄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
    - 토이반 할랄(Halaalan Thoyyiban) : 무슬림에 허용되며(permissible), 건강에 좋고(wholesome), 안전하며(safe), 양질(quality)이라는 의미

## 3) 상품·용역세(GST) 철폐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 6월부터 '상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 Tax)를 철폐함
  - 2015년 도입된 GST는 그동안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철폐함
  - 대신 2018년 9월 1일부로 판매·용역세(SST, Sales and Service Tax) 제도 본격 시행(2018년 10월 현재)<sup>14)</sup>
    - GST는 개별 생산·유통의 단계에서 모든 제품 가격에 붙는 세금인데 반해, SST는 소비자나 제조사에만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음

---

14) Kotra 홈페이지, 뉴스, 투자진출, 기사: 말레이시아 판매용역세(SST) 토크아보기(2018-9-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작성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9503>)

#### 4) 건강과 비만에 대한 정책

- 영국 의학잡지 The Lancet는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비만인 나라로 18세 이상 말레이시아인의 절반 가까이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보고함
  - 코코아음료나 시리얼 등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을 어릴 때부터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음식점 운영시간 제한이나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에 대한 소비세 도입 등 식습관 변화를 위한 정책들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함
- 이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스포츠음료인 100PLUS는 최근 설탕을 줄인 제품을 출시함
- 정부정책과 소득 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라.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시장 동향

-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시장 규모는,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7년에 전년 대비 1.3% 증가한 87억 5,700만 달러로, 전체 GDP에서 2.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 간 연도별 시장 동향은 [표 2-3]과 같음
-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시장에서는 2017년 기준 음료가 5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류(20.6%),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12.3%), 제과류(11.0%), 간편 조리식품(0.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2]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시장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규모 변화	7,383.0	7,701.1	8,174.8	8,649.2	8,757.4
GDP 대비 비중	2.5	2.3	2.8	2.9	2.8
성장률	5.8	4.3	6.2	5.8	1.3

출처 : Euromonitor, IMF (Kotra 해외시장뉴스,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시장동향 재인용)

[표 2-3]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 가공식품 품목별 시장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제과류	921.2	920.2	937.3	954.5	967.1	11.0%
음료	3,992.5	4,249.3	4,591.1	4,919.6	4,887.9	55.8%
면류	1,496.3	1,545.4	1,623.9	1,714.0	1,807.2	20.6%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	950.7	964.4	1,000.6	1,038.9	1,072.8	12.3%
간편조리식품	22.3	21.8	21.9	22.2	22.4	0.3%
합계	7,383.0	7,701.1	8,174.8	8,649.2	8,757.4	100%

출처 : Euromonitor, IMF (Kotra 해외시장뉴스,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시장동향 재인용)

#### 마. 수입식품 유통구조

- 말레이시아 식품유통시장은 소규모 소매점, 잡화점 등 전통 소매채널이 전체시장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음
  -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등의 유통채널이 약 43%인 반면, 편의점은 약 1%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의 유통은 편의점, 할인점, 대형마트, 전통 식료품 소매

업체 등으로 분류되는 식료품 소매업체와 건강미용용품 전문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포함하는 비식료품 소매업체로 이루어져 있음

[표 2-4] 말레이시아 유통채널별 식품 매출 현황<sup>15)</sup>

단위: US\$/(million)

구분	매출액				
	2012	2013	2014	2015	2016
식음료매장	264	273	278	246	245
편의점	2,319	2,416	2,457	2,175	1,775
백화점	168	174	176	156	155
전자상거래	73	47	29	71	71
하이퍼마켓/슈퍼마켓	11,272	11,693	11,898	10,461	9,602
기타	946	927	896	757	724

출처 : aT “말레이시아 소비자 조사-딸기, 배, 참외, 유아음료, 김, 김치” 보고서, (원자료 : Global Data / www.globaldata.com)

- 전통 식료품 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던 것이 점점 현대 식료품 소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 비식료품 소매업체를 통한 유통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말레이시아 소매업체 분류는 [그림 2-3]과 같음
- 유통채널 일반
  - 말레이시아에서 소비유통은 직판, 온라인 판매 등 비점포 유통방식보다 점포를 통한 점포 유통방식이 활성화되어 있음
  - 점포 유통방식의 규모가 직판, 인터넷 쇼핑 등 비점포 유통방식의 1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15) Kati 홈페이지 게시자료(www.kati.net), (Kati→국가→아시아→말레이시아→국가개요→유통현황;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1)



[그림 2-3] 말레이시아 가공식품 유통망 도식도

출처 : Kotra 해외시장 뉴스, 말레이시아 가공식품시장동향

- 즉, 온라인쇼핑, 홈쇼핑 등 비점포 형태의 소매유통은 아직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고, 수도권 중심의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외국 온라인쇼핑 문화가 유입되면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 식품 및 잡화 유통
  - 식품 및 잡화 유통은 주로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편의점의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중 하이퍼마켓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주도하여 전체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선도기업들로는 Dairy Farm, AEON, The Store Corp Bhd, Carrefour,

TESCO 등이 있음

- 홍콩계 기업인 Dairy Farm은 시장선두업체인 Giant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계 기업 AEON은 Jusco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기업들은 전국적 체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산층 소비자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음
- 식품 및 잡화 유통 관련 특징
  - 하이퍼마켓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체인도 하이퍼마켓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임
  - 다국적 유통기업이 진출하여 선진적인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하이퍼마켓 신규진출에 대한 정부규제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임. 또한, 인수합병으로 대기업들의 시장지배가 심화되어 신규진출에 애로가 있음
  - 기업 간 브랜드 및 가격경쟁 심화
  - 중산층의 성장으로 다양하고 위생적인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지방지역까지 현대적 유통체인의 진출 가능성이 커짐
  - 식품전문점, 할인마트 등 새로운 컨셉의 유통체인 진출 유망
  - Private Labelling (Private Brand, PB)에 대한 선호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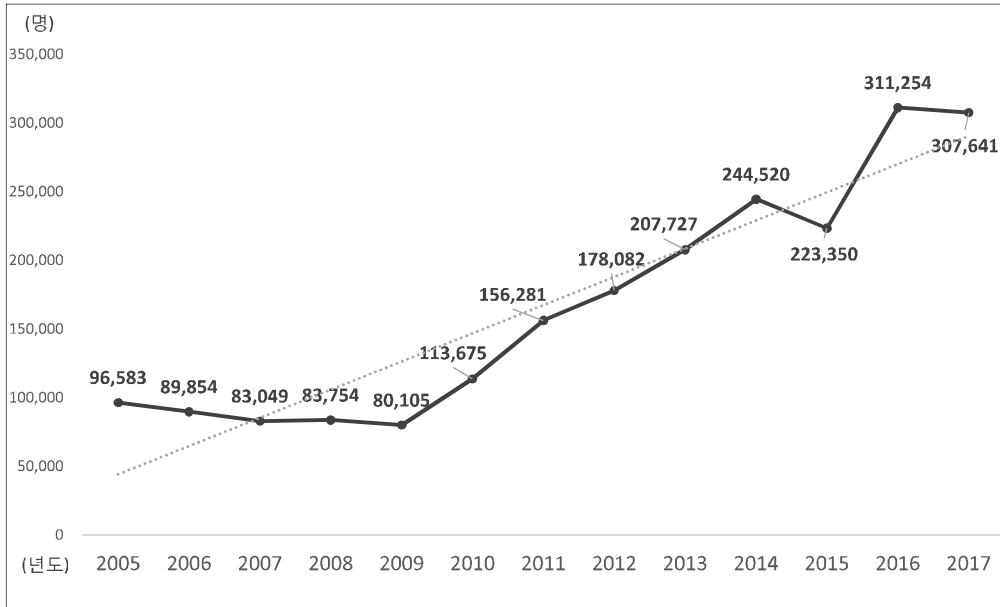
## ■ 2. 한국 식품 수출 동향 및 전망

### 가. 한류 동향<sup>16)</sup>

- 말레이시아에서 한류는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2002년 '겨울연가' 방영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내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

16) Kotra 국가정보(2016) - 말레이시아, p.69

되었으며, 이후 '가을동화', '꽃보다 남자', '대장금'이 잇달아 방송되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음



[그림 2-4] 말레이시아 관광객 한국 입국 통계 추이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 실선은 실제치를 연결한 선이며, 점선은 추세선임

- 한국어 TV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방송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음
  - 2009년 10월에 케이블TV 사업자인 아스트로(Astro)가 한국방송전문 채널인 'One HD'를 시작했고, 이어서 'KBS월드'도 방영을 시작함
  - 2015년에는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인 'Oh!K'와 'Channel M'이 추가됨
  - 이밖에 말레이시아 지상파 방송에서도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드라마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다양한 한국 영화도 상영하고 있음

또한, 런닝맨 등 한국의 예능프로그램들도 인기를 끌고 있음

- 2006년 동방신기가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공연하였으며, 2013년 2월에는 싸이가 페낭에서, 2015년에 소녀시대, 티아라, 빅뱅, 2016년 HIGH4, HALO 등 많은 한국의 뮤지션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공연함
- 말레이시아에 한류가 확산되면서 현지인의 한국사회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는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로 이어짐
- 현재 한국어 교육은 여러 대학에서 약 200-300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으로 정착됐으며, 한국어 과정은 사교육 기관으로까지 확산 중임
- 관광부문에서는 드라마 '겨울연가'나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촬영현장을 중심으로 한 방한 열풍이 있었는데, 이에 말레이시아 내한 관광객이 2014년에 약 2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 나. 한국상품 인지도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인지도는 높은 편임.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한국산 휴대용 통신기기의 시장점유율은 1-2위를 점하고 있음
- 또한, LCD TV, LED TV 등의 제품도 현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 역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600cc-2500cc 급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대장금 방영 이후 우리나라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이에 주요 쇼핑물에 한국 음식점들이 입점하였고, 많은 현지인들이 비교적 비싼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식당을 찾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 300개에 달하는 한국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지 한국식당은 프랜차이즈와 한인들의 자영업 식당이 혼재되어 있는데, 현지 주요 도시와 수도권으로 체인점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 프랜차이즈 체인도 적극적으로 진출 중이어서, 현지 인구 대비 한국식당의 비율은 동남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상황임
- 현지 백화점이나 TESCO, AEON 등 대형할인점은 물론 Cold Storage와 같은 중소할인점에서도 한국산 라면이나 김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위에 언급된 할인점들은 해마다 'KOREAN FAIR'라는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음

#### 다. 한국 식품 수출 동향

-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말레이시아 소비자 구매력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로 인해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있음
  - 단, 고급 식품은 여전히 일본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지 대형 슈퍼마켓에는 한국식품의 진열대가 일본식품 진열대보다 작은 상황임
- 말레이시아 대형 하이퍼마켓은 한국으로부터 직구입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대부분 현지 유통업체(수입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기 때문에,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현지 유통업체(수입업체) 발굴이 중요함
  - 따라서 현지 하이퍼마켓에 공급선이 폭넓게 닿아있는 유통업체 발굴이 필요하고, 말레이계(이슬람)까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한국 식품으로는 라면, 김치, 쌀, 유자차 같은 차류, 알로에 베라 주스, 바나나 우유, 김 등이 있음

- 판매되고 있는 한국식품 중 90%는 라면, 과자, 음료 등이며, 나머지 10%는 냉동 혹은 신선제품으로 나타남. 특히 공장에서 제조된 상품 중 1/5 정도가 라면으로, 라면제품의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특히 불닭볶음면이 신라면에 이어 한국 라면의 인기 제품으로 등장함
  - 현지 수입업체와 한인마트 관계자에 의하면, 강한 향신료와 매운맛을 좋아하는 현지 입맛에 적절하게 들어맞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불닭볶음면은 브랜드를 강화하고 다양한 현지화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그리고 2014년 KMF(한국이슬람중앙회) 할랄인증을 취득함
- 신라면은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의해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표 라면이라고 할 수 있음. 역시 KMF 할랄인증 취득
- 빼빼로는 한류 및 '빼빼로데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인기 스낵제품으로 성장함. 역시 KMF 할랄인증 취득

#### 라. 對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입 동향<sup>17)</sup>

-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5년 간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입 현황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표 2-6]을 보면, 최근 3년 간 수출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라면으로 수출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 대비 2017년부터는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출이 증가해서 전분박을 앞서고 있음

17) aT “말레이시아 소비자 조사-딸기, 배, 참외, 유자음료, 김, 김치” 보고서 자료 참고  
<https://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1>



[표 2-5] 최근 5년 간 對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불

년도	수출		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18	45,735	81,610	1,103,655	534,772
2017	75,382	120,812	1,543,904	775,962
2016	79,054	100,475	1,082,861	686,340
2015	69,585	101,419	1,150,314	736,183
2014	57,420	102,702	1,201,253	851,476

출처 : www.kati.net (<https://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1>)

기준 : 2018. 10월. 따라서 2018년 자료는 10월까지의 자료임

[표 2-6] 최근 3년 간 對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Top5 목록

단위 : 톤, 천불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품목	중량	금액	품목	중량	금액	품목	중량	금액
1	라면	3,288	11,340	라면	4,690	16,842	라면	3,832	14,509
2	전분박	15,301	9,290	혼합조제식 료품	3,118	10,766	혼합조제식 료품	2,403	7,668
3	혼합조제식 료품	2,796	8,112	전분박	13,692	8,597	전분박	8,315	5,042
4	옥수수전분	19,873	7,196	음료베이스	40	7,560	옥수수전분	11,596	4,757
5	옥수수유	5,710	6,393	옥수수전분	18,606	6,630	음료베이스	110	4,169

출처 : www.kati.net (<https://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1>)

기준 : 2018. 10월

- [표 2-7]의 對 말레이시아 가공식품 교역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77.5백만 불이었던 가공식품 수출액은 2017년도 97.7백만 불로 2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라면 및 음료베이스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전분류나 맥주 수출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공식품 수출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7] 對 말레이시아 가공식품 수출 동향

단위 : 톤, 천불, %

구분	2016		2017		증감률 (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연초류	563.6	614.7	396.7	135.2	△6.7	△78
과자류	911.3	5,095.6	911.1	5,650.4	△29.6	10.9
면 류	4,366.0	14,235.7	6,240.2	20,531.3	0.0	44.2
주 류	3,024.1	3,268.5	1,331.0	2,352.2	42.9	△28
음 료	849.9	1,326.5	874.4	8,835.6	△56	566.1
소스류	850.3	2,396.4	961.3	2,515.0	2.9	4.9
낙농품	42.4	106.8	54.2	124.8	13.1	16.8
목재류	11,060.3	3,283.0	7,415.9	2,480.1	28.0	△24.5
기타(가공)	50,523.7	47,166.4	49,188.8	55,070.4	△33	16.8
<b>전체</b>	<b>72,191.6</b>	<b>77,493.7</b>	<b>67,373.8</b>	<b>97,694.7</b>	<b>△2.6</b>	<b>26.1</b>

출처 : aT 말레이시아사무소, "말레이시아 소비자 조사, -딸기, 배, 참외, 유아음료, 김, 김치 - 보고서. p.6. (부류별 수출 동향 표 일부 수정)

주: 본 표에서 '목재류'는 가공식품 관련 기구·용기 등을 의미함

#### 마. 주요 식품유형별 對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 최근 상위 30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식품유형별 對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을 정리한 것이 [표 2-8]에 제시되어 있음

[표 2-8] 對 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 동향 (상위 30 품목)

(단위 : 톤, 천불, %)

순 위	품목	2016		2017		증감률 (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라면	3,288	11,340	4,690	16,842	43%	49%
2	혼합조제식료품	2,796	8,113	3,118	10,766	12%	33%
3	전분박	15,301	9,290	13,692	8,597	-11%	-7%
4	음료베이스	8	134	41	7,560	396%	5,523%
5	옥수수전분	19,873	7,196	18,606	6,630	-6%	-8%
6	옥수수유	5,710	6,393	5,605	6,319	-2%	-1%
7	기타코코아조제품	26	169	109	4,703	318%	2,683%
8	커피조제품	461	3,520	428	4,097	-7%	16%
9	비스킷	325	2,699	416	3,719	28%	38%
10	딸기	322	2,809	425	3,548	32%	26%
11	감	2,562	2,859	3,434	3,524	34%	23%
12	기타사료용조제품	2,138	2,067	3,630	3,157	70%	53%
13	김	187	1,444	125	2,498	-33%	73%
14	굴	217	3,027	148	2,224	-32%	-27%
15	인스턴트면	777	1,577	962	2,124	24%	35%
16	개 사료	819	1,441	831	1,581	2%	10%
17	효소	251	906	307	1,109	22%	22%
18	기타베이커리제품	261	1,013	281	1,074	8%	6%
19	기타파스타	201	946	360	1,012	80%	7%
20	기타음료	584	877	538	1,010	-8%	15%
21	소주	405	625	559	963	38%	54%
22	기타소오스제품	288	1,067	300	949	4%	-11%
23	새송이버섯	209	670	276	884	32%	32%
24	판지	6,118	1,114	4,671	879	-24%	-21%
25	김치	195	713	235	853	20%	20%
26	기타과실	256	886	188	812	-27%	-8%
27	차, 마태 조제품	6	74	37	802	467%	987%
28	사료첨가제	301	819	319	795	6%	-3%
29	섬유판	4,492	1,479	1,910	760	-57%	-49%
30	기타계	25	985	19	759	-25%	-23%

출처 : aT 말레이시아사무소, "말레이시아 소비자 조사, -딸기, 배, 참외, 유아음료, 김, 김치 - 보고  
서. p.6

## 제3절

# 수입식품 관리제도

### ■ 일반 통관 개요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됨
-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경우 모두 세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통해 신고해야 함
  -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 No.1 양식,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 No.2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함.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에 상품이 오가는 경우 세관신고서 No.3 양식을 구비해야 함<sup>18)</sup>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 모두 정확한 관세 코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함
  - 말레이시아는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 세관에 신고한 수입상품 가치는 WTO 세관평가시스템에 기초한 세관규정(1999)에 따른 거래가치와 동일해야 함

18)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세관신고서 No.1 양식을 준비해야 함. 부록 3에 예시로 No.1 신고서의 앞면이 제시되어 있음

- 거래가치란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때의 가격 또는 상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수 있는 가격임
- 거래는 독립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이어야 함. 만약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경우, 세관은 신고된 수입상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 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 수입검사를 실시함
- 사후 수입검사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두 집단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지와 서로 관련된 기업인지를 조사함. 독점판매, 프랜차이즈 등은 거래가치에 영향을 주는 합의로 간주되며,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가 발견될 경우, 세관은 평가규칙을 통해 제품가치를 재평가함

## ■ 수입절차의 흐름

- 말레이시아에 식품을 수출하는 절차는 수출계약, 서류준비, 선적/운송, 수입신고/검역, 통관/국내유통의 5단계로 이루어짐

1. 수출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선 발굴</li> <li>• 계약 진행</li> </ul>
2. 서류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 서류</li> <li>• 품목별 추가 서류</li> <li>• 원산지 증명서</li> </ul>
3. 선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사 통해 수출 통관</li> <li>• 포워딩업체 통해 목적지로 운송</li> <li>• 물품 도착 시 적하 목록 제출</li> </ul>
4. 수입신고/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 진행 (관련서류 제출)</li> <li>• 수입 규제 및 금지 품목 확인</li> <li>• 품목별 검역 진행</li> </ul>
5. 통관/국내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stoms Golden Client 제도 통관절차 간편화</li> <li>• 관세 및 세금 납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li> </ul>

[그림 2-5]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5단계

- 본 3절 '수입식품 관리제도'에서는 이 다섯 단계를 세부절로 만들고 관련 내용을 차례로 제시하고자 함

## 1. 수출계약 단계



### 가. 주요 과정

- B2B 거래사이트, 트레이드 디렉토리(Trade Directory) 및 각 국의 무역 관련 기관 또는 전시회 등을 통해 바이어 발굴
- 구체적인 계약진행: 수출가격 검토 후 구매자에게 희망조건을 명기한 제안서 (비즈니스 오퍼)가 제출되고, 구매자가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여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등의 사항들이 최종 합의되면 해당 조건에 따라 수출계약이 체결 됨

### 나. 상표등록과 관련기관 허가

-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등록과 관련기관 허가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그림 2-6]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상표등록

### ● 신청방법

- 말레이시아 특허위원회(MyIPO)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필요서류

-출원서(Request)

- 서약서(Statutory Declaration)

-상표사용 제품

- 우선권 증명서(Priority Document)

-상표 견본(Mark)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관련기관 허가

### ●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Customs Form No.1) 작성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수입지역 관세청에 제출

-선하증권,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L/C 등 은행서류

[그림 2-6] 말레이시아 상표등록과 관련기관 허가

출처 : 말레이시아 특허위원회(The Official Portal of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MyIPO) (<http://www.myipo.gov.my/>),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International Import Export Trade) (<http://www.malaysiaexports.com>)

## 2. 서류준비 단계



### 가. 주요 과정

- 수입신고서: 상품 및 포장물의 개수 및 설명, 가치, 무게, 측정 또는 수량, 원산지 또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완전하고 실제적인 설명을 기재해야 함
- 필요서류: '세관신고양식(Custom Entry form)', '선하증권(입항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업송장 혹은 견적송장(상업송장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포장 목록(Packing List)', '상품의 출입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 '원산지 증명서', '분석서' 등
- 품목에 따라 위생증명요건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함 (부록 4 참고)
  - 육류(가금육 포함): 육류 및 가금육 수출증서(FSIS Form 9060-5), 할랄 수출인증서, 수입허가서(IP), 수의검역부의 허가증 (수의검역부 소관)
  - 식물성 식품: 식물위생증명서, 수입허가서, 검역해충검사 및 식물위생 규제 준수 인증서(농업부 소관)



## 나. 원산지 증명

- FTA는 협상체결국 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에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됨
  - FTA 원산지 규정이 비특혜 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데, 이는 FTA 원산지 규정이 FTA 특혜 관세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 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함.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됨
  - 완전생산기준: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한 경우
  - 실질적 변형기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경우, 이 가공을 수행한 국가에 원산지 부여
    - ① 세번(稅番) 변경기준(the Change in Traiff Heading Method)
      - \* 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 번호.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미만은 나라마다 다름
    -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 ③ 가공공정기준(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 최종 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 최종 제조공정이 반드시 수출국에서 수행되어야 원산지를 획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수출국에서

최종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됨

- 원산지증명 관련통일서식은 Form을 사용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두 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음
  - \*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korcham.net/cert-web>
  - \*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 \* 보다 상세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의 'FTA 활용·대책' 메뉴를 살펴보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 또한,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의 'FTA 활용' 메뉴를 클릭하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3. 선적/운송 단계



#### 가. 주요 과정

- 관세사를 통하거나 기업이 직접 수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인 유니패스([www.unipass.or.kr](http://www.unipass.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
- 이후 운송이 이루어지며 물품이 도착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적하목록(Manifest)을 세관사무소에 제출

- 단, 운송수단에 따라 도착시간으로부터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제출해야 함(참고, 선박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 항공기와 철도는 도착 즉시 제출)

#### 4. 수입신고/검역 단계



##### 가. 주요 과정

- 수입업체는 관련 수입면허(Import Licence)를 얻어야 하며, 통관절차를 직접 처리하거나 말레이시아 관세청장이 승인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는 포워딩업체가 관세사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포워딩업체가 수입신고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포워딩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타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 허가를 받으면 제품의 검역이 실시됨
- 수입신고 전 수입 규제 및 금지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수입신고 및 검역 진행
  -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면허(Import Licence)가 필요함
  - 말레이시아는 다른 국가와 달리 식품 수출입 시, 위생과 영양뿐 아니라 식품 광고 및 식품 실험에 의한 안전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함

- 특히, 이슬람 국가로서 알코올이 첨가된 제품이나 돼지고기에 매우 민감하며, 이와 같은 식품에는 표시 규정이 엄격함
- 말레이시아로의 수입은 법적으로 인정된 입항지 및 통관 공항에서만 허용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 수입 시 관련 정부기관의 면허 및 허가가 필요함

<b>수입 시 면허 및 허가가 필요한 제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코올음료</li> <li>▪ 동물 및 동물가공제품</li> <li>▪ 특정 건강관련 및 약효식품</li> <li>▪ 육류 및 육류가공품</li> <li>▪ 식물 및 식물가공품</li> <li>▪ 가금류 및 가금류가공제품</li> </ul>
-----------------------------	---

- 서류처리 절차에는 각 정부기관의 수입업체(개인/기업)에 대한 평가도 포함됨
- 모든 수입식품 신고는 다강네트(Dagang Net)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
  - 말레이시아 정부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단일통관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를 운영하고 있음. 이 기관의 운영 서비스가 Dagan Net이며, 수출업자들이 전자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함
- 말레이시아의 수입식품 검역은 수출입식품 검역처(Malays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s: MAQIS)에서 총괄하고 있음

## 나. 수입신고/검역 단계별 사항

[표 2-9] 수입신고/검역 단계별 사항

목 록	참 고
1. 규제 대상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이 말레이시아 관세청, 보건부,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등의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지 확인</li> </ul>
2. 식품법/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법(1983) 및 식품규정(1985) 준수</li> </ul>
3. 식품안전정보시스템 등록 및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워딩업체 및 수입업자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상 등록해야 함</li> <li>▪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은 세관정보시스템(CIS)로 알려진 관세청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수입업자, 포워딩업체 및 담당 부서가 식품수입활동을 전자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li> <li>▪ 포워딩업체 및 수입업자는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상 정보 기입 (수입 목적, 제품 세부사항)</li> <li>▪ 식품 세부사항은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상 'SMK Interface' 메뉴에 기입</li> </ul>
4. 입항지 식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는 보건부(MOH) 담당자들이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기반접근법을 활용해 실시</li> <li>▪ 수입 식품은 수입 허가서/수입면허/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 수의국(DVS), 농업부(DOA) 등 관련기관(OGA)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li> </ul>

## 1) 수입규제 개요

- 말레이시아는 관세법(Customs Act, 1967) 및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2008)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수입금지 및 제한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됨
  - a) 수입 불가 : 어떠한 조건에서도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
  - b) 수입면허가 없을 시 조건부 불가 : 관련부처로부터 수입면허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 c) 자국민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건부 불가 : 수입 허가를 취득하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 d) 정해진 수입방식 이외에는 불가 : 수입 허가, 인증 취득 등 정해진 방식을 따르면 수입이 허가되는 품목

## 2) 수입규제 내용

- 수입 불가 품목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항목들 중 농축수산물 및 식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3.46mg/1L 이상 함유한 증독성 주류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피라냐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코코아 등 과일류
- 수입규제 품목
  - 다음의 이유로 일부 품목은 조건부 수입을 허가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협약 준수 등을 위한 수입면허에 따른 조건부 수입 허가
    - 여기에는 몬트리올 의정서(지구오존층의 보호를 위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환경협약) 해당 품목,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관련 품목, 화학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해당 품목 등이 주로 포함됨
    - 전화기,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 스위칭 및 라우팅 장비, 전화 및 전신 장비, 휴대용 무선 전화기(워키토키), 휴대용 무선 통신기(트랜스시버), 무선 전화 수신기 등의 공공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부착되거나 연결된 기구 및 장비는 허가를 받은 업체의 경우 수입 가능
  -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면허에 따른 조건부 수입 허가
    - 철강제품, 말레이시아 전통의상(사롱, 바틱, 카인), 양배추 등
    - 양배추의 수입면허는 연방농업마케팅청(FAMA: The Federal Agriculture Marketing Authority)에서 담당
  - 소비자 안전보호 등을 위한 수입면허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가
    - 스위치, 다리미, 주전자, 토스터, 워터히터, 면도기, 헤어드라이어기, 안전벨트 등
    - 살충제, 방사능 물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독극물에 해당되는 물질은 환경청(DOE: Department of Environment)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살충제는

농무청 (DOA: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민보건과 연관이 있는 특이 동식물 수입의 경우 축산청(DVS: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농무부(MO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를 통해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3) 수입규제 동향

#### ▪ 최근 수입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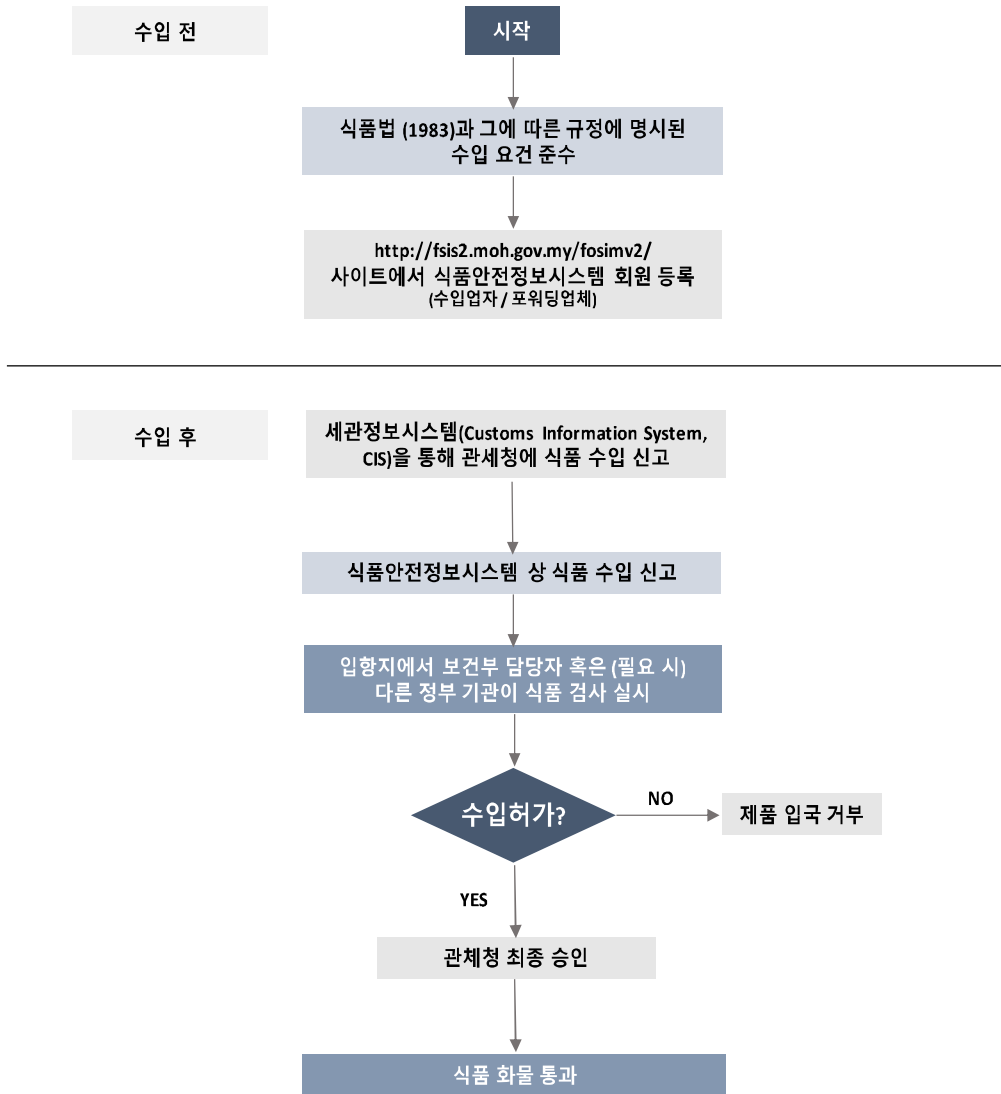
-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 초부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하고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에 나서는 상황임
-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 철강분야 수입규제 조치에 자극받아 말레이시아 현지 유관협회나 기업들이 본격적인 진입장벽 설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임
- 2016년 6월 30일 기준 말레이시아의 對 한국 수입규제는 전체 7건임

#### ▪ 수입규제 예상 분야

- 철강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특히 타겟으로 수입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은 드러난 바가 없음
- 단, '할랄산업' 분야와 그 연계산업인 식품, 화장품, 의약품 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와 가전분야에 대해서도 자국 산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보호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음
- 말레이시아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에 대해서 수입업자가 관리당국에 수입 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
- 자국 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Act 2011에 의거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함



식품법 (1983) 및 식품 규정 (1985) 식품 수입 절차도



[그림 2-7] 식품법(1983) 및 식품규정(1985)에 따른 식품 수입 절차도<sup>19)</sup>

19) <http://fsq.moh.gov.my/v5/ms/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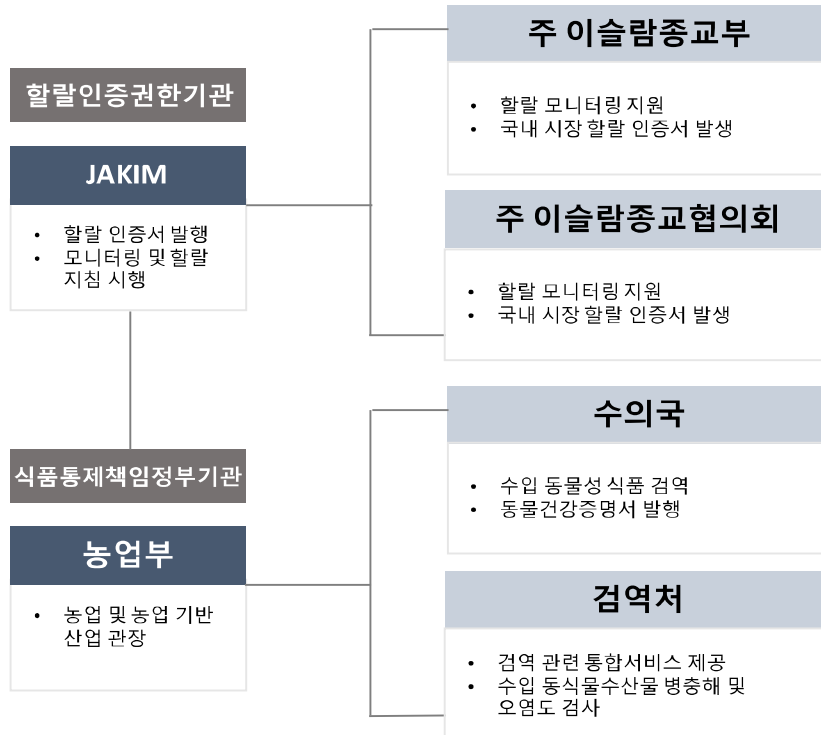
1) 식품법/식품규정 준수

- 말레이시아 식품 수입은 보건부(MOH)의 규제사항으로 식품안전품질국(FSQD)에서 이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2) 수입검사 법규 및 관리기관

- 말레이시아는 식품 수입 시 관세청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주류, 동물 및 관련제품, 건강 의료식품, 육류와 그 가공품, 식물 및 관련제품, 가금류 및 그 가공품 등 수입 시 각각의 책임기관으로부터 허가와 인가가 필요함
- 식품 및 신선 농산물은 말레이시아에 반입되기 전 특정 위생 및 식품 위생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제품에 대한 검역 및 검사가 진행되며,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될 경우 해당 기관이 제품을 압수 및 폐기 처리함
  - 이를 위해 수행되는 물리적 검사 시행의 내용은 '수입 제품의 해충, 질병 혹은 오염물질의 포함 여부', '수입 물품의 등급 표시, 포장, 라벨 부착 여부', '제품의 종류 및 명확한 수량 표시 여부', '수입 물품의 사전 처리 및 검역 여부', '축산 부류 수입의 할랄인증 여부' 등이 있음
  - 이러한 검사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통합검역소 혹은 식물 반입 검역소에서 시행되며, 검사시설의 종류는 검역소 위치에 따라 다름

- 수입식품 검역에 관한 주요 정부 기관과 각 기관의 업무를 간단히 요약 정리 하면, 아래 [그림 2-8]과 같음



[그림 2-8] 말레이시아 수입식품 검역 관련 정부기관과 주요 업무

출처 : 농림수산물부, 한국식품연구원 보고서, 말레이시아 검역제도편

- 말레이시아 검역처(Malaysian Quarantine & Inspection Services, MAQIS)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 Malaysia) 산하기관으로 진입지점 및 검역소에서 검역, 검사 및 집행
  - 식물, 동물, 시체, 생선, 농산물, 토양 및 미생물의 수출입에 대한 검역과 식품

및 식품 관련 문제에 대한 검사 등의 통합형 서비스 제공

- 말레이시아 수의국(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DVS)
  - 농업부 산하 연방정부기관으로 말레이시아 동물 및 가축 산업의 복지 담당
  - '동물산업에 있어 동물 건강 상태의 강화 및 유지', '동물 기반 제품으로부터의 인수 공통 질병 관리 및 건강에 좋은 식품생산으로부터 공중 보건 보증', '지속 가능한 축산 생산 및 부가가치 산업 장려', '동물 기반 산업에 있어 기술 사용 및 자원의 최적 사용 탐색, 개발 및 장려', '사육 및 생산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있어 동물 복지사례 홍보' 등을 목적으로 업무 수행
  - 이외에도 수의국은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의 검역을 담당하며, 검역이 승인된 제품에 대한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함

### 수입신고/검역 - 3. 식품안전정보시스템 등록/신고

#### 1)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 등록<sup>20)</sup>

- 2003년부터 수입신고에 있어서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는 입항지, 식품안전품질연구실, 공공위생연구실 및 본사를 연결하는 온라인망임
- 식품안전 감시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개발된 웹 기반 정보시스템임

20) <http://fsq.moh.gov.my/v5/ms/clearance-of-imported-food-consignment-via-fosim/>



[그림 2-9]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출처: 식품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fsis2.moh.gov.my/fosimv2/HOM/frmHOMPage.aspx>

- FoSIM은 세관정보시스템(CIS)로 알려진 관세청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수입업자, 포워딩업체 및 관련기관 공무원이 식품 수입을 전자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험기반접근법을 활용해 수입 식품의 위험도를 측정함
- 식품 수입업자와 포워딩업체는 CIS를 통해 세관신고를 마친 후, 식품 수입 허가를 얻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상에 등록해야 함
- 집행관은 이 시스템을 사용해 말레이시아 입항지 어느 곳에서나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화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식품 경계경보는 온라인으로 전달되며 같은 식품의 과거 수입을 추적하고 감지함으로써, 항구에서 항구로 불법 수입업자들이 도주하는 것을 예방함

## 2)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상 수입 신고

###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식품 수입 허가

#### 1. 화물도착

식품을 실은 화물이 입항지에 도착하면,  
포워딩업체(통관업자)가 수입품을 세관에 신고,  
전자방식(CIS)으로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상에 전달됨

#### 2. 수입신고서 작성

포워딩업체(통관업자)가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신고서 작성. 자동적으로 검사단계로 넘어감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웹페이지 <http://fsis2.moh.gov.my/fosimv2>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2-10]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식품 수입 허가

- 포워딩업체 및 수입업자는 FoSIM에 수입 목적, 제품 세부사항 등 정보 기입
- 식품 세부사항은 FoSIM 'SMK Interface' 메뉴에 기입

수입신고/검역 - 4. 입항지 검사/검역

1) 입항지에서의 식품 검사<sup>21)</sup>

- [표 2-10]과 [그림 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품 검사는 수입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여섯 가지 단계로 분류됨

[표 2-10] 6단계 식품 화물 검사

식품 화물 검사	설명
단계 1. 자동 입국 허가	▪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입국 허가
단계 2. 서류 심사	▪ 담당자 승인하기 전 관련된 모든 서류 검토
단계 3. 모니터링 검사	▪ 심사는 필수이며, 수입식품 정기 국가모니터링플랜에 따라 샘플을 추출할 수도 있음
단계 4. 상시감시 검사	▪ 심사와 샘플 추출은 필수이며, 화물은 심사가 끝난 후 통관 여부 결정
단계 5. 압류, 검사 후 압류 해제	▪ 심사와 샘플 추출은 필수이며, 화물이 식품법(1983), 식품규정, 국제식품규격에 준수하는지에 대해 분석 결과에 따라 압류 해제 여부 결정
단계 6. 자동 입국 거부	▪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입국 거부

21) <http://fsq.moh.gov.my/v5/ms/inspection-of-food-at-entry-point/>

- 아래 나열된 수입 식품은 단계 1에 해당되며 입항지에서 서면허가가 발행됨

<b>단계(1) 자동 입국 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목적 식품</li> <li>▪ 전시 목적 식품</li> <li>▪ 중환자를 위한 특수용도식품 (병원 요청)</li> <li>▪ 개인 용도</li> <li>▪ 선물 용도</li> <li>▪ 장관의 특별 승인을 받은 식품</li> </ul>
-----------------------	--

- 말레이시아 식품법(1983)과 그 관련규정에 준수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짐

<b>식품법/식품규정 미 준수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이 거부된 식품은 원산지 혹은 수입을 허가하는 다른 국가로 재수출됨</li> <li>▪ 식품이 이미 입국된 상태라면, 식품 회수 통지가 발부됨</li> <li>▪ 식품화물이 검사단계 (5)에 해당된 수출업자는 추후의 수출품에도 동일한 검사단계가 적용됨</li> <li>▪ 폐기</li> <li>▪ 재표기, 재처리, 재조정</li> <li>▪ 법적 조치</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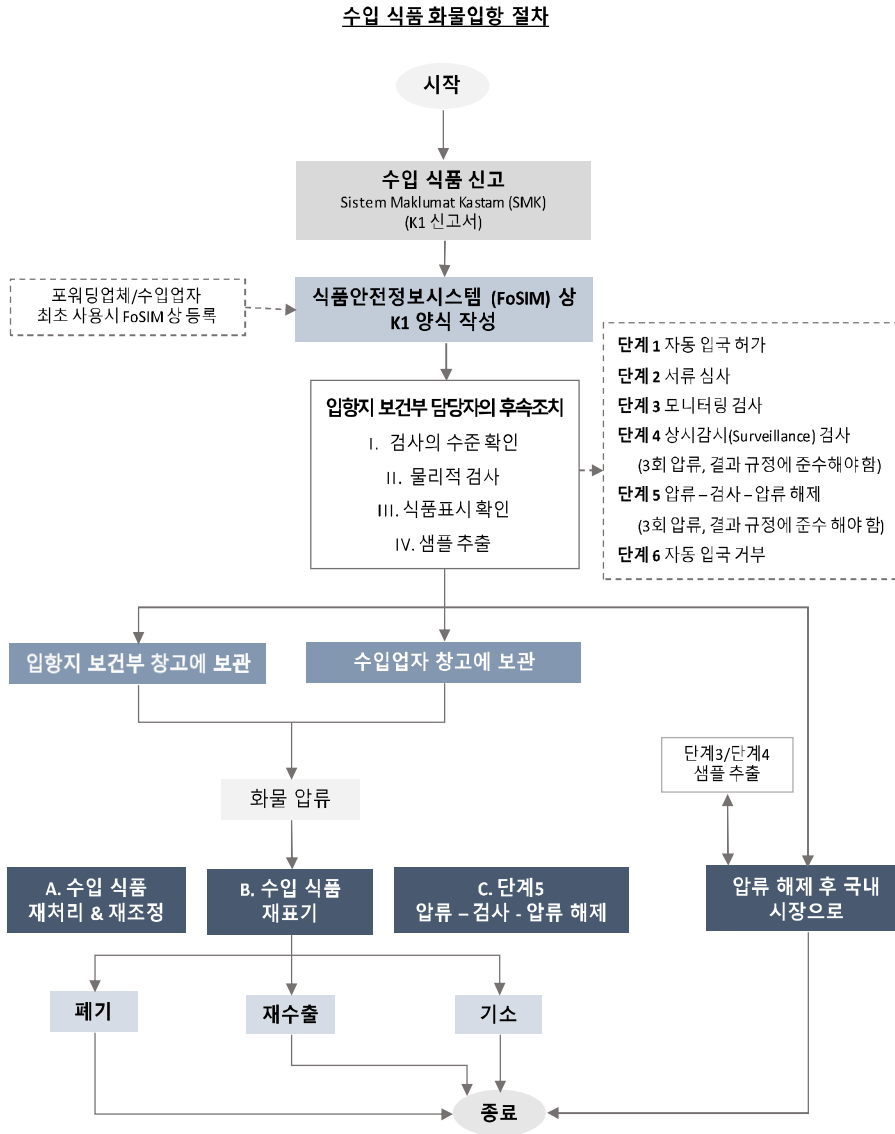
- 규정에 어긋나는 수입 식품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3월 1일부터, "압류, 검사, 압류 해제"(HTR) 검사단계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은 분석을 위해 추출되는 샘플 모수 1개당 비용을 지불해야 함</li> <li>▪ 수입 식품이 HTR 검사단계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식품안전품질국(FSQD)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규정에 어긋난 과거 이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임</li> </ul>
---



- 수입업자들은 “문제가 있는” 식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입하지 않도록 수입 규제 식품 목록을 참고할 수 있음
  - 이 목록은 FoSIM을 통해 식품 수입업자 및 포워딩업체만이 확인할 수 있음
  
- 수입 식품이 HTR **검사단계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음
  - 세계보건기구 같은 신뢰도 높은 국제단체들이 전하는 식품안전·위해 정보
  - 해외 관할관청 혹은 대사관/법무관 사무소가 전하는 식품안전문제들
  - 위생 증명서, 분석 증명서, 수입면허 등 추가
  - 서류 필요 없이 수입된 특정 식품들
  - 특정 식품 목록은 “상업용 식품 수입절차 - 1단계 : 수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참고
  -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식품안전사고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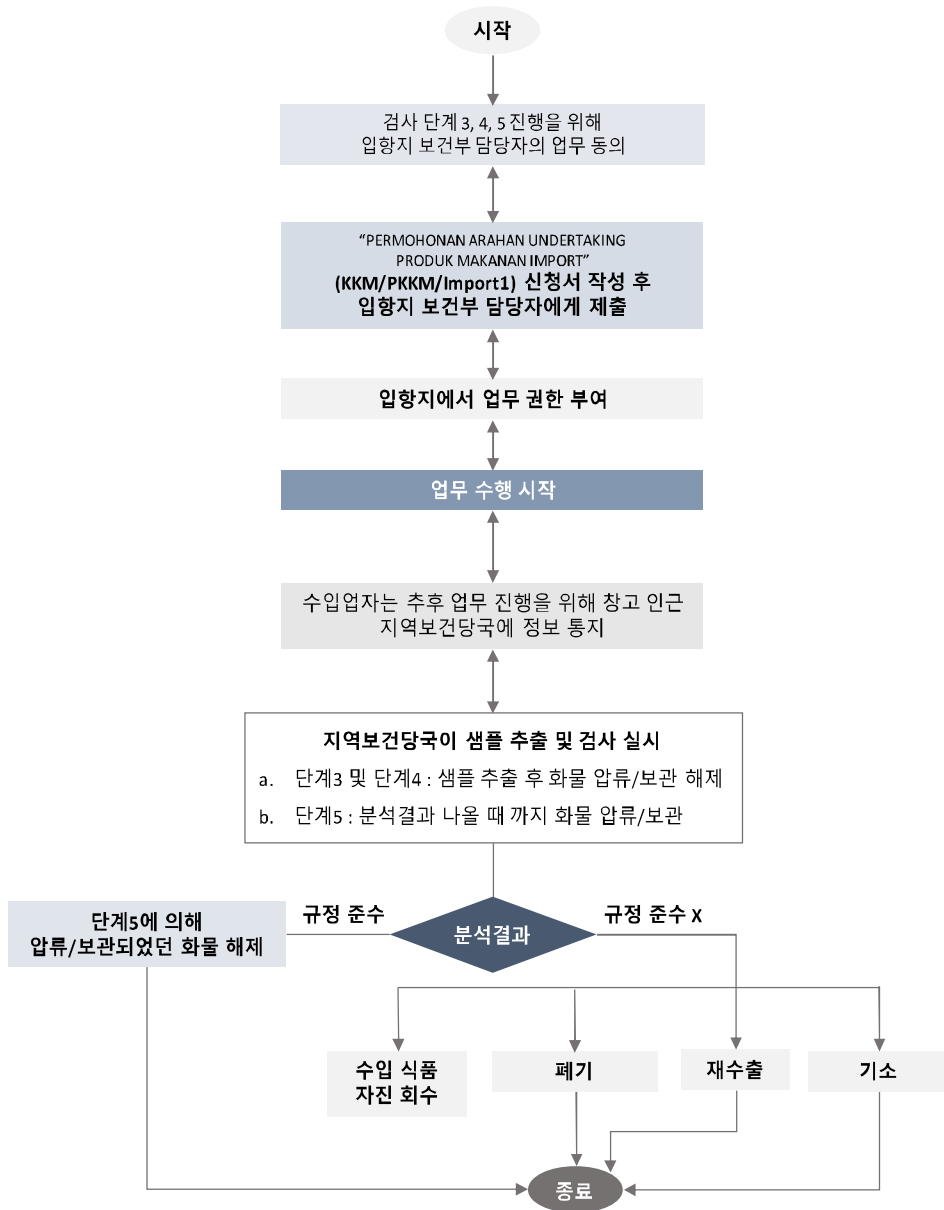
## 2) 식품 입항/검사/검역 절차도<sup>22)</sup>



[그림 2-11] 수입식품 화물 입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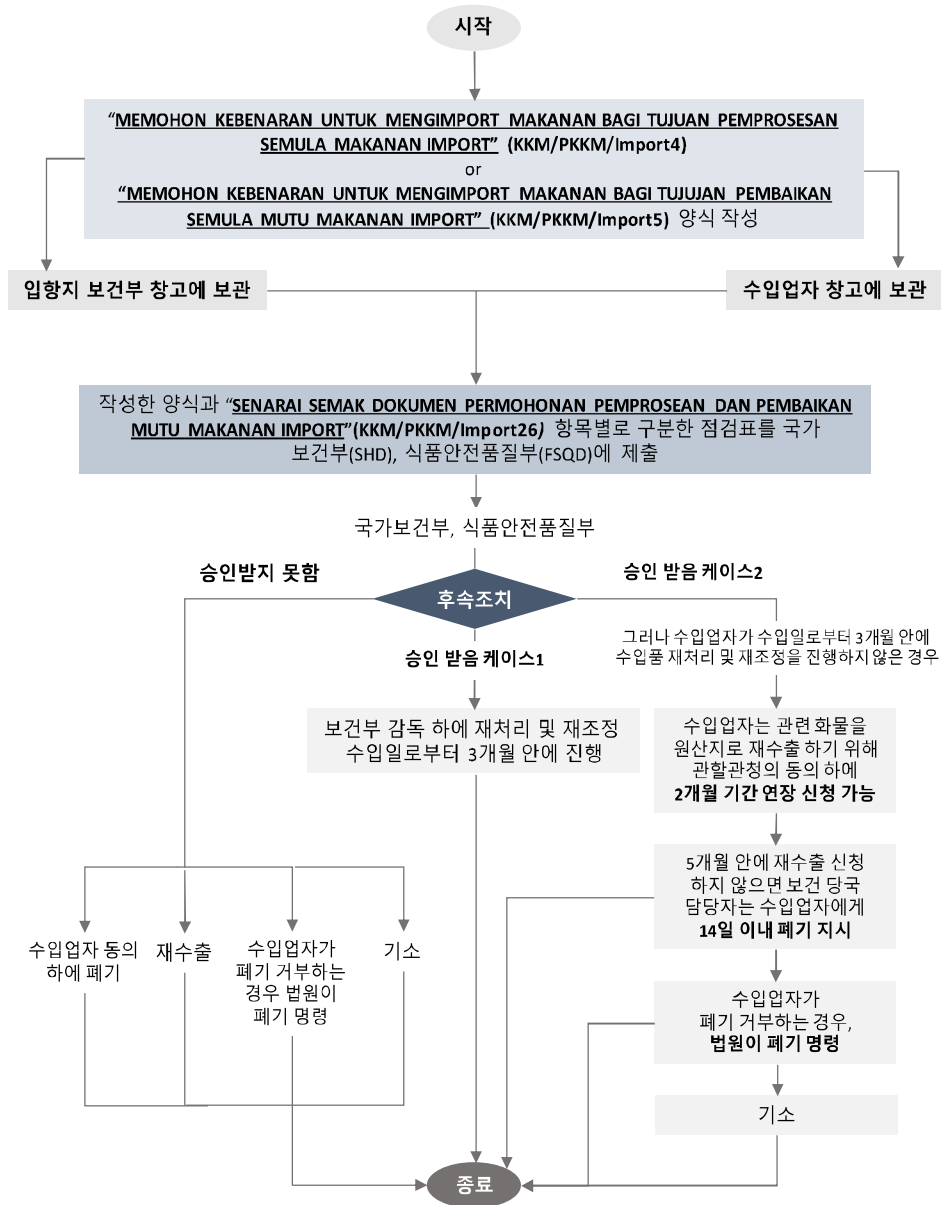
22) <http://fsq.moh.gov.my/v5/wp-content/uploads/2016/02/Importing-Procedure-for-Importers-and-Agents.pdf>

### 수입업자 참고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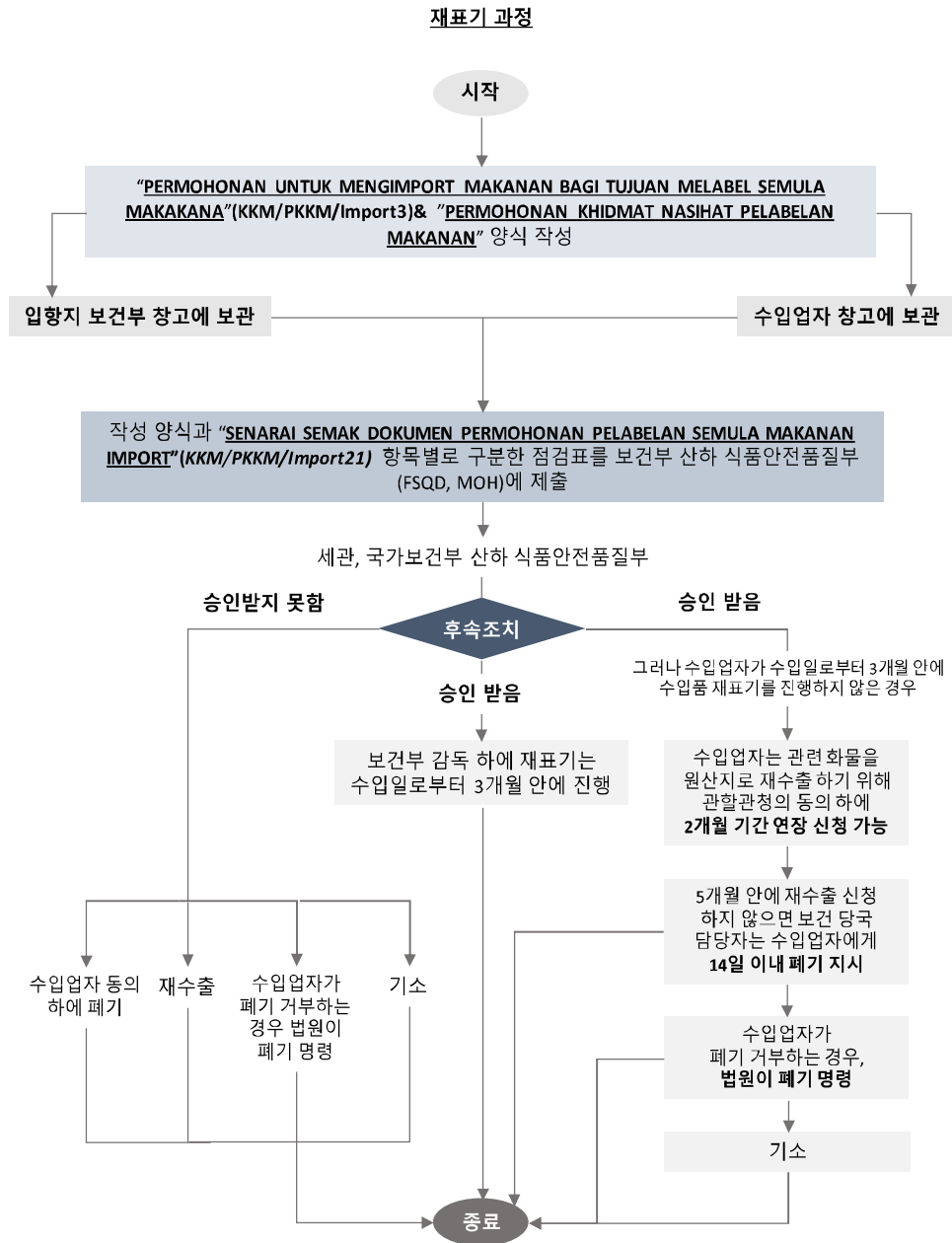


[그림 2-12] 검사 3, 4, 5 단계와 수입업자 참고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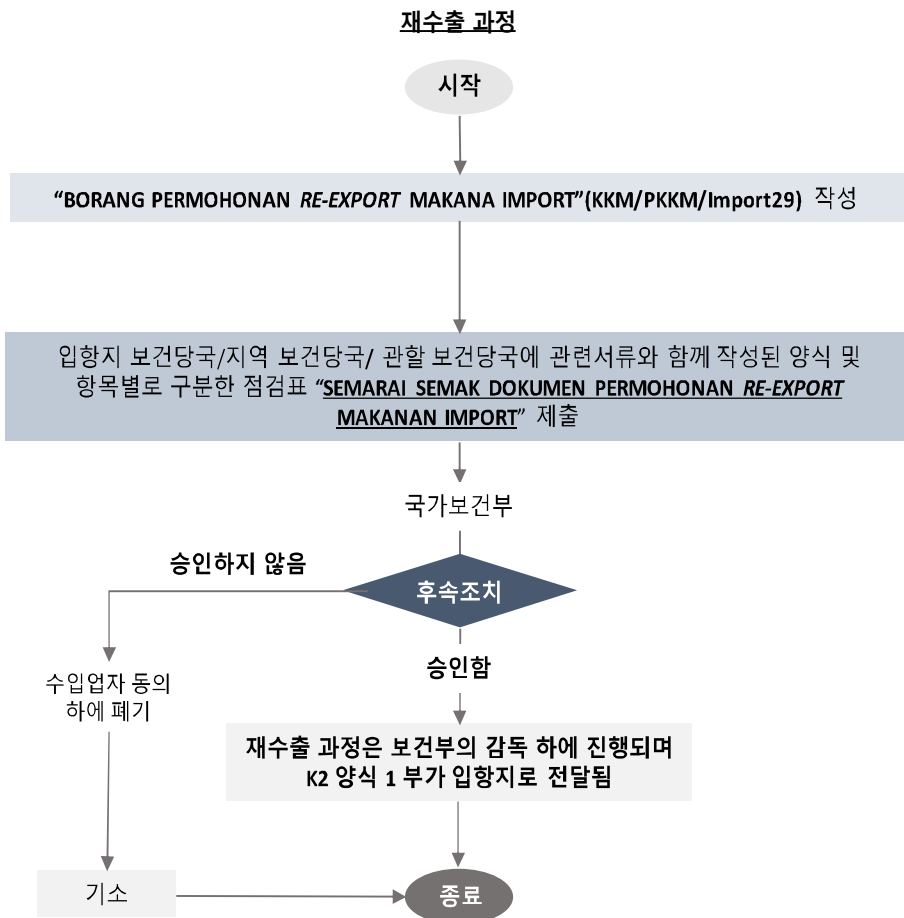
재처리 및 재조정 과정



[그림 2-13] 재처리 및 재조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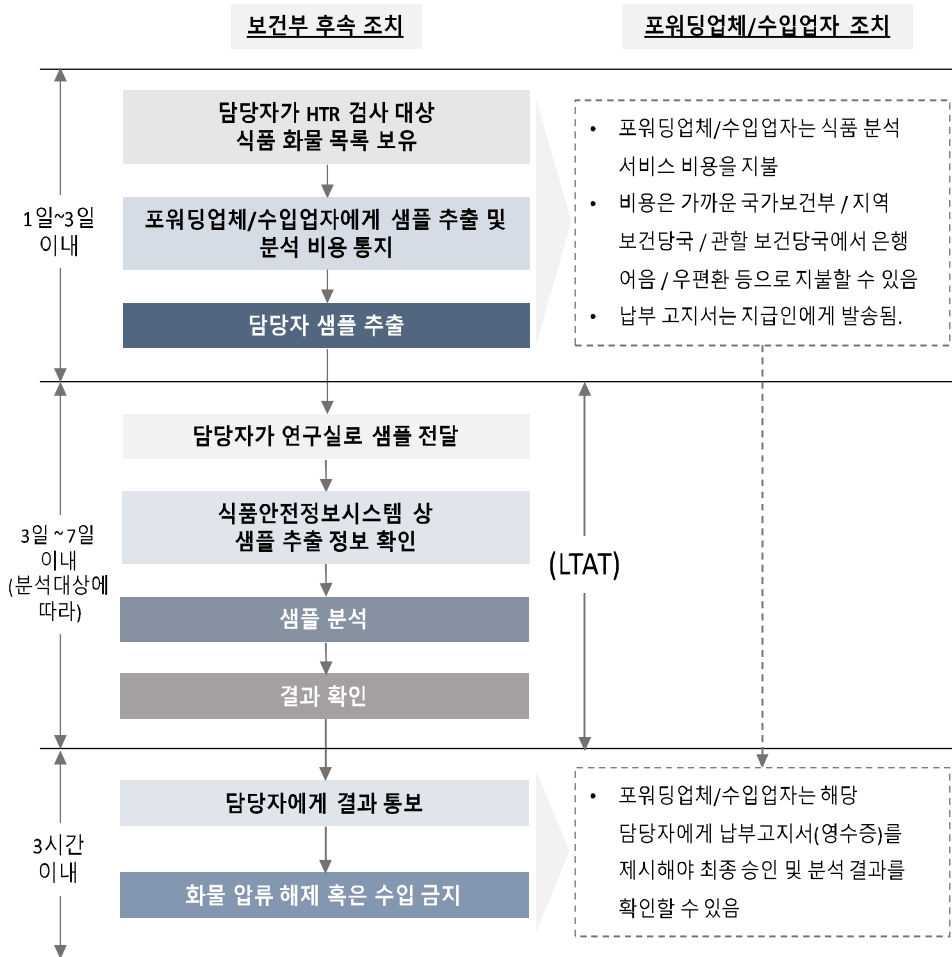


[그림 2-14] 재표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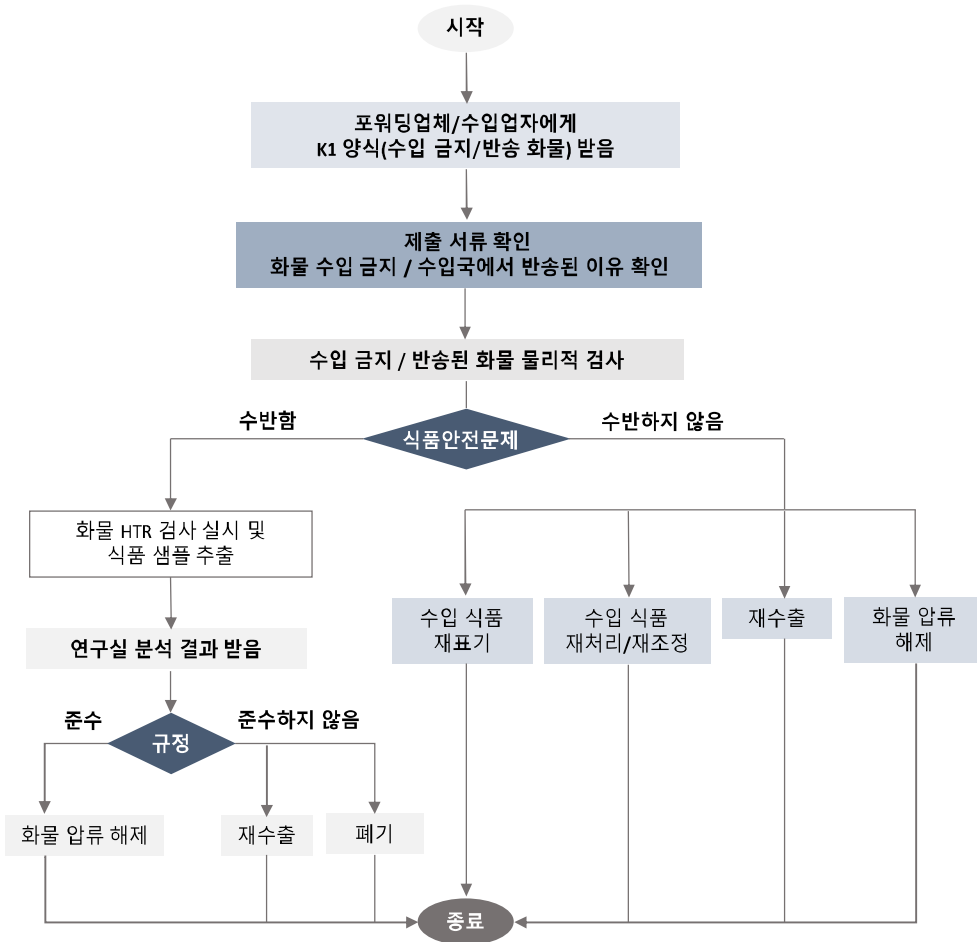
[그림 2-15] 재수출 과정

“압류-검사-압류 해제(HTR)” 검사 단계 수수료 부과 시행 과정



[그림 2-16] 검사 및 압류 해제 과정

**화물 반송 절차**



**[그림 2-17] 화물 반송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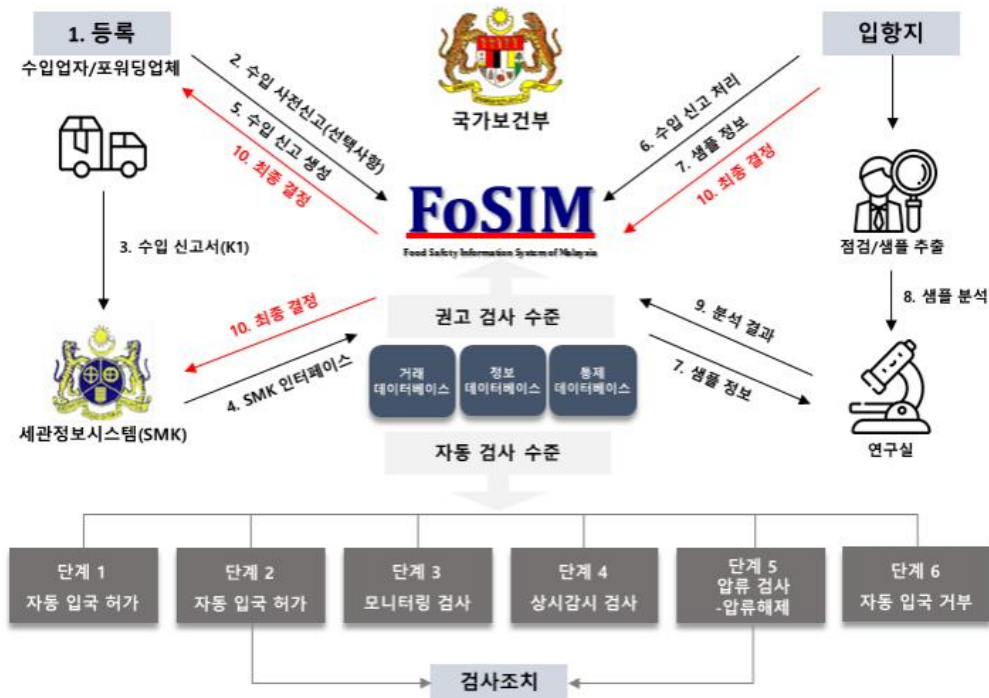
#### 다. 식품 수입 시 주의사항 요약<sup>23)</sup>

1. 식품은 말레이시아 식품법(1983)과 식품규정(1985)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특히 식품위생, 식품표준, 식품표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식품이 말레이시아 보건부,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의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지 확인 필요
3. 식품 수입 시 추가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 예: 식물위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수입허가서, 수입면허 등)
    - 해당 식품 리스트 확인 (부록 5 참조)<sup>24)</sup>
    - 위생증명요건 확인 (부록 4 참조)
4. 수입업자와 포워딩업체(통관업자)는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 상에 등록해야 함
  - 수입업자 등록과 포워딩업체 등 FoSIM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http://fsis2.moh.gov.my/fosimv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3) <http://fsq.moh.gov.my/v5/ms/procedure-of-food-importation-to-malaysia-for-commercial-purposes/>

24) [http://fsq.moh.gov.my/v5/wp-content/uploads/2016/10/Additional-import-documentation-for-specific-foods\\_260717\\_final.pdf](http://fsq.moh.gov.my/v5/wp-content/uploads/2016/10/Additional-import-documentation-for-specific-foods_260717_final.pdf)



[그림 2-18] 말레이시아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및 식품 수입 과정

5. 영·유아 식품 수입 시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식품영양부의 영·유아 식품과 관련 제품의 마케팅 윤리강령(2008) 준수 필요
  -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http://nutrition.moh.gov.my>를 통해 확인 가능
6. 유전자재조합유기체 혹은 식품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한 식품 및 식재료는 말레이시아 환경부(NRE)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제품들은 말레이시아 식품규정(1985)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대 생명공학 기술 사용 식품 및 식재료 대상 식품표기 조건을 충족해야 함 (부록 6 참조)

7. 특정 식품 수입 시 농업부 산하 말레이시아 검역처나 다른 정부부처 산하 기관에서 수입허가서, 수입면허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특정 식품 종류나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관세청 세관 규칙(Customs Ruling Results 2016)을 참고하거나,<sup>25)</sup> 웹페이지 <http://www.customs.gov.my>를 통해 관세청에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로 식품 수입 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수입절차

- 말레이시아 식품법(1983)과 식품규정(1985) 준수
- 말레이시아 보건부 국립의약품규제기관의 규제 대상 확인
- 식품 수입 시 추가서류 확인
- 수입업자와 포워딩업체(통관업자)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 등록
- 영유아 식품 수입 시 보건부 산하 식품영양부의 영유아 식품과 관련 제품의 마케팅 윤리강령(2008) 확인
-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한 식품 및 식재료 말레이시아 환경부 승인
- 특정 식품 수입 시 말레이시아 검역처 등의 정부기관에서 수입허가서, 수입면허 등 추가서류

25) <http://www.customs.gov.my/en/pg/Customs%20Ruling%20Result%20June%202016/Forms/AllItems.aspx>

## 5. 통관/국내유통 단계



### 가. 주요 과정

- 수입신고, 검사, 검역 단계를 거친 식품은 관세청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입세를 지불하게 되고, 기타 관세청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는 Customs Golden Client(CGC)제도를 통해 통과절차가 간편화되어 있으며, 제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기 전에 모든 관세 및 세금이 납부됨
  - CGC(Customs Golden Client)
    - CGC는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제도
    - CGC에 신청하여 동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동안 세관의 법적 조건을 잘 이행한 기록 및 전력이 있어야 하며 세금 연체가 없어야 함
    - 그 밖에도 지난 3년간 세관의 법적 위반이나 특허 조건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함
    -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회계 제도를 사용하여 회계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최근 감사받은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적절한 수출입 및 상품 이동 감사 기록이 있어야 함
  -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EFT)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제품은 한·아세안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임

## 나. 수입식품 관세

-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시 통관 관련 일반 정보를 확인하고, 세관 신고를 거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통관절차는 '물품 도착', '수입신고', '관세 납부', '물품검사 및 반출'의 네 단계로 이루어짐
- 통관 일반 정보<sup>26)</sup>

- 말레이시아 관세청 HS Code 시스템 사용
-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수입면허(Import Licence) 필요
- 식품 수출입 시, 위생과 영양뿐 아니라 식품광고 및 식품 실험에 의한 안전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
- 이슬람 국가로서 알코올이 첨가된 제품이나 돼지고기에 매우 민감하며, 이와 같은 식품에는 라벨 규정이 아주 엄격함
- '알코올음료', 동물 및 동물가공제품, '특정 건강관련 및 약효식품', '육류 및 육가공품', '식물 및 식물가공제품', '가금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책임 당국의 승인과 허가 필요

26) 한국식품연구원,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편' 참조

▪ 세관신고 관련

- 모든 수입품은 하역장소 및 공항세관에 도착 시, 수입관세 부과와 관계없이 세관 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신고 시, 제품의 수량, 무게, 치수, 원산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 등을 모두 통지해야 함
- 신고서는 물품이 수입되는 장소의 세관으로 보내야 함
- 수입세나 판매세 등은 물품이 보내지기 전에 지급되어야 하며,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세관 출입 서류(Custom Entry form)', '선하증권(Bill of lading)', '출입증명서류(Evidence of right to make entry)',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의 서류를 요구함

▪ 통관절차

물품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하목록(manifest) 제출</li> <li>• '규정된 양식', '선장이나 대리인의 보증 및 확인', '통관항에 양륙할 각 상자 표시, 개수, 내용', '하송인 및 화물인수인 성명', '총 적하 목록 및 선박 내 모든 저장품 목록' 등 원본과 복사본 각 1부</li> </ul>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서(Customer Form No.1) 작성</li> <li>• '계좌번호, 제품포장에 대한 설명, 가치, 수량, 무게, 원산지, 최종 목적지' 등 기재</li> <li>• '세관출입서류', '선하증권', '출입증명서류', '상업송장 또는 견적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li> </ul>
관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반출 전 납부</li> <li>• 현금, 수표 또는 은행 어음 등(수표의 경우 은행 보증 필요)</li> </ul>
물품검사 및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신고된 물품과 신고서 상의 내용 일치 여부', 관세법 등 규정에 의해 수입금지 또는 제한 대상 물품 해당 여부',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 '과세 대상 수량 확인',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물리, 화학적 정보 및 사용에 관한 상세 정보' 등 확인</li> </ul>

- 한번 적발되면 라이선스 취소 및 3년 소급하여 벌금 부과
- 수입 허가 승인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 도착 전 승인받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 물품검사는 전체 화물의 10%정도(필요한 경우 100%)가 대상, 물리적 또는 스캔을 사용한 검사 후 물품 반출
- 물품 반출 전, 위생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식물(과채류) 및 육류제품은 세관 검역 대상이 되며,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에서 검사 및 제출한 서류와 기재된 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

## 제4절

# 할랄식품 관리제도

### 1. 제반 환경 및 정책 동향

#### 가. 제반 환경<sup>27)</sup>

-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할랄 환경을 갖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JAKIM) 및 진흥기관(HDC), 할랄 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
  - 말레이시아 내 무슬림 소비자는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많은 할랄 기업들을 기반으로 할랄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할랄 수출액은 420억 링깃(약 100억 달러) 규모이며, 이 중 말레이시아 진출 다국적 기업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산업 개발 마스터플랜(2008~2020)'을 수립하여, 말레이시아를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역, 투자의 중심지인 '글로벌 할랄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획(11th Malaysia Plan 2016-2020, 이하 11th

27) Kotra 진출전략 보고서, 2018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MP)에는 2020년까지 GDP에서 할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8.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할랄제품 수출업체를 현재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늘리고, 수출 규모도 500억 링깃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현재 할랄은 식품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장비, 화장품 및 세면용품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에서도 물류, 포장, 브랜드와 마케팅, 미디어와 여행까지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할랄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식품, 음료, 화장품, 개인용품, 물류, 의약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시아 할랄표준(Malaysia Standards: MS)을 수립하여 제시함
-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은 현재 40개국 66개의 할랄인증과 상호 동등성이 인정되는데, 상호 동등성이 인증된 인증끼리는 상호 수출이 가능하며, JAKIM(영어로는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한국어로는 이슬람개발부) 인증 취득 시 40개 할랄인증 요구국에 추가 인증 없이 진출할 수 있음
- 따라서 말레이시아를 동남아국가 및 이슬람국가 진출의 초석으로 삼아 기타 할랄 시장의 연계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요 유망품목으로는 식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있음

## 나. 정책 동향

### 1) IHAB

- 말레이시아는 할랄 관련 정부지원플랫폼으로서 IHAB(International Halal Authority Board)를 구성하여 2020년 출범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음

- 하나의 플랫폼 아래 인증기관(Certification-Bodies, CB)을 두어 모든 국가의 상호 인정을 위한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가 간 제품의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9] IHAB 설립 계획을 밝힌 홈페이지

출처: <http://www.halalcbconvention.my/ihab-english/>

## 2) 할랄식품표준 (MS1500:2009)

-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표준국(Department of Standardization Malaysia, DSM) 산하 말레이시아 표준개발청(Malaysian Standard Development System)이 국제 규범에 가깝도록 할랄식품표준(MS1500:2009, 2nd Revision)에 대해 계속해서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3) 할랄사업 투자 촉진

-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산업의 본거지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alaysian Digital Economy Corp, MDEC)를 주축으로 “이슬람디지털경제체제(Islamic-Digital-Economy-Framework)”를 구축할 예정
- 본 이슬람디지털경제체제 관련 발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슬람 및 디지털 경제를 바탕으로 현재 기존 벤처 투자 및 벤처 자본거래를 위한 체제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체제는 투자자와 벤처자금을 할랄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치하고, 샤리아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 및 투자하도록 고안됨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Bank Negara Malaysia,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및 기타 여러 정부기관이 이 체제를 지원할 예정

## 다. 할랄인증 기관<sup>28)</sup>

### 1)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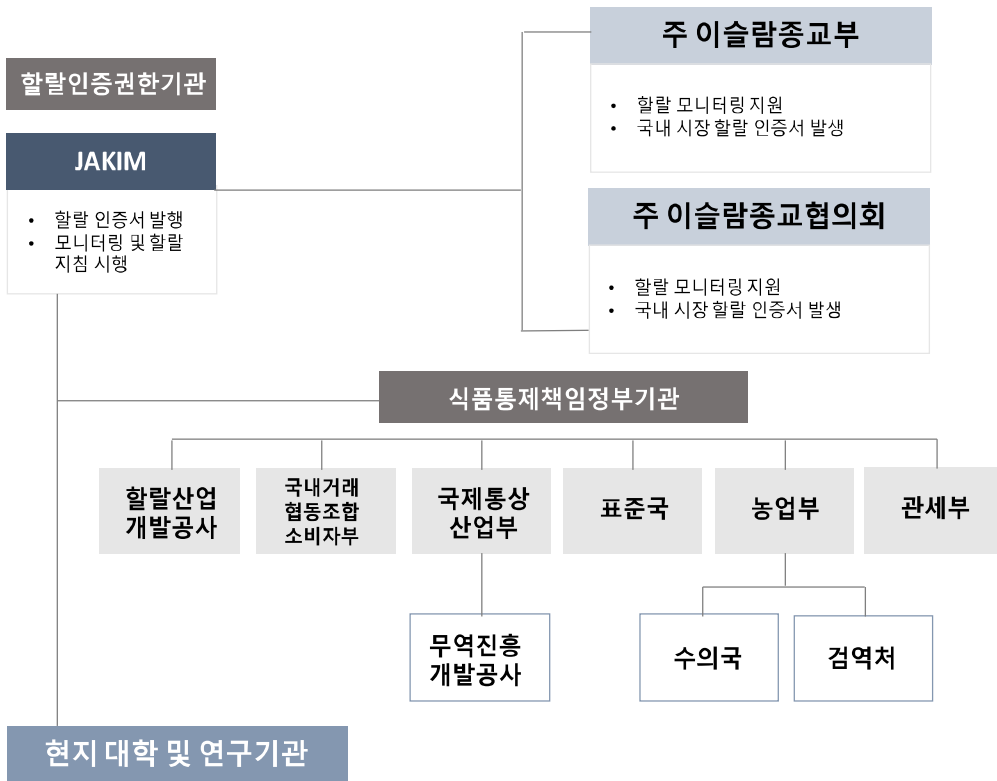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의 할랄 기준 및 인증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음
- ① 할랄인증 권한기관은 JAKIM과 JAIN(Jabatan Agama Islam Negeri, 주 이슬람종교국), MAIN(Majlis Agama Islam Negeri, 주 이슬람종교협의회)이 담당
- ② 관련 공공기관으로 ‘할랄산업개발공사’, ‘국내거래협동조합 소비자부’, ‘국제통산산업부’와 산하기관인 ‘무역진흥개발공사’, ‘표준국’, ‘농업부’와 산하에 ‘수의국’과 ‘검역처’, 그리고 ‘관세청’ 마지막으로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28)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연구원(2016),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 보고서

이 있음

- 이 중 할랄인증 권한 기관이고 가장 상위기관 격인 JAKIM은 '할랄인증서 발행', '모니터링 및 할랄 지침'을 시행하고, JAIN(Jabatan Agama Islam Negeri, 주 이슬람종교국)은 '할랄 모니터링 지원', '국내 시장 할랄인증서 발행'을 MAIN(Majlis Agama Islam Negeri, 주 이슬람종교협의회)는 '할랄 모니터링 지원'과 '국내 시장 할랄인증서 발행' 업무를 주로 담당
- 그 외 나머지 기관들은 식품 통제 및 관련 연구를 수행



[그림 2-20]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관련정부, 협력기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연구원(2016),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 보고서

## 2) JAKIM이 승인한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연구원(2016)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말레이시아는 할랄 수입제품 인증기관으로 세계 33개국 56개 이슬람단체를 승인·인정하고 있음
- JAKIM이 인정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로고를 부착하면 말레이시아 시장에 판매가 허용되며, 그 범위는 가공식품, 도축장, 화장품 등 전반에 해당됨 (단, 유제품 및 도축장의 경우, JAKIM 및 말레이시아 수의국의 승인이 필요함)
  - 2013년 7월 1일부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가 JAKIM이 인정하는 할랄인증기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국내식품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용이해짐

## 2. 할랄인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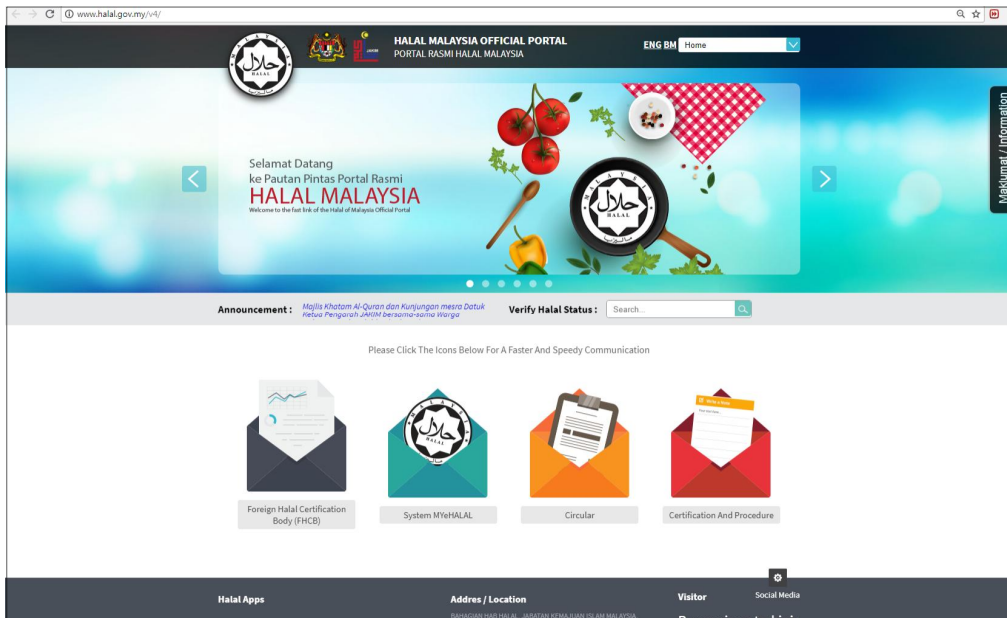
### 가. 말레이시아 인증 표준<sup>29)</sup>

- 말레이시아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DSM)에서 할랄제품에 대한 국가 인증 기준을 정하며, 실제 인증업무는 JAKIM에서 전담하고 있음
- '할랄식품: 생산, 준비,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일반지침(Production, preparation, handling and storage of halal food, MS 1500:2009)'이라고 명명된 말레이시아 표준은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OSTI)의 표준부(DSM)에서 작성하고 있음
  - 이 표준은 국가산업표준화위원회(Industry Standard Committee, ISC)에 의해

29) The Official Website of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OSTI), <http://www.jsm.gov.my/ms-1500-2009-halal-food#.WyDRZjSFP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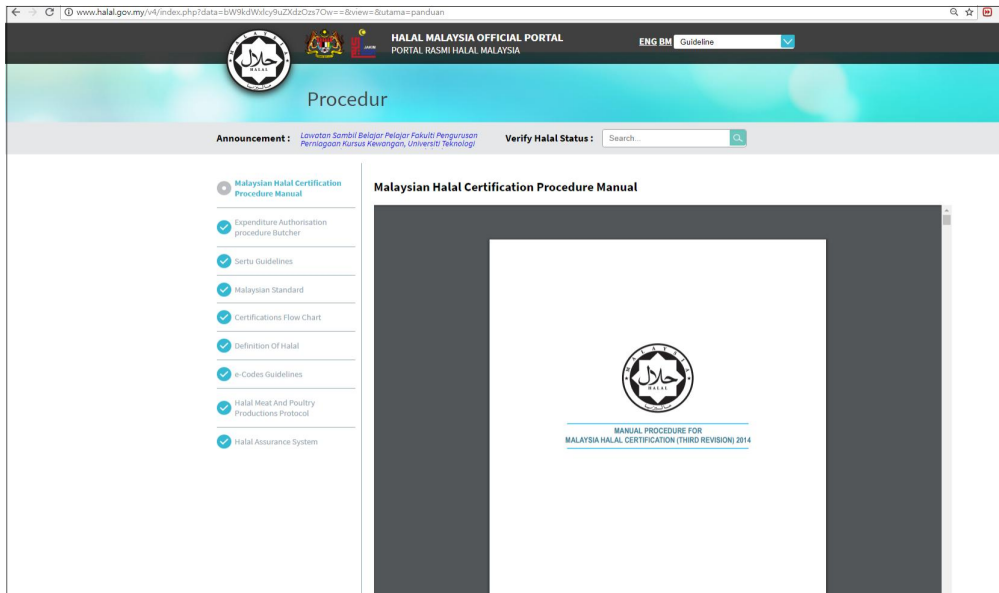
만들어졌으며, 기술위원회의 의장 역할인 JAKIM을 포함한 여러 조직에 의해 구체화됨

- 말레이시아 표준부(DSM)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며, 할랄식품(영양 강화제 포함)의 제조 및 취급에 있어 식품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
- 이 표준은 말레이시아에서 식품 또는 식품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의 설정을 목표로 하며, JAKIM의 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됨
- 이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며, 할랄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 인증이며,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GHP(Good Hygiene Practice)와 같은 국제기준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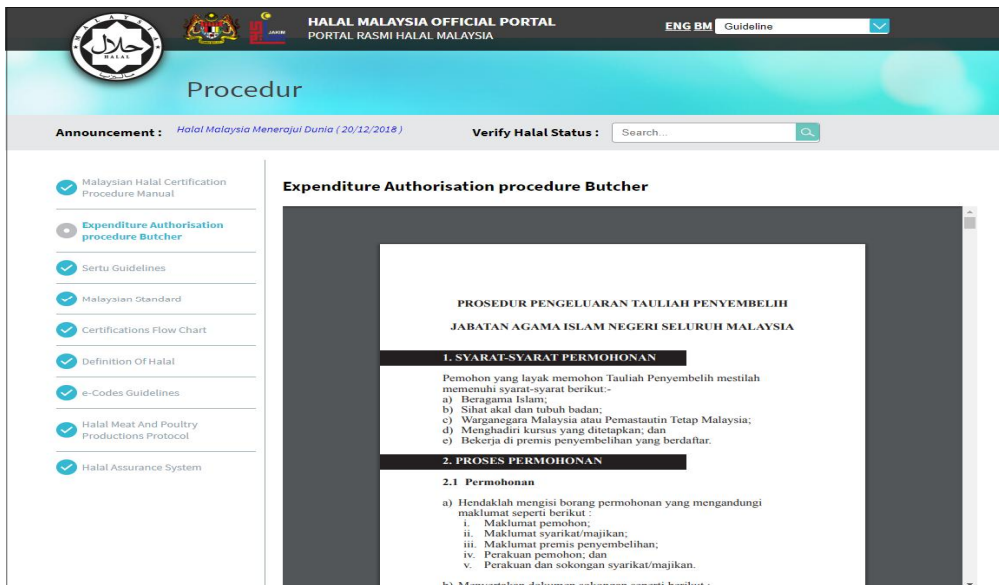


[그림 2-21] 말레이시아 할랄 공식 홈페이지

- MS 1500:2009의 내용
  - 이 표준의 범위 : 할랄식품의 생산, 포장, 수송, 저장
  - 표준 대상 : 말레이시아 자국 내 및 국외 생산자, 유통업자, 무역업자 포함
  - 관련 규정 : 식품 및 음료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Food and Beverage), 할랄육류/가금류 생산에 대한 말레이시아 의정서(Malaysia Protocol For Halal Meat And Poultry Productions 2011)
    - 이 두 가지 규정은 [www.halal.gov.my](http://www.halal.gov.my)에 제시되어 있음
- 인증에 관한 서류 및 절차는 역시 같은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음
  - 위 홈페이지([www.halal.gov.my](http://www.halal.gov.my))에 제시된 그림들 중 네 번째 “Certification And Procedure”를 클릭하면 아홉 가지 절차에 관한 선택항목이 좌측에 나옴
  - 그 중 첫 번째 항목인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절차 메뉴얼(Malaysian Halal Certification Procedure Manual)’에는 인증절차와 요령에 관한 별도의 문서 (영어, 약 67페이지 분량)가 제시되어 있음 (그림 2-22 참조)
    - 해당 문서에는 할랄인증에 관한 ① 범위(Scope), ② 정의(Definition), ③ 인증제도(Certification Scheme), ④ 인증조건(Conditions for Certification), ⑤ 인증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⑥ 제도에 따른 인증을 위한 세부 요구사항(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Scheme), ⑦ 제도에 따른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Scheme), ⑧ 인증 수수료(Certification Fee), ⑨ 심사 절차(Audit Procedure), ⑩ 모니터링과 집행(Monitoring and Enforcement), ⑪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와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Malaysia Halal Certificate and Malaysia Halal Logo), ⑫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보유자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Malaysia Halal Certificate Holder), ⑬ 말레이시아 할랄인증패널(Malaysia Halal Certification Panel), ⑭ 부록(Appendix)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림 2-22]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절차 메뉴얼



[그림 2-23] 할랄인증 시 비용 위임 절차 메뉴얼



- 두 번째 항목인 '비용 위임 절차 일별보기(Expenditure Authorisation procedure Butcher)'에는 비용을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그림 2-23 참조)
- 세 번째 항목인 '인증 가이드라인(Sertu Guidelines)'에는 이슬람 관점에 따른 인증 지침(말레이시아어, 20페이지 분량)이 제시되어 있음(그림 2-24 참조)
- 네 번째 항목인 할랄식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Malaysian Standard)'은 말레이시아 할랄식품 생산, 준비, 취급 및 보관에 관한 일반 기준(General Guide)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그림 2-25 참조)
- 다섯 번째 항목인 '인증 절차의 흐름(Certifications Flow Chart)'에는 '지원자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방법', '지원서 접수 거부 사유', '지원서 작성 내용', '첨부서류 내용' 등에 대한 안내가 제시되어 있음 (그림 2-26 참조)



[그림 2-24] 인증 가이드라인(Sertu Guidelines)



**HALAL MALAYSIA OFFICIAL PORTAL**  
 PORTAL RASMI HALAL MALAYSIA
 ENG BM

---

**Procedur**

**Announcement :** *Lawatan Akademik Kolej Komuniti Pasir Mas, Kelantan ke Bahagian Hub Halal ( 07/11/2018 )*
**Verify Halal Status :**

- Malaysian Halal Certification Procedure Manual
- Expenditure Authorisation procedure Butcher
- Sertu Guidelines
- Malaysian Standard**
- Certifications Flow Chart
- Definition Of Halal
- e-Codes Guidelines
- Halal Meat And Poultry Productions Protocol
- Halal Assurance System

### Malaysian Standard

#### Malaysian Standard on Halal Food (MS 1500:2009)





The Malaysian Standard entitled 'Halal Food: Production, Preparation, Handling and Storage – General Guide (MS 1500:2009) was developed under the Malaysian Standard Development System, under the wing of Department of Standardization Malaysia (DSM),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 Malaysian Standard is one of five government initiatives in realizing the dream of establishing Malaysia as the center of halal food.

The standard was developed by the National Industrial Standardization Committee related to Halal matters (ISC I), and is represented by multiple organisations including JAKIM, that acts as the Chairman for the Technical Committee. Please refer to Appendix 1 for an overview of the standardization development system in Malaysia and how ISC I contributes to this system.

[그림 2-25] 할랄식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



**HALAL MALAYSIA OFFICIAL PORTAL**  
 PORTAL RASMI HALAL MALAYSIA
 ENG BM

---

**Procedur**

**Announcement :** *Kunjung Hormat Yayasan Peneraju Pendidikan Bumiputera ( 20/12/2018 )*
**Verify Halal Status :**


- Malaysian Halal Certification Procedure Manual
- Expenditure Authorisation procedure Butcher
- Sertu Guidelines
- Malaysian Standard
- Certifications Flow Chart**
- Definition Of Halal
- e-Codes Guidelines
- Halal Meat And Poultry Productions Protocol
- Halal Assurance System

### Certifications Flow Chart


Applicants who are eligible to apply for the Halal Confirmation Certificate are categorized as follows:

- Manufacturer/ producer;
- Distributor/ trader;
- Sub-contract manufacturer;
- Repacking;
- Food premise;
- Abattoir/slaughter house;

Application for the Halal Confirmation Certificate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s should be submitted to the JAKIM Halal Hub, as an on-line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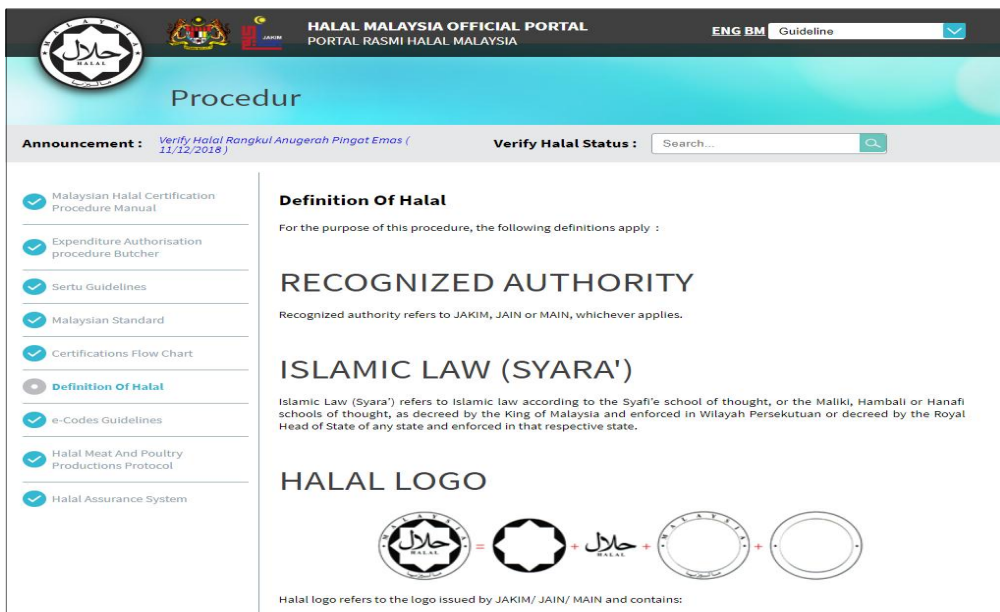
Application for the Halal Confirmation Certificate for the local market must be submitted directly to JAIN/MAIN, whichever one is relev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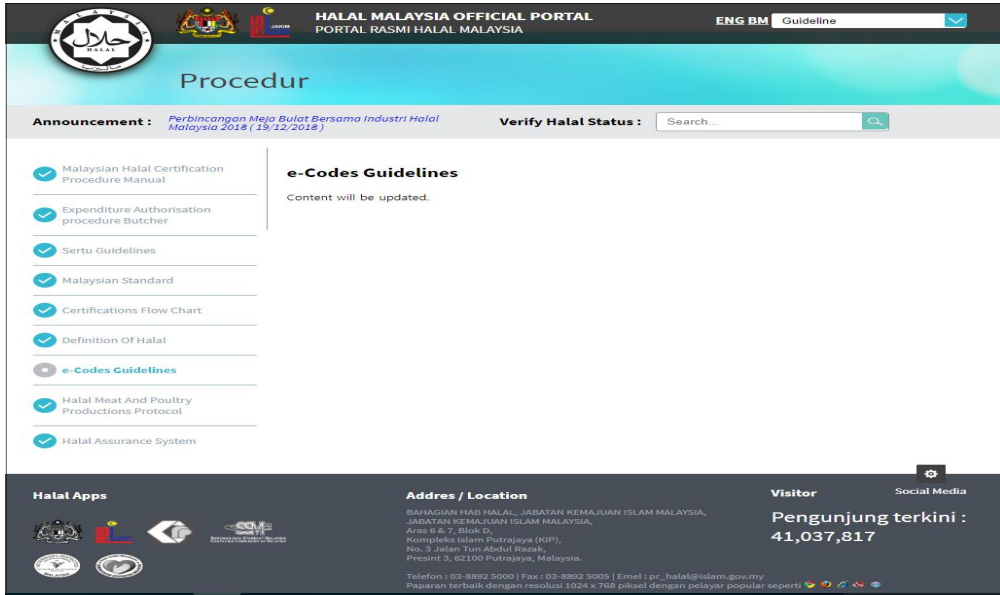
Applications will be unsuccess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그림 2-26] 인증 절차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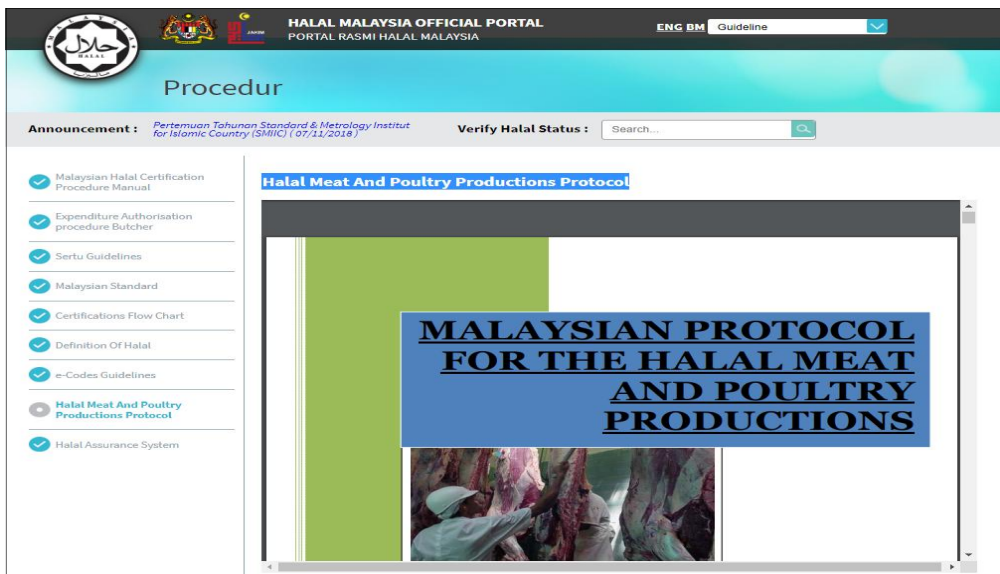
- 여섯 번째 항목인 '할랄의 정의(Definition Of Halal)'에는 '인정되는 기관', '이슬람 법(SYARA)', '할랄 로고', '할랄' 등 할랄에 관한 세부 내용이 정의 및 안내되어 있음 (그림 2-27 참조)
- 일곱 번째 항목인 'e-Codes 가이드라인(e-Codes Guidelines)'에는 현재 내용이 없음 (그림 2-28 참조)
- 여덟 번째 항목인 '할랄 육류 및 가금류 생산 프로토콜(Halal Meat and Poultry Productions Protocol)'은 별도의 문서(영어, 30페이지 분량)로 정리되어 있으며, 할랄 육류 및 가금류 생산에 관한 '범위', '정의', '요구사항', '책임', '비할랄 적합성', '할랄인증'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그림 2-29 참조)



[그림 2-27] 할랄의 정의



[그림 2-28] e-Codes 가이드라인



[그림 2-29] 할랄 육류 및 가금류 생산 프로토콜

- 마지막 아홉 번째 항목인 '할랄 보증 체계(Halal Assurance System)'에는 할랄 보증과 관리 시스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별도의 문서(영어, 12페이지 분량)로 제시되어 있음 (그림 2-30 참조)



[그림 2-30] 할랄 보증 체계

- 말레이시아 내 혹은 국제 시장 판매를 위한 할랄인증 지원은 JAKIM의 할랄 허브인 [www.halal.gov.my](http://www.halal.gov.my)를 통해 가능
- 말레이시아 내 지역 시장을 겨냥한 할랄인증은 JAIN을 통해 가능

#### 나.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 발행업무는 JAKIM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할랄식품 표준을 토대로 한 '할랄인증을 위한 절차 매뉴얼(Manual Procedure for Halal Certification Malaysia)'에 따라 인증절차가 진행됨

- 여기에는 JAKIM 및 JAIN(이슬람종교국)/ MAIN(이슬람종교협의회) 심사관을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음

#### 다. 할랄보증관리시스템

- 말레이시아는 '할랄보증관리체계(Halal Assurance Management System, 이하 HAS)'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할랄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과 할랄을 보증하기 위해 관리수준을 측정하고 특정 위험요소들을 식별하는 시스템임
  - 최종 제품을 테스트하는 대신 예방에 중점을 두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됨
  - 이 지침은 말레이시아 관할당국으로부터 할랄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실제적인 절차를 설명함
  - 이 지침은 할랄보증시스템의 원칙 및 적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할랄제품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함
  - 이는 공급망을 통한 효과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의 개념에 기초하며, 할랄인증서 소지자가 할랄인증에 있어 표준, 규정 및 요구사항을 수행하는데 사용됨
- HAS의 혜택은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해당됨
  - 소비자에게는 '샤리아 율법과 가격에 맞는 가치를 가진 할랄제품 및 서비스 제공', '할랄관리시스템의 통합적이고 엄격하며 체계적인 적용을 통한 믿을 수 있는 할랄제품 및 서비스 제공', '품질에 초점을 맞춘 할랄 토이반 개념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목표로 함
  - 제조업체에게는 '할랄제품에 대한 고객요구 충족', '소비자 신뢰 구축', '고객 유치 마케팅 도구', '할랄제품에 대한 견고한 협력 및 주인의식 구축', '할랄제품의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및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함
- 제품 생산업체는 할랄관리기관에 의해 설정된 요구사항과 함께 전체 공급 절

차를 준수할 수 있는 할랄보증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할랄보증관리시스템은 '효과적인 제품 회수 절차', '효과적인 문서 추적', '관할당국의 심사에 필요한 할랄 지원 절차, 관련 문서, 절차 및 기록을 위한 적절한 문서정리(filing) 시스템'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3. 할랄인증 절차

#### 가. JAKIM의 할랄인증 절차

- JAKIM의 할랄인증은 말레이시아 내 인증과 국제인증으로 구분되는데, 그 대상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제품 및 소비재, 식품사업장(호텔주방, 매점, 프랜차이즈 상점, 식당가, 음식점 등), 도축장 등임 (단, 국제인증은 식품 및 화장품에 국한됨)
- 온라인 할랄인증 절차 및 필요서류는 자국 내외 국제인증 모두 동일하며, 소요기간은 제품별,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신청자가 할랄증명의 모든 조건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정도 소요됨. 케이스에 따라 6-9개월이 소요되기도 함
- JAKIM의 할랄인증 절차는 '신청', '감사·보고', '승인·인증'의 3단계로 진행됨

1단계: 신청	▪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청구서가 5일 이내에 발송됨. 이 청구서에 의거하여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입함으로써 신청이 이루어짐
2단계: 감사·보고	▪ 신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필요 시 샘플링 분석이 이루어지고, 심사보고서 작성 등의 '감사·보고' 절차가 이루어짐

### 3단계: 승인·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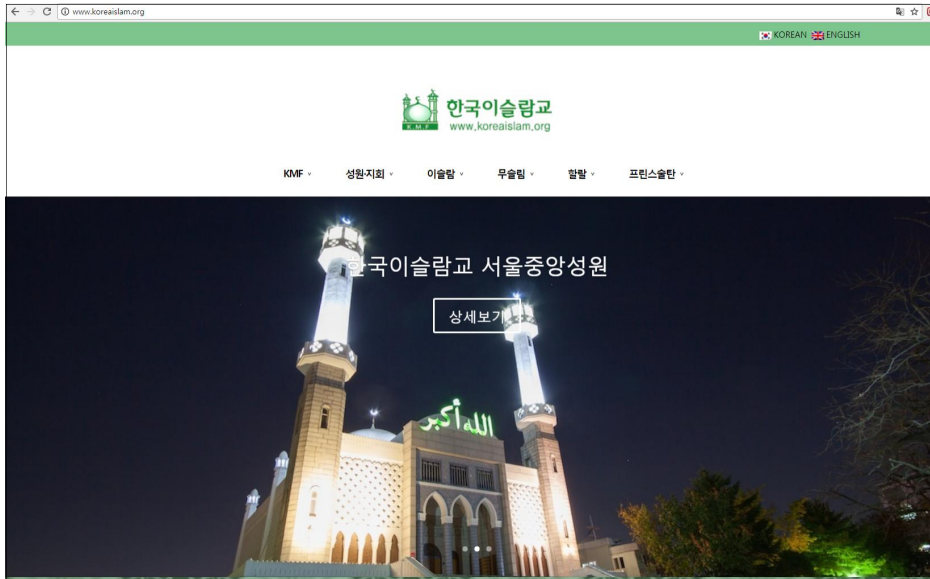
- 인증패널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승인 후 5영업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되고,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승인·인증'의 절차가 완료됨

## 나.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인증 절차

- 우리나라 유일의 할랄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는 JAKIM이 인정한 할랄인증기관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한 제품 단위의 인증을 수행하고 있음
- KMF의 할랄인증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JAKIM의 할랄인증 절차와 비슷하게 '신청', '검토·평가', '승인·인증'의 3단계로 이루어짐
  -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비 및 실사비를 입금하면, KMF에서 서류심사가 진행됨
  - '검토·평가' 단계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한 지적사항 통보 및 보완 시정 요청을 하고, 필요 시 실험실 분석을 병행함
  - '승인·인증' 단계에서는 샤리아 위원회의 승인과 최종 검토를 통해 할랄인증서가 발행됨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의 홈페이지는 [그림 2-31]에 제시된 바와 같음
  - [그림 2-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할랄인증과 관련되어 '할랄인증', '할랄 공지사항', '인증제품', '질문 및 답변', '할랄 자료실' 등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가 마련되어 있음 (부록 7)<sup>30)</sup>

30) <http://www.koreaislam.org>





[그림 2-31]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홈페이지



[그림 2-32]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인증 관련 디렉토리

# 제5절

## 식품 표시

### 1. 식품표시 기준

#### 가. 식품표시 라벨링 제도 개관

- 말레이시아 식품 라벨링 제도는 'Food Regulation 1985 Part IV – Labelling'에 의거함

#### 나. 식품 표시 내용

- 포장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제조, 판매, 광고하여서는 안 됨
  -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한 표시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
  - 규정에 의해 해당 포장에 표시가 금지된 문구가 포함된 경우, 또는
  - 규정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을 포함한 표시의 위치 또는 방법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 사용 언어

## 사용 언어

-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 포장의 표시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 문장, 정보 또는 방법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제조 또는 포장된 식품의 경우 말레이어로 표기
- 수입 식품의 경우 말레이어나 영어로 표기
- 다른 언어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음

### ▪ 표시 세부사항

- 판매용 식품을 포함하는 모든 포장은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식품의 적절한 명칭 또는 주요 성분의 일반명을 포함하는 식품의 설명
  - 혼합 또는 배합된 식품의 경우, 내용물이 혼합 또는 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
  - 식품에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나 그 가공품 또는 돈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품에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나 그 가공품 또는 돈지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 알코올이 첨가된 식품의 경우는, 해당 식품에 이러한 알코올이 존재한다는 사실
  - 식품이 물, 식품첨가물 및 영양강화제 이외의 둘 이상의 성분으로 제조된 경우, 이들 각 성분의 적절한 명칭을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하고, 본 규정에 의해 요구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성분의 비율에 대해 명시하여야 함
  - 알레르기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표시사항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여야 함
    - \*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식품 또는 성분은 다음과 같음
      - (a) 밀, 호밀, 보리, 귀리를 포함한 글루텐 함유 곡물

- (b) 땅콩과 대두를 포함한 견과류 및 견과류 가공품
  - (c)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 (d) 우유 및 유가공품(유당 포함)
  - (e) 알 및 알가공품
- 식용 지방, 식용 기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식품에 이러한 성분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문구와 지방 또는 기름의 원료인 동물 또는 식물의 일반명이 표시되어야 함
  - 식품첨가물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식품에 식품첨가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 최소 순 중량 또는 부피나 내용물의 수를 나타내는 문구
  - 액체와 함께 포장된 식품의 경우, 내용량
  - 말레이시아 내에서 제조 또는 포장된 식품의 경우, 제조업자, 포장업자, 제조 또는 포장 권리 소유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이름과 영업지 주소
  - 수입 식품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과 영업지 주소, 말레이시아 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영업지 주소, 그리고 원산지
  - 특정 식품의 경우에 본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세부사항
- 식품의 성분 또는 식품첨가물이 동물로부터 제조된 경우, 해당 식품의 표시사항에 이러한 동물의 일반명이 표시되어야 함
  -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생산된 식품 및 식품 성분의 출처를 명시해야 함
  - 해당 식품첨가물의 명칭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는 성분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한 원료 동물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없음
- 표시 형태 및 방법
    - 규정에 의해 표시되도록 요구되는 세부사항은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시사항에 표시해야 함
    - 표시 세부사항의 문자는 높이, 시각적 강조 및 위치가 표시사항에 표시되는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 눈에 띄어야 함

- 규정에 의해 포장에 표시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표시사항은 포장의 재료 또는 포장에 부착된 재료에 읽기 쉽고 오래가도록 표시되어야 함
-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포장 내부에 (건고하게) 부착될 수 있음
  - (a) 포장이 투명 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 (b) 포장에 담긴 식품이
    - (i) 바로 섭취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 또는
    - (ii) 바로 섭취하기 위해 제조된 식품의 경우, 천연 껍질 또는 깍지나 내부 포장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표시사항과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표시사항을 식품의 추가 포장지에 표시하여서는 안 됨
- 문자의 크기와 색상
  - 표시사항에 사용될 문자의 크기가 최소 포인트가 규정된 경우, 이는 활자면의 소문자 높이를, 또는 문구가 전부 대문자인 경우에는 활자축의 높이와 관계없이 활자면의 대문자 높이로 함
  -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량 및 측정의 단위 기호를 제외하고, 규정에 의해 표시사항에 표시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문구 또는 표현의 문자는 a) 모두 대문자, b) 모두 소문자, 또는 c)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소문자 표시
  - 모든 문자는 배경과 강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되어야 함
- 날짜 표시
  - 날짜 표시(date marking)는 식품의 포장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에 영구적으로 표시 또는 양각되어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최소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 유통기한(expiry date)은 해당 날짜가 지나면 해당 식품의 표시사항에 명시된

저장 조건에 따라 보관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섭취자가 기대하는 품질 특성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

- 최소품질 유지기한(date of minimum durability)는 해당 식품의 표시사항에 명시된 저장 조건에 따라 보관을 했을 때 해당 날짜까지 암묵적 또는 명시적 강조 표시가 이루어진 특정한 특성이 유지되는 날짜를 의미
- 섭취자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백한 날짜 표시만을 함. 로트 식별을 위한 코드 형태의 날짜 표시만을 하여서는 안 됨
- 날짜 표시의 유효성이 식품이 보존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당 식품의 보존 방법 또한 표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함

<b>날짜 표시(date markin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에 영구적으로 표시 또는 양각되도록 표시</li> </ul>
<b>유통기한(expiry dat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날짜가 지나면 표시사항에 명시된 저장 조건에 따라 보관했을 때 일반적으로 섭취자가 기대하는 품질 특성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날짜</li> </ul>
<b>최소품질 유지기한(date of minimum durabilit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사항에 명시된 저장 조건에 따라 보관했을 때 해당 날짜까지 암묵적 또는 명시적 강조 표시가 이루어진 특정한 특성이 유지되는 날짜</li> </ul>
<b>식품 보존 방법과 날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짜의 유효성이 식품이 보존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당 식품의 보존 방법 표시</li> </ul>

- 금지 사항
  - 식품의 포장에 표시되거나 부착되거나 이와 함께 제공하는 모든 가공식품 설명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해 직접적 또는 암시적으로 모순되

거나, 제한, 또는 변경된 경우 해당 표시사항 상의 의견, 참조 또는 설명으로  
서 포함되어서는 안 됨

- 등급, 품질, 우수성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는 이러한 품질 등급에 대한 설명이 해당 등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에 의해 인정된 표현을 준수하지 않는 한 식품의 포장에 표시되어서는 안 됨
- 또한, 이러한 단어가 표시사항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식품이 해당 품질 등급 관련기관에 의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순수(pure)" 또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 (a) 식품이 본 규정에 의해 규정된 함량, 순도 및 품질에 적합하고 해당식품의 가공에 필수적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또한
  - (b) 본 규정에서 해당 식품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에 해당 문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 표시사항에 "복합", "약용", "강장", "건강" 등의 단어나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 규정에 의해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의 사용 또는 제공에 대한 안내를 위한 레시피를 설명하는 그림 또는 디자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섭취자를 기만하는 경우 표시사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 식품을 설명하는 표시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강조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
  - (a) 본 규정에서 별도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식품이 모든 필수 영양성분을 충분히 제공한다고 명시하는 강조 표시
  - (b) 균형 잡힌 식단 또는 다양한 식품의 섭취가 모든 영양성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고 암시하는 강조 표시
  - (c) 입증할 수 없는 강조 표시

- (d) 본 규정에서 별도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 장애 또는 특정한 생리적 증상의 예방, 완화, 치료 또는 치유에 관한 강조 표시, 또는
- (e) 유사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섭취자의 두려움을 유발 또는 악용할 수 있는 강조 표시
- 말레이시아 기준 'MS 1529: 식물에 기반한 유기농 식품의 생산, 처리, 표시 및 마케팅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식품을 설명하는 표시사항에 "유기(organic)", "생물(biological)", "생태(ecological)", "생체 역학(biodynamic)" 또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식품을 설명하는 표시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영양(nutritious)" 또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 (a) 식품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 (b) 식품이 100g 당 40kcal 또는 100mL 당 20kcal의 상당한 양의 열량을 포함하는 경우
  - (c) 식품이 100g 당 5g 또는 100mL 당 2.5g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경우
  - (d) 식품이 영양원으로서의 강조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 네 가지 비타민 및 두 가지 무기질(나트륨 제외)을 함유하는 경우, 또한
  - (e) 제 (a) 항 및 (d) 항에서 언급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확인된 경우



## 2. 식품표시 예시31)

- 말레이시아어로 표기된 경우

**1 제품명**

**2 영양정보**

MAKLUMAT PEMAKANAN		
Saiz Hidangan : 1 Sudu Besar (14g)		
Jumlah Hidangan Sebotal : 142		
	Sehidangan (14g)	Per 100g
Tenaga	126kcal	900kcal
Protein	0g	0g
Karbohidrat	0g	0g
Jumlah Lemak	14g	100g
• Monotidaktepu	6.3g	45g
• Politidaktepu	1.7g	12g
• Tepu	6.0g	43g
• Asid Lemak Trans	0g	0g
Kolesterol	0mg	0mg
Natrium	0mg	0mg
Vitamin E	8.4mg	60mg

**3 중량**

Berat Bersih:  
**2kg**  
2.2 liter

9 556046 111084

**4 생산/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정보**

Dibuat oleh  
LAM SOON EDIBLE OILS SDN BHD  
Wisma DLS, 6, Jln Jurunilai U120,  
HiCom-Glenmarie Industrial Park,  
40150 Shah Alam, Selangor, Malaysia

**5 재료**

Ramuan : Olein Sawit Bertapis

[www.lamsoon.com.my](http://www.lamsoon.com.my)

31) 이 세부절에 제시된 사진들은 연구진이 말레이시아 대형마트와 소매점들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것임





▪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1 제품명

2 재료

3 해당



1 생산일자  
유통기한

2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정보

3 제품명

4 영양정보

5 해당

6 재료

Nutrition Facts		Amount/ServingDV %	* Amount/ServingDV %
Total Fat	0 g	0 %	Total Carb. 80 g 27 %
Sat. Fat	0 g	0 %	Dietary Fiber 19 g 76 %
Trans Fat	0 g	0 %	Sugars 57 g
Cholest.	0 mg	0 %	Protein 3 g
Sodium	1440 mg	60 %	
*Percent Daily Values(DV) are based on a diet of other people's misdeeds.			
Vitamin A 0 % • Vitamin C 0 % • Calcium 0 % • Iron 0 %			
Ingredients: fructooligosaccharide, hot chilli paste(fermented wheat paste, corn syrup, hot chilli seasoning, pregelatinized wheat starch, spirits, soybean), sugar, isomaltooligosaccharide, ketchup(tomato paste, corn starch, vinegar, acetylated distarch adipate, spice mixture, citric acid, wheat extract), water, garlic, onion, hot chilli powder, salt, onion concentrate(leek & onion extract), oleoresin paprika, wheat extract, xanthan gum, disodium inosinate, disodium guanylate.			
Allergy advice: Contains WHEAT and SOYBEANS.			

■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1 제품명**



**2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정보**

**3 제품소개**

**4 주의사항**



**5 보관법**

**6 재료**

**7 영양정보**

영양성분	100g	유통용량 기준(한팩)	100g	유통용량 기준(한팩)
나트륨	560 mg	28%	지방	35 g
총 지방	13 g	4%	탄수화물	0.5 g 미만
당원	9 g	9%	포화지방	10 g
포화지방	2.5 g	22%	트랜스지방	2 g



-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1 제품명**  
SAMYANG Hot Spicy Buldak Bbimmyeon Noodle

**2 중량**  
140g

**3 재료**  
WARRANTY STATEMENT: SAMYANG FOODS CO., LTD. IS NOT RESPONSIBLE FOR ANY DAMAGE TO PERSONS OR PROPERTY CAUSED BY THE USE OF THIS PRODUCT. THE US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TO PERSONS OR PROPERTY CAUSED BY THE USE OF THIS PRODUCT. THE US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TO PERSONS OR PROPERTY CAUSED BY THE USE OF THIS PRODUCT.

**4 유통기한 안내**  
Best before date: 2023.08.31

**5 수입업체 정보**  
수입 및 유통업체: SAMYANG FOODS CO., LTD.

**6 영양정보**

Nutrition Facts		Valeur nutritive	
Per 1 container (140 g)		Pour 1 container (140 g)	
<b>Calories</b>	<b>530</b>	% Daily Value*	% valeur quotidienne*
Fat / Lipides	16 g	21 %	21 %
Saturated / Saturés	8 g	40 %	40 %
+Trans / trans	0 g		
Carbohydrate / Glucides	85 g		
Fibre / Fibres	1 g	4 %	4 %
Sugars / Sucres	7 g	7 %	7 %
Protein / Protéines	12 g		
Cholesterol / Cholestérol	0 mg	0 %	0 %
Sodium	1,280 mg	56 %	56 %
Potassium	0 mg	0 %	0 %
Calcium	0 mg	0 %	0 %
Iron / Fer	0 mg	0 %	0 %

\*5% or less is a little, 15% or more is a lot  
\*5% ou moins c'est peu, 15% ou plus c'est beaucoup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 per package: 5      Serving size: 140.00 g

Nutrition	Per serving	Per 100g
Energy (kJ)	2,216 kJ	1,584 kJ
Energy (kcal)	530 kcal	379 kcal
Fat, total	16.0 g	11.4 g
- saturates	8.0 g	5.7 g
Carbohydrate	85.0 g	60.7 g
- of which sugars	7.0 g	5.0 g
Fiber	1.0 g	0.7 g
Protein	12.0 g	8.6 g
Salt	3.3 g	2.3 g
- Sodium	1,280 mg	914 mg

### 3.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4년 7월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식품원료에 대해서 의무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 장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광고할 수 없음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만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3% 미만으로 함유되어있는 경우, 이러한 함유가 의도되지 않았거나 혹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됨
  - 만일 하나의 원료로 구성되어있는 식품이며, 이 원료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genetically modified) (원료명)”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여러 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인 경우, “유전자재조합(원료명)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name of ingredient))”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식용유나 옥수수시럽처럼 제조나 정제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원래의 DNA나 단백질이 사라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이용한 사료를 먹인 가축의 고기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유전자재조합식품은 그 안전성이 NBB(national biosafety board)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식품이나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GMO Free’나 ‘Non-GMO’ 표시가 허용되지 않음
- 더 자세한 사항은 [부록 6] 참조





## 제6절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 1. 말레이시아 식품기준 및 규격

- 말레이시아 식품법 1983(Food Act 1983)에 식품, 표시, 포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식품(food)은 인간의 섭취를 위해 식품 또는 음료로서 제조, 판매, 또는 제시되는 것이거나,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 보존에 사용되는 것으로, 과자, 씹는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인 것들을 포함함
  - 수입업자(importer)는 소유자, 위탁자, 수탁자,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수입된 식품을 소유하거나 보관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 표시(label)는 각종 태그, 브랜드, 마크, 그림 또는 여타의 설명 자료로, 이는 식품에 글씨로 쓰거나 인쇄, 스텐실, 마크, 도색, 양각 또는 새기는 것, 또는 제품에 부착, 포함시키거나 함께 포장하는 형태를 포함함
  - 포장(package)은 식품을 상자에 넣거나, 덮거나, 둘러싸거나, 안에 넣거나, 배치하거나, 포장하는 모든 것 또는 그러한 수단을 포함하며,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바구니, 양동이, 쟁반 또는 용기를 포함함
- 말레이시아의 식품 분류
  - 식품규정 1985(Food Regulations 1985), 제 8편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에 식품의 분류가 제시되어 있음

[표 2-11]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말레이시아 식품유형 분류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135 밀가루 과자	135 Flour confection
		137 냉동 과자	137 Frozen confection
		139 테이블 과자	139 Table confection
		168 수산물 꼬루백 (양파 새우 생선가루가 섞인 튀김과자)	168 Fish keropok
	캔디류	136 사탕	136 Sugar confection
		139A 규격이 있는 젤리	139A Controlled jelly confection
	추잉껌	136 설탕 과자	136 Sugar confection
	빵류	65 빵류	65 Bread
		66 흰 빵	66 White bread
		68 과일 빵	68 Fruit bread
		69 우유 빵	69 Milk bread
		70 으깬 곡물 빵	70 Meal bread
		72 호밀 빵	72 Rye bread
		73 밀 배아 빵	73 Wheat-germ bread
		74 통밀 빵	74 Wholemeal bread
	75 영양강화 빵	75 Enriched bread	
	떡류	-	-
2.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116 아이스크림	116 Ice cream
		282 밀크셰이크	282 Milk shake
		138 빙과	138 Ice confection
	아이스크림믹스류	116 아이스크림	116 Ice cream
		282 밀크셰이크	282 Milk shake
		138 빙과	138 Ice confection
	빙과	138 빙과	138 Ice confection
얼음류	138 빙과	138 Ice confection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276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매스, 코코아 슬래브 또는 코코아 액	276 Cocoa paste, cocoa mass, cocoa slab or cocoa liquor
		277 코코아버터	277 Cocoa butter
		278 코코아, 코코아분말 또는 가용성 코코아	278 Cocoa or cocoa powder or soluble cocoa
	초콜릿류	279 초콜릿	279 Chocolate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4. 당류		280 화이트 초콜릿	280 White chocolate
		281 밀크 초콜릿	281 Milk chocolate
	설탕	118 설탕	118 Sugar
		119 분말형 갈색설탕	119 Soft brown sugar
	기타설탕	131 분당	131 Icing sugar
		118A 스테비아 추출물(대체당의 일종)	118A Stevia extract
		118B 효소처리스테비아	118B 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120 색깔 설탕 또는 무지개 설탕	120 Coloured sugar or rainbow sugar
		126 굴라 말라카	126 Gula melaka
		127 굴라 카봉	127 Gula kabong
		당시럽류	123 정제 시럽
	올리고당류	129 고과당 액상포도당	129 High fructose glucose syrup
	포도당	121 무수 결정포도당	121 Dextrose anhydrous
		122 함수 결정포도당	122 Dextrose monohydrates
		124 포도당	124 Glucose
		125 액상포도당	125 Glucose syrup
		129 고과당 액상포도당	129 High fructose glucose syrup
	과당류	128 과당	128 Fructose
		129 고과당 액상포도당	129 High fructose glucose syrup
	물엿	132 물엿	132 Molasses
기타엿	-	-	
텍스트린	-	-	
당류가공품류	134A 음료 화이트너	134A Beverage whitener	
5. 잼류	잼	246 잼	246 Jam
		248 마멀레이드	248 Marmalade
		249 세리 카야 잼	249 Seri kaya
	기타잼	247 과일 젤리	247 Fruit jelly
		250 펙틴	250 Pectin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251 잼 제조용 가공품	251 Jam setting compound
6.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	-
	유마	-	-
	가공두부	-	-
	묵류	-	-
7. 식용유 지류	콩기름(대두유)	206 콩기름	206 Soya bean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옥수수기름(옥배유)	192 옥수수기름	192 Corn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203 유채유 또는 토리아기름	203 Rapeseed oil or toria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미강유(현미유)	202 쌀겨기름	202 Rice bran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참기름 추출참깨유	205 참깨유 또는 참기름	205 Sesame seed oil or gingelly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들기름 추출들깨유	205 참깨유 또는 참기름	205 Sesame seed oil or gingelly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204 홍화씨유	204 Safflower seed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해바라기유	207 해바라기유	207 Sunflower seed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목화씨기름(면실유)	193 면실유	193 Cottonseed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땅콩기름(낙화생유)	194 땅콩기름 또는 아라키스기름	194 Groundnut oil, peanut oil or arachis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올리브유	201 올리브유	201 Olive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183 정제, 표백, 탈취 팜 스테아린유	183 Refined, bleached, deodorized palm stearin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팜핵유	184 중화, 표백, 탈취 팜 스테아린유	184 Neutralized, bleached, deodorized palm stearin
		196 정제, 표백, 탈취 팜유	196 Refined, bleached, deodorized palm oil
		197 중화, 표백, 탈취 팜유	197 Neutralized, bleached, deodorized palm oil
		198 정제, 표백, 탈취 팜올레인유	198 Refined, bleached, deodorized palm olein
		199 중화, 표백, 탈취 팜올레인유	199 Neutralized, bleached, deodorized palm olein
		200 정제, 표백, 탈취 팜핵유	200 Refined, bleached, deodorized palm kernel oil
	야자유	190 정제 코코넛유	190 Refined coconut oil
		191 비정제 코코넛유	191 Unrefined coconut oil
	고추씨기름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기타식물성유지	195 겨자기름	195 Mustardseed oil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식용우지 원료우지	180 드리핑	180 Dripping
		181 스위트 (동물 지방질)	181 Suet
	식용돈지 원료돈지	182 돈지	182 Lard
	기타동물성유지	180 드리핑	180 Dripping
		181 스위트 (동물 지방질)	181 Suet
	혼합식용유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향미유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가공유지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쇼트닝	189 조리용 기름	189 Cooking oil
	마가린류	185 마가린	185 Margarine
		186 지방 스프레드	186 Fat spread
		187 바나스파티 (버터 대용 식물성 유지)	187 Vanaspati
	모조치즈	186 지방 스프레드	186 Fat spread
		187 바나스파티 (버터 대용)	187 Vanaspati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식물성 유지)	
	식물성크림	134A 음료 화이트너	134A Beverage whitener
		134B 감미 크림	134B Sweetened creamer
		134C 비유가공품 크림	134C Non dairy creamer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187 바나스파티 (버터 대용 식물성 유지)	187 Vanaspati
8. 면류	생면	63 파스타	63 Pasta
	숙면	63 파스타	63 Pasta
	건면	63 파스타	63 Pasta
	유탕면	63 파스타	63 Pasta
9. 음료류	침출차	260 차	260 Tea
		261 더스트급 차분말, 패닝급 차분말 또는 체질한 차분말	261 Tea dust, tea fanning or tea sifting
		262 차 추출물, 인스턴트 차 또는 가용성 차	262 Tea extract, instant tea or soluble tea
		263 가향차	263 Scented tea
		263A 혼합차	263A Tea mix
		270 치커리	270 Chicory
	액상차	260 차	260 Tea
		261 더스트급 차분말, 패닝급 차분말 또는 체질한 차분말	261 Tea dust, tea fanning or tea sifting
		262 차 추출물, 인스턴트 차 또는 가용성 차	262 Tea extract, instant tea or soluble tea
		263 가향차	263 Scented tea
		263A 혼합차	263A Tea mix
		270 치커리	270 Chicory
	고형차	260 차	260 Tea
		261 더스트급 차분말, 패닝급 차분말 또는 체질한 차분말	261 Tea dust, tea fanning or tea sifting
		262 차 추출물, 인스턴트 차 또는 가용성 차	262 Tea extract, instant tea or soluble tea
		263 가향차	263 Scented tea
		263A 혼합차	263A Tea mix
		270 치커리	270 Chicory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커피	265 커피 콩	265 Coffee bean
		266 커피, 곱게 간 커피 또는 커피 분말	266 Coffee or ground coffee or coffee powder
		267 인스턴트커피 또는 가용성 커피	267 Instant coffee or soluble coffee
		267A 디카페인 커피	267A Decaffeinated coffee
		268 커피 에센스 또는 액상 커피 추출물	268 Coffee essence or liquid coffee extract
		269 커피 혼합물	269 Coffee mixture
		269A 프리믹스 커피	269A Premix coffee
		271 커피와 치커리	271 Coffee and chicory
		272 인스턴트커피와 치커리 또는 가용성 커피와 치커리 추출물	272 Instant coffee and chicory or soluble coffee and chicory extract
		273 커피와 치커리 에센스 또는 액상 커피와 치커리 추출물	273 Coffee and chicory essence or liquid coffee and chicory extract
	과일·채소류음료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19 채소 주스	219 Vegetable juice
		235 과일 주스	235 Fruit juice
		228 과일 가공품	228 Fruit product
		236 사과 주스	236 Apple juice
		237 자몽 주스	237 Grapefruit juice
		238 레몬 주스	238 Lemon juice
		239 라임 주스	239 Lime juice
		240 오렌지 주스	240 Orange juice
		241 패션 프루트 주스	241 Passion fruit juice
242 파인애플 주스	242 Pineapple juice		
243A 과일즙	243A Fruit nectar		
245 과일 퓨레 또는 과일 페이스트	245 Fruit puree or fruit paste		
349 시럽	349 Syrup		
350 과일 시럽, 과일 코디얼	350 Fruit syrup, fruit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또는 과일 스쿼시	cordial or fruit squash
		351 향첨가 시럽 또는 향첨가 코디얼	351 Flavoured syrup or flavoured cordial
		352 과일주스음료	352 Fruit juice drink
		353 과일음료	353 Fruit drink
	탄산음료류	352 과일주스음료	352 Fruit juice drink
		353 과일음료	353 Fruit drink
		354 향첨가음료	354 Flavoured drink
		360A 천연 광천수	360A Natural mineral water
	두유류	357 두유	357 Soya bean milk
		358 콩 음료	358 Soya bean drink
	발효음료류	113 미생물 배양유 또는 발효유	113 Cultured milk or fermented milk
	인삼, 홍삼음료	356 식물성 혼합음료	356 Botanical beverage mix
	기타음료	355 청량음료 베이스 또는 청량음료 프리믹스	355 Soft drink base or soft drink premix
		354 향첨가음료	354 Flavoured drink
356 식물성 혼합음료		356 Botanical beverage mix	
10. 특수용도식품	조제유류	-	-
	영아용 조제식	389 영아용 조제식	389 Infant formula
		391 영유아용 곡류가공품	391 Cereal-based food for infants and children
		390 영유아용 통조림 식품	390 Canned food for infants and children
	성장기용 조제식	389A 성장기용 조제식	389A Follow-up formula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391 영유아용 곡류가공품	391 Cereal-based food for infants and children
		390 영유아용 통조림 식품	390 Canned food for infants and children
	기타영·유아식	391 영유아용 곡류가공품	391 Cereal-based food for infants and children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388 특수용도식품	388 Special purpose food
		393 식이섭취용 조제식	393 Formula dietary food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393A 소금 대체물을 함유한 저나트륨 특수용도식품	393A Special dietary foods with low sodium content including salt substitute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392 저열량식품	392 Low energy food
	임산·수유부용식품	388 특수용도식품	388 Special purpose food
11.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1 발효 콩 가공품	221 Fermented soya bean product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1 발효 콩 가공품	221 Fermented soya bean product
		340 간장 또는 킵	340 Soya sauce or soya bean sauce or kicap
	한식된장 된장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1 발효 콩 가공품	221 Fermented soya bean product
	고추장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1 발효 콩 가공품	221 Fermented soya bean product
	춘장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1 발효 콩 가공품	221 Fermented soya bean product
	청국장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1 발효 콩 가공품	221 Fermented soya bean product
	혼합장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1 발효 콩 가공품	221 Fermented soya bean product
	기타장류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221 발효 콩 가공품	221 Fermented soya bean product
12. 조미식품	식초	334 식초	334 Vinegar
		335 증류 식초	335 Distilled vinegar
		336 혼합 식초	336 Blended vinegar
		337 인공 식초 또는 합성 식초	337 Artificial vinegar or synthetic vinegar
	소스류	164 생선 소스	164 Fish sauce
		166A 굴 소스	166A Oyster sauce
		166B 굴맛 소스	166B Oyster flavoured sauce
		169 오타크 우당, 뿌디스 또는 헤코	169 Otak udang, petis or heko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16 토마토 페이스트	216 Tomato paste
		217 토마토 펄프	217 Tomato pulp
		218 토마토 퓨레	218 Tomato puree
		222 가수분해 채소단백질 또는 가수분해 식물성단백질	222 Hydrolysed vegetable protein or hydrolysed plant protein
		339 소스	339 Sauce
		341 가수분해 채소단백질 소스 또는 가수분해 식물성단백질 소스	341 Hydrolysed vegetable protein sauce or hydrolysed plant protein sauce
		341A 혼합 가수분해 채소단백질 소스 또는 혼합 가수분해 식물성단백질 소스	341A Blended hydrolysed vegetable protein sauce or blended hydrolysed plant protein sauce
		342 칠리소스	342 Chilli sauce
		343 토마토소스 또는 토마토케첩	343 Tomato sauce or tomato ketchup or tomato catsup
		344 샐러드드레싱	344 Salad dressing
		345 마요네즈	345 Mayonnaise
		346 처트니	346 Chutney
		카레(커리)	333A 카레 분말
	고춧가루 또는	286 향신료	286 Spice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실고추	297 칠리	297 Chilli
		298 칠리 가루	298 Chilli powder
		299 칠리 슬러리	299 Chilli slurry
	향신료가공품	286 향신료	286 Spice
		287A 아니스 씨 분말	287A Aniseed powder
		289 캐러웨이 분말	289 Caraway powder
		292 소두구 분말	292 Cardamom powder
		295 소두구 사인 분말	295 Cardamom amomum powder
		296 셀러리 씨	296 Celery seed
		301 계피 분말	301 Cinnamon powder
		303 정향 분말	303 Cloves powder
		305 고수열매 분말	305 Coriander powder
		307 쿠민 분말	307 Cumin powder
		309 블랙 쿠민 분말	309 Cumin black powder
		310 딜 씨	310 Dill seed
		312 회향 분말	312 Fennel powder
		314 호로파 분말	314 Fenugreek powder
		316 생강 분말	316 Ginger powder
		318 메이스 분말	318 Mace powder
		320 겨자 분말	320 Mustard powder
		322 육두구 분말	322 Nutmeg powder
324 후추 분말	324 Black pepper powder		
326 백후추 분말	326 White pepper powder		
327 혼합 후추 분말	327 Mixed pepper powder		
328 피멘토	328 Pimento		
329 샤프론	329 Saffron		
330 스타아니스	330 Star anise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332 울금 분말	332 Tumeric powder
		332A 혼합 울금 분말	332A Blended tumeric powder
		333 혼합 향신료	333 Mixed spice
	식염	283 소금	283 Salt
		284 식탁용 소금	284 Table salt
		285 식탁용 아이오딘첨가 소금 또는 아이오딘첨가 소금	285 Iodised table salt or iodised salt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11 건조 또는 탈수 채소	211 Dried or dehydrated vegetable
		214 소금에 절인 채소	214 Salted vegetable
		215 소금에 절인 건조 채소	215 Dried salted vegetable
		220 통조림 채소	220 Canned vegetable
	절임류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11 건조 또는 탈수 채소	211 Dried or dehydrated vegetable
		214 소금에 절인 채소	214 Salted vegetable
		215 소금에 절인 건조 채소	215 Dried salted vegetable
		220 통조림 채소	220 Canned vegetable
		228 과일 가공품	228 Fruit product
		229 설탕에 조린 과일 또는 설탕에 절인 과일	229 Candied fruit or glazed fruit or crystallized fruit
		230 소금에 절인 과일	230 Salted fruit
		231 소금에 절인 건조 과일	231 Dried salted fruit
	347 피클	347 Pickle	
	조림류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0 통조림 채소	220 Canned vegetable
		228 과일 가공품	228 Fruit product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229 설탕에 조린 과일 또는 설탕에 절인 과일	229 Candied fruit or glazed fruit or crystallized fruit
		232 설탕에 조린 껍질	232 Candied peel
14. 주류	탁주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약주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청주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375 청주	375 Rice wine
	맥주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374 맥주, 라거, 에일 또는 흑맥주	374 Beer, larger, ale or stout
		387 샌디	387 Shandy
	과실주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362 와인	362 Wine
		363 와인 칵테일, 베르무트 또는 와인 아페리티프	363 Wine cocktail, vermouth or wine aperitif
		364 탄산가스 포화 와인	364 Aerated wine
		365 드라이 와인	365 Dry wine
		366 스위트 와인	366 Sweet wine
		367 과실주	367 Fruit wine
		368 애플 와인	368 Apple wine
		369 사과주	369 Cider
		370 배 와인	370 Pear wine
	371 페리	371 Perry	
	소주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377 증류주	377 Spirit
	위스키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377 증류주	377 Spirit
		381 위스키	381 Whisky
브랜디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377 증류주	377 Spirit	
		378 브랜디	378 Brandy	
		379 과일 브랜디	379 Fruit brandy	
	일반증류주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377 증류주	377 Spirit	
		380 럼	380 Rum	
		382 보드카	382 Vodka	
		383 진	383 Gin	
		384 삼수	384 Samsu	
	리큐르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386 리큐르	386 Liqueur	
		386A 혼성주	s 386A Compounded hard liquor	
	기타 주류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372 채소 와인	372 Vegetable wine	
		373 벌꿀 와인 또는 벌꿀 술	373 Honey wine or mead	
		376 토디	376 Toddy	
	주정	361 알코올음료	361 General standard for alcoholic beverage	
	15.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54 타피오카 또는 카사바	54 Tapioca or cassava
			55 타피오카 가루 또는 타피오카 전분	55 Tapioca flour or tapioca starch
			56 사고야자	56 Sago
57 사고야자 가루			57 Sago flour	
59 커스터드 분말			59 Custard powder	
58 옥수수 가루			58 Corn flour	
밀가루 류		42 밀가루류	42 Flour	
		43 밀가루	43 Wheat flour	
		44 염소 처리 밀가루	44 Chlorinated wheat flour	
		45 글루텐 밀가루	45 Gluten wheat flour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46 단백질 강화 밀가루	46 Protein - increased wheat flour
		47 팽창제 혼합 밀가루	47 Self - raising wheat flour
		48 통밀 밀가루	48 Wholemeal wheat flour
		48A 제빵용밀가루	48A Bread flour
		48B 아타밀가루	48B Atta flour
		61 밀 배아분 또는 밀 배아	61 Wheat germ meal or wheat germ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253 코코넛 밀크	253 Coconut milk
		254 코코넛 크림	254 Coconut cream
		254A 코코넛 크림 농축액	254A Coconut Cream Concentrate
		255 코코넛 크림 분말	255 Coconut cream powder
		256 건조코코넛	256 Dessicated coconut
		258 코코넛 페이스트	258 Coconut paste
		259 땅콩버터	259 Peanut butter
	시리얼류	64 시리얼 포함 곡류가공품	64 Prepared cereal food
	전쌀	64 시리얼 포함 곡류가공품	64 Prepared cereal food
	효소식품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기타 농산가공품	50 도정미	50 Milled rice
		51 쌀가루 또는 분쇄미	51 Rice flour or ground rice
		53 찹쌀가루	53 Glutinous rice flour
		60 으갠 곡물	60 Meal
		62オート밀	62 Oatmeal
		76 맥아	76 Malt
		77 맥아추출물	77 Malt extract
		78 베이커 맥아추출물, 산업용 맥아추출물 또는 베이커 말토오스	78 Baker's malt extract, commercial malt extract or bakers' maltose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0 통조림 채소	220 Canned vegetable
		226 건조 과일	226 Dried fruit
		227 혼합 건조 과일	227 Mixed dried fruit
		228 과일 가공품	228 Fruit product
		222 가수분해 채소단백질 또는 가수분해 식물성단백질	222 Hydrolysed vegetable protein or hydrolysed plant protein
		244 과육	244 Fruit pulp
16. 식육가공품	햄류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148 훈제육	148 Smoked meat
		147 제조육	147 Manufactured meat
		149 통조림 식육	149 Canned meat
		151 다른 식품을 가한 통조림 식육	151 Canned meat with other food
	소시지류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147 제조육	147 Manufactured meat
		151 다른 식품을 가한 통조림 식육	151 Canned meat with other food
	베이컨류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건조저장육류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양념육류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147 제조육	147 Manufactured meat
		151 다른 식품을 가한 통조림 식육	151 Canned meat with other food
	식육추출가공품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151 다른 식품을 가한 통조림 식육	151 Canned meat with other food
	식육함유가공품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146 고기풀	146 Meat paste
		151 다른 식품을 가한 통조림 식육	151 Canned meat with other food
		152 식육 추출물 또는 식육	152 Meat extract or meat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진액	essence
		153 식용 젤라틴	153 Edible gelatin
	포장육	141 식육 또는 신선육	141 Meat or fresh meat
		142 냉장육	142 Chilled meat
		143 냉동육	143 Frozen meat
		144 다진 식육 또는 저민 식육	144 Minced meat or ground meat
		147 제조육	147 Manufactured meat
17. 알가공품류	알가공품	172 전란액	172 Liquid egg
		173 난황액	173 Liquid egg yolk
		174 난백액	174 Liquid egg white
		175 전황분, 난황분 및 난백분	175 Dried egg, dried egg yolk and dried egg white
		176 식품 또는 식품 성분으로서의 알류	176 Reference to egg food or as ingredient in food
	알함유가공품	177 염지란	177 Preserved egg
18. 유가공품	우유류	82 우유, 원유 또는 신선유	82 Milk, raw milk or fresh milk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93 환원유	93 Reconstituted milk
		85 저온 살균 우유	85 Pasteurized milk
		86 멸균 우유	86 Sterilized milk
		87 초고온 처리 우유 또는 UHT 우유	87 Ultra high temperature milk or UHT milk
		가공유류	84 탈지우유, 무지방 우유 또는 탈지유
	89 착향 우유		89 Flavoured milk
	92 재조합유		92 Recombined milk
	96 유당분해우유		96 Lactose hydrolysed milk
	97 치환유		97 Filled milk
	97A 치환유 분말		97A Filled milk powder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산양유	82 우유, 원유 또는 신선유	82 Milk, raw milk or fresh milk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발효유류	113 미생물 배양유 또는 발효유	113 Cultured milk or fermented milk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버터유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105 기(Ghee, 크림화강한향버터)	105 Ghee
	농축유류	94 무당연유 또는 무가당 농축유	94 Evaporated milk or unsweetened condensed milk
		95 가당연유 또는 가당 농축유	95 Condensed milk or sweetened condensed milk
		98 무당 농축 치환유 또는 무가당 농축 치환유	98 Evaporated filled milk or unsweetened condensed filled milk
		99 가당 농축 치환유 또는 가당 농축 치환유	99 Condensed filled milk or sweetened condensed filled milk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유크림류	100 크림 또는 생크림	100 Cream or raw cream
		101 저온 살균 크림	101 Pasteurized cream
		102 환원 크림 또는 생크림	102 Reduced cream or pouring cream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134B 감미 크리머	134B Sweetened creamer
	버터류	103 버터	103 Butter
		104 환원 버터	104 Recombined butter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치즈류	106 치즈	106 Cheese
107 코티지 치즈		107 Cottage cheese	
108 크림 치즈		108 Cream cheese	
109 가공 치즈		109 Processed cheese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110 치즈 페이스트, 치즈 스프레드 또는 치즈 혼합물	110 Cheese paste, cheese spread or cheese mixture	
		111 클럽 치즈 또는 런천 치즈	111 Club cheese or luncheon cheese	
		112 건조 치즈 또는 분말 치즈	112 Dried cheese or powdered cheese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분유류	90 전지분유 또는 전지우유 건조가공품	90 Full cream milk powder or dried full cream milk	
		91 탈지분유, 건조 무지유고형분 또는 지방을 분리한 우유분말	91 Skimmed milk powder, skim milk powder, dried non-fat milk solids or separated milk powder	
		91A 맥아 분유	91A Malted milk powder	
		91B 유아용 조제분유	91B Formulated milk powder for children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유청류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유당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83 유가공품	83 Milk product	
	1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157 수산물가공품	157 Fish product
			162 어묵	162 Fish paste
			163 벨라칸 (말린새우반죽)	163 Belacan
			167 피쉬 볼 또는 피쉬 케이크	167 Fish ball or fish cake
		젓갈류	157 수산물가공품	157 Fish product
158 소금에 절이거나, 식초에 절이거나, 소금으로 간한 수산물			158 Cured, pickled or salted fish	
166 신카록(작은새우젓갈)			166 Cincalok	
164 생선 소스			164 Fish sauce	
166A 굴 소스			166A Oyster sauce	
166B 굴맛 소스			166B Oyster flavoured sauce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169 오탁 우당, 뿌티스 또는 헤코	169 Otak udang, petis or heko
		170 페카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생선)	170 Pekasam
	건포류	157 수산물가공품	157 Fish product
	조미김	157 수산물가공품	157 Fish product
	한천	157 수산물가공품	157 Fish product
	기타 수산물가공품	157 수산물가공품	157 Fish product
		160 가공 수산물	160 Prepared fish
		161 통조림 수산물	161 Canned fish
		159 훈제 수산물	159 Smoked fish
		164 생선 소스	164 Fish sauce
		166A 굴 소스	166A Oyster sauce
	166B 굴맛 소스	166B Oyster flavoured sauce	
	168 수산물 꼬루백 (양파 새우 생선가루가 섞인 튀김과자)	168 Fish keropok	
20. 동물성 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157 수산물가공품	157 Fish product
	근중가공식품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자라가공식품	157 수산물가공품	157 Fish product
	추출가공식품	145 식육가공품	145 Meat product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벌꿀류	130 벌꿀	130 Honey
	로얄젤리류	130 벌꿀	130 Honey
	화분식품	130 벌꿀	130 Honey
22. 즉석식품류	생식류	-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210 신선 채소	210 Fresh vegetable
		212 냉동 채소	212 Frozen vegetable
		223 수프	223 Soup
		224 수프 스톡	224 Soup stock
		225 생과일 및 신선 과일	225 Raw fruit or fresh fruit
	만두류	144 다진 식육 또는 저민 식육	144 Minced meat or ground meat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147 제조육	147 Manufactured meat
		157 수산물가공품	157 Fish product
		63 파스타	63 Pasta
23. 기타식품류	효모식품	-	-
	기타가공품	-	-
24. 그외분류	병통조림식품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0 통조림 채소	220 Canned vegetable
		223 수프	223 Soup
		228 과일 가공품	228 Fruit product
		233 통조림 과일	233 Canned fruit
		234 통조림 과일 칵테일	234 Canned fruit cocktail
		244 과육	244 Fruit pulp
	레토르트식품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0 통조림 채소	220 Canned vegetable
		223 수프	223 Soup
		228 과일 가공품	228 Fruit product
		233 통조림 과일	233 Canned fruit
		234 통조림 과일 칵테일	234 Canned fruit cocktail
		244 과육	244 Fruit pulp
	냉동식품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0 통조림 채소	220 Canned vegetable
		223 수프	223 Soup
		228 과일 가공품	228 Fruit product
		233 통조림 과일	233 Canned fruit
		234 통조림 과일 칵테일	234 Canned fruit cocktail
		244 과육	244 Fruit pulp
식물성 원료	76 맥아	76 Malt	

신식품공전 (한국)		식품규정 1985 (말레이시아)	PART VIII (Malaysia)
분류	식품유형	8편 - 식품에 대한 기준 및 세부 표시 요구사항	STANDARDS AND PARTICULAR LABELLING REQUIREMENTS FOR FOOD
		77 맥아추출물	77 Malt extract
		78 베이커 맥아추출물, 산업용 맥아추출물 또는 베이커 말토오스	78 Baker's malt extract, commercial malt extract or bakers' maltose
		213 채소 가공품	213 Vegetable product
		228 과일 가공품	228 Fruit product
	동물성 원료	-	-
	그 외 분류	79 주석염	79 Cream of tartar
		80 인산염	80 Acid phosphate
		81 베이킹파우더	81 Baking powder
178A 식용 새 둥지		178A Edible birds's nest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 2.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 말레이시아 식품첨가물 규정
  - 말레이시아 보건부 식품안전품질국(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Malaysia)이 담당하고 있으며, 규정 내용은 식품규정 (Food Regulations 1985)에 수록되어 있음
  - 품목별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식품규정 부록(Schedules in Food Act 1983)에 수록되어 있음
  - 식품규정만 보아서는 품목별 식품첨가물 규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록편도 같이 참고해야 함
- 말레이시아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
  - 식품 규정 1985(Food Regulations 1985) 제 5편 '식품첨가물 및 영양강화제'에 "식품첨가물(food additive)"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음
  -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보존성, 질감, 일관성, 외관, 냄새, 맛, 알칼리성 또는 산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 제조, 처리, 묶음, 포장, 운송 또는 저장에 있어서 기술적 기능을 위해 식품 내부 또는 식품에 의도적으로 소량으로 첨가되는 물질, 또는 구성 요소가 되는 부산물을 발생시키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식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한 물질로 정의됨
  - 모든 보존료, 착색제, 향료, 향미증진제, 산화방지제 및 식품개량제를 포함하나 영양강화제, 비의도적인 물질 또는 소금은 포함하지 않음
- 한국 식품첨가물 정의
  - 한국 식품첨가물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 2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



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이전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 한국의 식품첨가물 정의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제시되어 있음<sup>32)</sup>
- 말레이시아 식품첨가물의 범례
  - ① 사용금지 :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식품 유형이나 개별식품 품목은 규격에 명시되어 있음
  - ② GMP 준수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기준이 없는 경우로,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에 따라 사용이 가능함
- 한국 식품 첨가물의 범례
  - ① 일반사용기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는 경우로 식품첨가물 일반 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최소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함
  - ② 사용금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음
- 말레이시아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비사용
  - 식품첨가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든 식품에 첨가할 수 있음
    - 첨가물이 규정에 의해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내에 존재하도록 허용되는 경우,
    - 원료 내의 첨가물의 비율이 해당 성분에 대해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32)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1.jsp](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1.jsp)

- 최종 가공품 중 첨가물의 총 비율이 해당 가공품에 대해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첨가물이 첨가되는 식품이 적절한 기술적 조건 및 건전한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된 경우보다 더 많은 양의 첨가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첨가된 첨가물이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효율적인 기술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 식품의 손상 또는 식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한 방식으로 식품에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서는 안 됨
- 수입, 제조, 광고 또는 판매되는 식품첨가물을 담은 포장의 표시사항에는 (a) "(식품첨가물 종류로) 허용된 식품첨가물(화학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착색료 또는 향료의 경우에는 화학명 대신 해당 식품의 일반명 또는 적절한 명칭으로 명시할 수 있음

### ■ 3. 유해물질 관련 규정

- 말레이시아 유해물질 규정
  - 말레이시아 보건부 식품안전품질국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Malaysia)이 담당하고 있으며, 규정 내용은 식품규정 (Food Regulations 1985)에 수록되어 있음
  - 품목별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식품규정 부록(Schedules in Food Act 1983)에 수록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
  - 식품 규정 1985(Food Regulations 1985) 제 7편 '비의도적인 성분'에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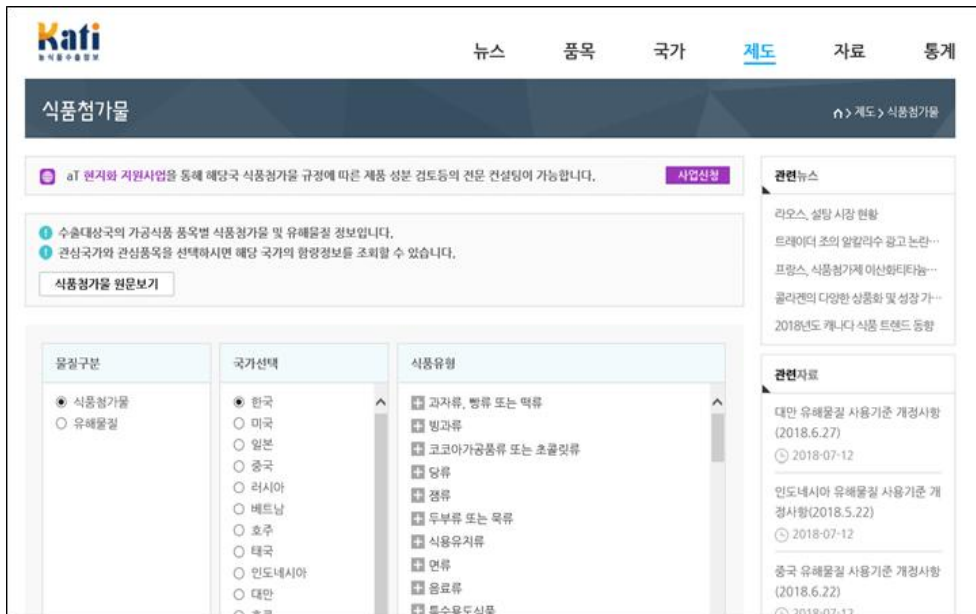
- 식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존재하는 모든 이물질, 외부 물질, 독성, 유독 또는 유해물질로 정의됨
- 금속성 오염물질, 미생물과 그 독소, 잔류 동물용 의약품 및 잔류농약, 기타 오염물질을 포함하지만, 식품첨가물 또는 영양 보충제 또는 본 규정에 의해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
- 한국 유해물질 정의
  - 한국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2조에서는 '유해물질'을 원재료 또는 제조과정 중 오염 또는 잔류의 가능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용매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 및 기능성 식품관련법을 비추어 해석하자면 식품 중 유해물질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여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적 요인으로 간주됨
  - 한국의 유해물질 정의와 기준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제시되어 있음<sup>33)</sup>

#### 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은 aT농수산물수출 지원정보→제도→식품첨가물(<http://www.kati.net/additive/additiveList.do>)를 통해 검색이 가능함

33)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infoMapCodex.do?menu\\_grp=MENU\\_NEW04&menu\\_no=2848](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infoMapCodex.do?menu_grp=MENU_NEW04&menu_no=2848)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14개국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사용기준, 식품유형, 함량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정보는 관심국가와 관심품목을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빙과류,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당류 등을 포함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식품공전을 기준으로 매칭되어 있음



[그림 2-33]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DB 수출지원정보 사이트(aT Kati)

- Kati 홈페이지는 농·식품 수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별도의 아이디가 없어도 홈페이지의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내용에 대한 간단한 검색 결과는 [표 2-12], [표 2-13]과 같음

[표 2-12]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번호	물질	식품 유형	기준	
			한국	일본
1545	acesulfame potassium	유탕면	0.35g/kg 이하	0.35g/kg 이하 (특별용도 표시 허가 또는 승인 받은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음)
1549	5'-deaminase	과자	일반사용기준	일반사용기준
1548	acacia (gum arabic)	포장육	일반사용기준	일반사용기준

[표 2-13] 유해물질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번호	물질	식품 유형	기준	번호	물질	식품 유형	기준
			한국				일본
78	Cadmium (Cd)	포장육	돼지고기, 소고기: 0.05mg/kg 이하, 돼지간, 소간: 0.5mg/kg 이하, 돼지신장, 소신장: 1.0mg/kg 이하	21	Enterobacteriaceae	포장육	불검출
71	Campylobacter jejuni	고추장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 제외),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16	Radiation Irradiation	고추장	0.10 Gy 이하(식품의 제조공정 또는 가공공정에서 그 제조공정 또는 가공공정의 관리를 위해 조사하는

			<p>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n=5, c=0, m=0/25g</p>				<p>경우에 한함, 식품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됨)</p>
64	<p>Clostridium perfringens(일본 .clostridium spp.)</p>	<p>젓갈 류</p>	<p>식육(제조, 가공용 원료 제외),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n=5, c=0, m=0/25g</p>	6	<p>Symphytum(co mfrey)</p>	<p>젓갈 류</p>	<p>불검출</p>



## 제7절

#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1. 식품안전 이슈

- 말레이시아의 식품매개질병의 주요 원인은 비위생적인 식품 처리 과정인데, 50% 정도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MOH, 2007)
  - 예를 들면, 저장이나 재가열 시 적정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들을 들 수 있음 (Beumer and Kusumaningrum, 2003)
-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식품안전 이슈
  - 식당 위생
  - 잔류 동물용 의약품
  - 살충제
  - 식품첨가물 오용 및 남용
  - 진균 독소
  - 무기 오염물
-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식품안전 이슈
  -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 및 기타 물질로부터 화학물질의 전이



- 잔류성 유기 환경오염물질 (다이옥신, PCBs, PAH 등)
- 조리 / 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
- 과민증, 불내성 및 알레르기 반응
- 항생제 내성 미생물
- 기타 이슈
  - 말레이시아 식품표준의 국제 표준과의 조화
  -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국가표준 검토 및 개정
  - 최종 제품에서 프로세스 기반 규제로의 전환
  - 대중의 인식(인지된 위해도)과 과학적 위해도의 차이 해소
  - 국가표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추적
  -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공 방법 및 시험 방법
  - 식품 위해요소의 변화

## ■ 2.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 반입 거부 사례<sup>34)</sup>
  - 말레이시아에서 반입이 거부되는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은 관련 법규 위반이나 오염된 경우에 해당됨
  - 반입 거부의 실행은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에서 진행하며, 해당 건의 말레이시아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만

---

34) 농림축산식품부, aT,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표, 말레이시아, 제5장 부적합 사례에서 발췌, pp. 161-162

약 특정 선적 건에서 위해한 미생물 혹은 박테리아가 발생되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추가적인 검사가 실시될 때까지 해당 건의 반입을 제한함

- 실제로 2015년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는 미국산 갈라(Gala) 사과 및 그라니스미스(Granny Smith) 사과에 대해 반입을 제한한 바 있는데, 이는 해당 사과들의 리스테리아 박테리아(Listeriosis bacteria) 오염이 의심되었기 때문이었음
- 말레이시아에서 가공식품 반입이 거부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입 문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위해한 박테리아 혹은 미생물이 발견된 경우 또는 할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 만약 타 국가의 기관에 의해 특정 제품이 오염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도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 증명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함
- 실제로 2014년 한국 식품업체 (주)동원의 양반 브랜드 전복죽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데, 이는 캐나다 식품검역당국이 해당 제품이 유해한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에 오염되었다고 발표한 결과에 따른 조치였음

### ■ 3. 말레이시아 수출 관련 Q & A

Q. 말레이시아로 가공식품 수출할 때의 주의점은?

말레이시아 수출 시 할랄인증 취득이 필수는 아니나 점유율 상위권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할랄인증을 취득한 상품들임

말레이시아는 전체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이슬람교)이며, 소비자들은 '할랄인증'을 받는 것을 곧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할랄인증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 전반에 해당하지만 주로 식음료 분야에서의 인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Q. 말레이시아로 가공식품 수출 시 어떠한 비관세장벽을 신경 써야 하는지?

말레이시아에는 수입 및 수입허가 등의 비관세 장벽에 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필수 원자재의 거래량 및 말레이시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수입식품 안전 검사 과정을 미리 잘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수입식품 안전 검사는 수입되는 식품이 안전하고 규정을 잘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됨. 주로 식품 수입이 허가되기 전에 문서를 검사하고, 샘플링을 하며, 수입식품 직접 조사를 수입통관 단계에서 시행하고 있음. 이때 말레이시아의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및 기타 관련 사항과 표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수입통관의 지연으로 인해 한국 수입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류가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제품 소비량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말레이시아 수출 시 말레이시아산 원재료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식품 안전 검사 과정이 보다 수월해지는 점이 있음

Q. 말레이시아로의 유제품 수출 가능성과 주의점은?

2015년에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간에 유제품 검역협정을 체결함. 말레이시아로 유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할랄 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 농업부 수의국(DVS)에 제조업체로 등록하면 수출이 가능함. 이때, 구제역 미발생 농장에서 출하한 원유로 제품을 생산했다는 검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Q. 말레이시아의 한국식품 수입바이어들은 어떤 제품을 수입하기 원하는지?

말레이시아에는 이미 한국식당이 400여 개가 있고,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식품 한류 열풍이 강함.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들을 발굴하고 수입하길 희망함

Q. 어떤 제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한국 라면, 스낵류 등이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 인기도 좋은 편임. 이러한 기호식품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유망하다고 생각함

물가상승의 여파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소비는 위축돼있는 상황으로 값비싼 식사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쌀, 파스타 및 면류의 성장률이 높는데, 그 중 인스턴트 면류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스낵류 중 초콜릿 코팅 비스킷의 판매액 증가가 눈에 띄는데, 빼빼로는 지속적인 가격 프로모션으로 판매를 증가시킨 대표적인 예임. 한편,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로 아침식사 대용식으로 사용되는 스낵바의 수요가 늘고 있음



## <참고문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 KOTRA 국가정보 말레이시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 2018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5), 말레이시아 4월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6), 2016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II).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6), 말레이시아 6월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6), 말레이시아 8월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말레이시아 2월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말레이시아 5월 수출현안 및 수입제도 모니터링.
- 한국식품연구원(2016), 말레이시아 검역제도.
- 한국식품연구원(2016), 말레이시아 수입절차.
- 한국식품연구원(2016),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 한국식품연구원(2016), 말레이시아 식품표시.
- 한국식품연구원(2016),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규정.
- 한국식품연구원(2016),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2016),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절차.
- 한국식품연구원(2018), 주요국가 할랄정책 동향.
- Abdul-Mutalib, N.A., Syafinaz, A.N., Sakai, K. and Shirai, Y.(2105), An overview of foodborne illness and food safety in Malaysia, International Food Research Journal, 22(3), 896-901.
-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2018), The Recognised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 & Authorities.
- New, C.Y., Ubong, A., Premarathne, J.M.K.J.K., Thung, T.Y., Lee, E., Chang, W.S., Loo, Y.Y., Kwan, S.Y., Tan, C.W., Kuan, C.H. and Son, R.(2017), Microbiological food safety in Malaysia from the academician's perspective, Food Research. 1(3), 183-202.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6),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Varrative



# 부 록







# 부록 1

## 대한민국 신식품공전 식품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N001-001
		캔디류	N001-002
		추잉껌	N001-003
		빵류	N001-004
		떡류	N001-005
2. 빙과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N002-001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2-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N002-002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2-3. 빙과	빙과	N002-003
2-4. 얼음류	식용얼음	N002-004	
	어업용얼음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N003-001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3-2. 초콜릿류	초콜릿	N003-002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초콜릿가공품	
4. 당류	4-1. 설탕류	설탕	N004-001
		기타설탕	N004-002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N004-003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N004-004
		올리고당가공품	N004-005
	4-4. 포도당	포도당	N004-006
	4-5. 과당류	과당	N004-007
		기타과당	N004-008
	4-6. 엿류	물엿	N004-009
		기타엿	N004-010
		덱스트린	N004-011
	4-7. 당류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N004-012
5. 잼류		잼	N005-001
		기타잼	N005-002
6.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N006-001
		유바	N006-002
		가공두부	N006-003
		묵류	N006-004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콩기름(대두유)	N007-001
		옥수수기름(옥배 유)	N007-00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N007-003
		미강유(현미유)	N007-004
		참기름	N007-005
		추출참깨유	참기름
		들기름	N007-006
		추출들깨유	들기름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N007-007
		해바라기유	N007-008
		목화씨기름(면실 유)	N007-009
땅콩기름(낙화생 유)	N007-010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올리브유	N007-011	
		팜유	N007-012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N007-013	
		고추씨기름	N007-014	
		기타식물성유지	N007-015	
	7-2.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N007-016	
		원료우지		
		식용돈지	N007-017	
		원료돈지		
		기타동물성유지	N007-018	
	7-3. 식용유지가공품	혼합식용유	N007-019	
		향미유	N007-020	
		가공유지	N007-021	
		쇼트닝	N007-022	
		마가린류	N007-023	
		모조치즈	N007-024	
		식물성크림	N007-025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N007-026	
	8. 면류		생면	N008-001
			숙면	N008-002
			건면	N008-003
			유탕면	N008-004
	9. 음료류	9-1. 다류	침출차	N009-001
액상차			N009-002	
고형차			N009-003	
9-2. 커피		커피	N009-004	
9-3.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N009-005	
		과채주스		
	과채음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9-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N009-006
		탄산수	
	9-5. 두유류	원액두유	N009-007
		가공두유	
	9-6.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N009-008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9-7.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N009-009
9-8. 기타음료	혼합음료	N009-010	
	음료베이스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N010-001
		성장기용 조제유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N010-002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N010-003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N010-004
	10-5. 기타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N010-005
	10-6.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환자용식품	N010-006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N010-007	
10-8. 임신·수유부용 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N010-008	
11. 장류		한식메주	N011-001
		개량메주	
		한식간장	N011-002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효소분해간장	N011-003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N011-004
		춘장		N011-005
		청국장		N011-006
		혼합장		N011-007
		기타장류		N011-008
12. 조미식품	12-1. 식초	발효식초	N012-001	
		희석초산		
	12-2. 소스류	소스	N012-002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12-3.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N012-003	
		카레(커리)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N012-004	
		실고추		
	12-5.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N012-005	
		향신료조제품		
	12-6. 식염	천일염	N012-006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3. 절임류 또는 조 림류	13-1. 김치류	김치속	N013-001	
		김치		
	13-2. 절임류	절임식품	N013-002	
		당절임		
	13-3. 조림류	조림류	N013-003	
14. 주류		탁주	N014-001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약주	N014-002
		청주	N014-003
		맥주	N014-004
		과실주	N014-005
		소주	N014-006
		위스키	N014-007
		브랜디	N014-008
		일반증류주	N014-009
		리큐르	N014-010
		기타 주류	N014-011
		주정	N014-012
15. 농산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전분	N015-001
		전분가공품	
	15-2. 밀가루 류	밀가루	N015-002
		영양강화 밀가루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버터	N015-00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N015-004
	15-5. 찌쌀	찌쌀	N015-005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N015-006
	15-7.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N015-007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16. 식육가공품	16-1. 햄류	햄	N016-001
		생햄	
		프레스햄	
	16-2. 소시지류	소시지	N016-002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16-3. 베이컨류	베이컨류	N016-003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6-4.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N016-004
	16-5. 양념육 류	양념육	N016-005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16-6.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N016-006
	16-7. 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N016-007
16-8. 포장육	포장육	N016-008	
17.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전란액	N017-001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17-2.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N017-002	
18. 유가공품	18-1. 우유류	우유	N018-001
		환원유	
	18-2. 가공유류	강화우유	N018-002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18-3. 산양유	산양유	N018-003
	18-4. 발효유 류	발효유	N018-004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18-5. 버터유	버터유	N018-005	
18-6. 농축유 류	농축우유	N018-006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9. 수산가공식품류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8-7. 유크림 류	유크림	N018-007
		가공유크림	
	18-8. 버터류	버터유	N018-008
		가공버터	
		버터오일	
	18-9. 치즈류	자연치즈	N018-009
		가공치즈	
	18-10. 분유류	전지분유	N018-010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18-11. 유청류	유청	N018-011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18-12. 유당	유당	N018-012	
18-13. 유단백가수분 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N018-013	
19-1.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N019-001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19-2. 젓갈류	젓갈	N019-002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N019-003	
	건어포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기타 건포류	
	19-4. 조미김	조미김	N019-004
	19-5. 한천	한천	N019-005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N019-006
20. 동물성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N020-001
		기타동물성가공식품	
	20-2. 곤충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N020-002
	20-3.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N020-003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20-4. 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N020-004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N021-001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21-2. 로얄젤리류	로얄젤리	N021-002
		로얄젤리제품	
21-2. 화분식품	가공화분	N021-003	
	화분함유제품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N022-001
		생식함유제품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N022-002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22-3. 만두류	만두	N022-003	
	만두피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N023-001
	23-2.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N023-002



## 부록 2

### GOVERNMENT REGULATORY AGENCY

#### CONTACTS:

#### (말레이시아 관련 정부기관 연락처)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Director Crop Protection Branch Department of Agriculture 1-3 Floor, WISMA TANI, Jalan Sultan Salahuddin 50632 Kuala Lumpur Tel: +(6-03) 2030-1400/2697-3077 Fax: +(6-03) 2691-3550/2697-7205 [www.doa.gov.my](http://www.doa.gov.my)

Director General of Customs Royal Customs and Excise Headquarters Malaysia Ministry of Finance Complex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enter 62596 Putrajaya. Tel: +(6-03) 8882 2100 Fax: +(6-03) 8889 5899 <http://www.customs.gov.my>

Director Veterinary Public Health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Lot 4G1, Podium Block, Wisma Tani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enter Putrajaya. Tel: + (6-03) 8870-2000 Fax: + (6-03) 8888-2685 [www.dvs.gov.my](http://www.dvs.gov.my)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Lot 36, Jalan Universiti, 46200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Tel: +(6-03) 7956 2924 Fax: +(6-03) 7956 7075 [www.bpfk.gov.my](http://www.bpfk.gov.my)

Director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Malaysia Level 4, Menara Prisma No. 26, Jalan Persiaran Perdana, Presint 3 Pusat Pentadbiran Kerajaan Persekutuan 62675 Wilayah Persekutuan Putrajaya, Malaysia Tel: +(60-3) 8885-0797 Fax: +(60-3) 8885-0790 <http://fsq.moh.gov.my/v6/xs/index.php>

Senior Director (Regulatory) Federal Agricultural Marketing Authority (FAMA)  
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Malaysia FAMA  
Headquarters, Bangunan FAMA Point, Lot 17304 Jalan Persiaran 1, Bandar  
Baru Selayang, 68100 Batu Caves, Selangor. Tel: +(6-03) 3126 2020 Fax:  
+(6-03) 6138 5200 [www.fama.gov.my](http://www.fama.gov.my)

Director General Malaysian Quarantine & Inspection Services Ministry of  
Agriculture & Agro-Based Industry Malaysia Block 4G2, Wisma Tani, 30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enter,  
Putrajaya Tel: +(6-03) 8870-4030 Fax: +(6-03) 8890-2910  
[www.maqis.gov.my](http://www.maqis.gov.my)

# 부록 3

## 말레이시아 세관신고서 No.1 양식

JABATAN KASTAM DIRAJA MALAYSIA /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PENGAKUAN BARANG-BARANG YANG DIMPOR / DECLARATION OF GOODS IMPORTED										Kastam No.1 Pin.9/2002 Customs No.1 Rev.9/2002				
1. Konsainor / Pengeksport (Nama dan Alamat) <i>Consignor / Exporter (Name and Address)</i>					UNTUK KEGUNAAN RASMI / FOR OFFICIAL USE					10. Tarikh dan Waktu Terima <i>Date and Time of Receipt</i>		11. Nombor Pendaftaran / Registration Number		
2. Konsainor / Pengeksport (Nama dan Alamat) <i>Consignee / Importer (Name and Address)</i>					Kod Pengeksport / Importer Code					13. No. Pendaftaran Manifes <i>Manifest Registration No.</i>		14. Pelesenan Duti / Cukai seperti yang diluluskan oleh / Receipt of Duty/Tax as levied authorized by:		
3. Nama dan Alamat Ejen Yang Diberhentikan <i>Name and Address of Authorized Agent</i>					Kod Ejen / Agent Code					15. No. Permit Import / Import Permit No.		16. Tarikh Luput / Expiry Date		
4. Ciri Pengangkutan / Mode of Transport 1. Laut / Sea 2. Keretapi / Rail 3. Jalan Raya / Road 4. Udara / Air					5. Tarikh Import / Date of Import					17. Bayaran bagi barangan akan dibuat kepada: (Negeri) <i>Payment for goods to be made to: (Country)</i>		18. Muka Surat Manifes <i>Manifest Page No.</i>		
6. No. / Nama Kapal / Penerbangan / Kendaraan <i>No. / Name of Vessel / Flight / Conveyance</i>					7. Pelabuhan / Tempat Import <i>Port / Place of Import</i>					19. No. Rujukan CI.5 / CI.3 Reference No.		20. Bil. Mianan atau No. Nota Konsignment <i>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No.</i>		
8. Pelabuhan / Tempat Dimuatkan <i>Port / Place of Loading</i>					9. Melalui (kargo dipindahkan kapal) <i>Via (transhipment cargo only)</i>					21. Layanan Khusus / Special Treatment		22. Insurans / Insurance RM		
20. Tawil dan No. / No. Kontena Marka dan Nis / Container No.					30. Bil. / No.					31. No. dan Jenis Bungkus <i>No. and Type of Packages</i>		32. Perihal Barang (Dokumen berkenaan hendaklah diserahkan) <i>Description of Goods (Relevant documents must be submitted)</i>		
33. Kod Negeri Asal <i>Country of Origin Code</i>					36. Kuantiti mengikut Unit Tarif Kastam <i>Qty. Based on Customs Tariff Unit</i>					37. Nilai (RM) <i>Value (RM)</i>		38. Jumlah / Total		
39. Kadar / Rate					40. Jumlah / Total					41. Kadar / Rate		42. Jumlah / Total		
43. Kadar / Rate					44. Jumlah / Total					45. Kadar / Rate		46. Jumlah / Total		
47. Jumlah / Total					48. Jumlah / Total					49. Jumlah / Total		50. Jumlah / Total		
51. No. Kad Pengalangan / Pasport / I.C. / Passport No.					52. Jawatan / Designation					53. Saya mengesahkan islar ini benar dan lengkap <i>I hereby certify that this declaration is true and complete.</i>				
54. Pelepasan daripada Kawalan Kastam dibenarkan oleh / Release from Customs Control authorized by:					55. Jumlah Amanah Kena Dibayar <i>Total Amount Payable</i>					56. No. Resit Manuskrip (jika berkenaan) <i>Manuscript Receipt No. (if applicable)</i>				
Tarikh / Date					Tandatangan / Signature					Tarikh / Date				
										Pegawai Kastam Yang Hak <i>Proper Officer of Customs</i>				



## 부록 4

# 위생증명요건

### 식품안전품질국 말레이시아 보건부

#### 육류, 육류 내장, 가금육, 가금육 내장, 새우 수입에 필요한 위생증명 지침서

이 지침서는 관련 기관이 위생 증명서를 발행하고 수출/수입업자가 새로운 규정(2005.01.01부터 시행)을 준수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 1. 소개

- 의약품과 의약품 잔여물로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육류, 육류 내장, 가금육, 가금육 내장, 새우의 위생증명 규정을 더 강화할 것이다.
- 이는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이 육류, 육류 내장, 가금육, 가금육 내장, 새우 수입에 적용하는 규정(육류: 말레이시아 수의국 소관 동물건강증명서 / 수산물: 수산개발청 소관 수입허가서)에 추가되는 사항이다.
- 말레이시아는 추가된 규정 사항을 세계무역기구에 통지하였고, 이는 2004년 10월 10일에 세계무역기구 웹페이지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_e.htm#doc\\_meet](http://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_e.htm#doc_meet))에 공개되었다.



## 2. 말레이시아 식품관련 법

- 말레이시아 식품 관리 및 검사 관련법은 다음에 규정되어 있다:
  - (1) 식품법 1983 (법안 281)
  - (2) 식품 규정 1985
- 말레이시아 식품 수입 관련 조항은 식품법 1983, 29조에 제시되어 있다. 이 법과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 식품 규정 40조는 “의약품” 및 “의약품 잔여물”을 정의하며, 이에 의하면 누구도 아래와 같은 금지 의약품이 함유된 식품을 수입, 판매, 노출, 유통해서는 안된다.

BKKM PPI 1/2005

- i. 베타작용제
  - ii. 니트로푸란과 대사산물
  - iii. 클로람페니콜
- 식품법 1983과 식품규정 1985 소프트카피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fsq.moh.gov.my>

## 3. 위생 증명서가 필요한 식품군

- a. 모든 종류의 소 및 버팔로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 b. 모든 종류의 돼지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 c. 모든 종류의 양 및 염소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 d. 모든 종류의 가금류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 e. 소, 돼지, 양 및 염소의 내장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 f. 가금류의 내장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 g. 다른 육류, 내장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 h. 모든 종류의 새우 (껍질 제거한 것 포함)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 i. 모든 종류의 반가공한 새우
- 밀폐용기에 보관된 제품과 상업용으로 소독, 조리, 통조림 포장 과정을 거친 제품은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제품 또한 위생증명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 i. 우유 및 유제품
    - ii. 육류 및 새우가 함유된 시리얼, 밀가루, 녹말가루 혹은 우유 조제용 물질
    - iii. 육류, 내장 혹은 피를 주재료로 만든 소시지 및 유사한 제품 혹은 이를 위한 조제용 물질
    - iv. 가공 식육 혹은 저장된 육류
    - v. 육류 혹은 갑각류 추출물 및 육즙
    - vi. 건조 혹은 저장된 새우
    - vii. 말레이시아를 통해 타국으로 수송 중인 3(1- i) 목록의 제품들
    - viii. 선박 점포 외 다른 목적으로는 판매되지 않는 3(1- i) 목록의 제품들

- 말레이시아 수입을 위해 위생증명이 필요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와 AHTN 관세 코드의 자세한 사항은 각주 A와 B를 참고할 수 있다.

#### 4. 위생 증명서 양식

a. 발행 단체/기관: 수출국의 식품안전기관 혹은 관할관청

b. 위생 증명서 기입 사항:

- 국제식품규격 지침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생 증명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i. 제품/화물 및 브랜드

ii. 수량 (kg)

iii. 화물 식별 번호 혹은 조회 번호 (발행 기관 확인용)

iv. 도축장/도살장 혹은 정육업자의 주소 및 성명

v. 수출업자 주소 및 성명

vi. 수출항

vii. 수입업자 주소 및 성명

viii. 선박명

ix. 위생증명서 발행 담당자 성명, 직함 및 직인

x. 발행일

xi. 위생증명서 발행 관할관청 일련번호 및 직인

xii. 관련 의약품 검출 분석 결과지 1부

xiii. 화물에서 의약품 혹은 의약품 잔여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식품임을 알리는 선언 혹은 진술

- 아래와 같은 선언 혹은 진술을 사용할 수 있다

“언급한 화물이 베타작용제 혹은 니트로푸란과 대사산물 혹은 클로람페니콜을 함유하지 않았으며, 첨부된 연구 결과는 화물에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결과임을 증명한다.”

혹은

“다음 제품들은 베타작용제 혹은 니트로푸란과 대사산물 혹은 클로람페니콜을 함유하지 않음”

xiv. 위생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 분석을 위해 화물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의 수

xv. 분석 방법

xvi. 선언 및 본 조항. i-xv에 적힌 관련 사항이 기입되어 있다면, 육류 및 가공육 수입 과정에서 수의국이 요구하는 동물건강증명서도 위생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용 약품 모니터링 및 감독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수출국에서는 연구 분석결과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모니터링 및 감독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제출하고 말레이시아 보건부 식품안전품질관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분석 매개 변수

- 다음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잔여물 검출 검사는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 및 제품에 적용된다:
  - a. 육류 및 식용 내장에 함유된 베타작용제 및 염분
  - b. 가금육 및 가금류 식용 내장에 함유된 니트로푸란과 대사산물
  - c. 새우에 함유된 클로람페니콜
  - d. 앞서 언급한 제품에서 발견되는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잔여물

## 6. 분석 방법 및 검출 한계

-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검출 검사는 다음 측정 한계치로 검출 한계를 최대한 낮추는 동시에 의약품 잔류물질 성분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 a. 베타작용제와 염분 1.0 µg/kg 혹은 (ppb)\*
    - 클렌뷰터롤
    - 살부타몰
    - 터부탈린
  - b. 니트로푸란과 대사산물 1.0 µg/kg 혹은 (ppb)\*
    - 푸라졸리돈 대사산물 (3-아미노-2옥사졸리디논/AOZ)
    - 푸르알타돈 대사산물 (3-아미노-5모르폴리노메틸-2옥사졸리디논/AMOZ)
    - 니트로푸란토인 대사산물 (1-아미노히단토인/AHD)
    - 니트로푸라존 대사산물 (세미카르바지드/SEM)

- c. 클로람페니콜 및 염분 대사산물 0.3 µg/kg 혹은 (ppb)\*
  - (ppb) – 10억 분율

## 7. 수입 절차

- 세관 신고 후 입항지에서 보건부 담당 공무원에게 유효한 위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8. 시행일

- 2005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입항지에서는 육류, 육류 내장, 가금류, 가금 육 내장, 새우 수입 과정에서 위생 증명서가 필요하다.

## 9.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Tosiah Abdullah

Deputy Director (Import)

Food Safety & Qualit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Aras 4, Menara Prisma

No. 26 Jalan Persiaran Perdana

62675, Pusat Pentadbiran Kerajaan Persekutuan

Wilayah Persekutuan Putrajaya

Email:- tosiahabdullah@moh.gov.my

Tel:- +603-8885 0797 ext 4052

말레이시아 보건부, 식품안전품질관리부장 인가  
2004년 11월 8일

# 부록 5

## 식품 수입 시 추가 준비서류 필요 식품 리스트

Type of Documentation Types of Food and Parameter	Type of Documentation Types of Food and Parameter
<b>a. Health Certificate-HC</b>  -Issued by Competent Authority (CA) of the exporting country	<b>Acid-Hydrolyzed Vegetable Protein (HVP)</b> - 3MCPD
	<b>Edible Meat &amp; Meat Offal</b> • Beta-agonist
	<b>Edible Poultry &amp; Poultry Offal</b> • Nitrofurans & its metabolites
	<b>Shrimps &amp; Prawns</b> • Chloramphenicol  -Declaration / statement of absence of chloramphenicol is not required for "wild caught" shrimps & prawns. -Declaration of "wild caught" shall be indicated on the HC or verified by the CA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he high commission / embassy.
	<b>Crabs</b> • Chloramphenicol  -Declaration / statement of absence of chloramphenicol is not required for "wild caught" crabs.



	-Declaration of "wild caught" shall be indicated on the HC or verified by the CA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he high commission / embassy.
<b>b. Certificate of Analysis-CoA</b>  -Issued by accredited laboratory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CA) of the exporting country	<b>Seaweed &amp; Seaweed product</b> • Inorganic arsenic
	<b>Ceramic ware</b> • Lead and cadmium
<b>c. Health Certificate (HC) &amp; Certificate of Analysis (CoA)</b>  -HC issued by Competent Authority (CA) of the exporting country  -CoA issued by accredited laboratory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CA) of the exporting country	<b>Peanut Butter</b> • Aflatoxin  <b>Groundnut (raw e.g. shelled or de-shelled)</b> • Aflatoxin  <b>*Processed groundnuts (roasted etc in "kernel" form) are exempted from this requirement</b>
	<b>Honey</b> • Chloramphenicol
	<b>1). Cheeses Made From Unpasteurized Milk</b>  <b>2). All Types Of Soft and Semi Soft Cheeses (Whether Made From Pasteurized Or Unpasteurized Milk)</b>  • Listeria Monocytogenes  <b>* Processed cheeses are exempted from this requirement</b>

<p><b>d. License</b></p> <p>-Obtained from the Food Safety &amp; Qualit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Malaysia (MOH) prior to importation</p>	<p><b>Natural Mineral Water and Packaged Drinking Water</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Source of water</b></li></ul>
---	--



부록 6

GUIDELINES ON LABELLING OF  
FOODS AND FOOD INGREDIENTS  
PRODUCED FROM MODERN  
BIOTECHNOLOGY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식재료  
표시사항 규정



## MINISTRY OF HEALTH MALAYSIA

### GUIDELINES ON LABELLING OF FOODS AND F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Regulations 11(3A), 11(6) and 11(7), Food Regulations 1985)

#### 1.0 PURPOSE:

These guidelines were prepared:

- 1.1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s 11(3A), 11(6) and 11(7) of the Food Regulations 1985;
- 1.2 As a guidance to the food industries, consumer and authorised officers under the Food Act 1983;
- 1.3 The Regulations are as follows:

#### **Regulation 11(3A)**

**For the purpose of subregulation (3), the origin of food and f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shall be stated as follows:**

**“gene derived from (common name of such animal)”**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e) and (g), where the ingredients of the food, or the food additives added to such food, are derived from animal, the common name of such animal shall also be stated on the label of that food:*

*Provided that it shall not be necessary to indicate the name of the animal from which the ingredient or food additive is derived if it can be inferred from the appropriate designation of such ingredient of food additive.*

**Regulation 11(6)**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ea) of subregulations (1) and (5), the origin of food and f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shall be stated as follows:**

**“gene derived from (origin)”.**

*(1)(ea) where the food contains an ingredient known to cause hypersensitivity, a statement indicating that the food may cause hypersensitivity;*

*(5)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ea) of subregulation (1), the specific food or ingredients known to cause hypersensitivity are as follows:*

- (a) cereal containing gluten including wheat, rye, barley and oat;*
- (b) nut and nut product including peanut and soybean;*
- (c) fish and fish product;*
- (d) milk and milk product (including lactose); and*
- (e) egg and egg product.*

**Regulation 11(7)**

**Food and f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shall be labelled as follows:**

- (a) in the case of food and food ingredients are composed of or contain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the words “genetically modified (name of the ingredient)” shall appear on the label;**
- (b) in the case of food and food ingredients are produced from, but does not contai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the word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name of the ingredient)” shall appear on the label;**
- (c) for the purpose of paragraphs (a) and (b), in the case of single-ingredient foods, the information shall appear on the principal display panel in close proximity with the name of the food and shall be in not less than 10 point lettering;**
- (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s (a) and (b), in the case multi-ingredient foods, the information shall appear in the list of ingredients immediately following the ingredients; and**

- (e)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d), the statement “contains genetically modified ingredient” shall be stated on the principal display panel in close proximity with the name of the food and shall be in not less than 10 point lettering.

## 2.0 INTERPRETATI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means an organism in which the genetic material has been chang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in a way that it does not occur naturally by multiplication or natural recombination or both.

“Highly refined foods” means food or food ingredient that are highly refined and where the processing removes all novel DNA and/or novel protein.

“Processing aid” means any substance or material, not including apparatus or utensils, and not consumed as a food ingredient by itself, intentionally used in the processing of raw materials, foods or its ingredients, to fulfill a certain technological purpose during treatment or processing and which may result in the non-intentional but unavoidable presence of residues or derivatives in the final product.

## 3.0 REQUIREMENTS OF LABELLING

3.1 The labelling requirements shall only apply to the three (3) main ingredients in the ingredient list.

3.2 Threshold level:

The labelling requirements shall **not apply** to foods which contains, consists of or produced from GMO in a proportion **not more than 3%** of the food ingredients considered individually or food consisting of a single ingredient, provided that this presence is adventitious or technically unavoidable.

3.3 Exemptions:

- Highly refined foods e.g. refined oil, plant sterol, boiled sweet, sugar, corn syrup, honey and dextrin (other than that with \*altered characteristics).

- The following are exempted when novel DNA and/or novel protein is not present in the final food:
  - Processing aids and food additives (e.g. dextrin).
  - Acidic foods (e.g. pickles and vinegar).
  - Salty foods (e.g. soy sauce).
- Food from animals fed with GM animal feed (e.g. meat, milk, eggs).
- Foods produced from fermentation using GMM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not present in the final products (e.g. vitamins, amino acid).
- Foods produced with GM enzyme (e.g. cheese, bakery products produced with amylase).

3.4 For the purpose of requirements 3.1 to 3.3, only those event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Biosafety Board are deemed to be the permitted events for foods and f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Please refer to the list of event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Biosafety Board at <http://www.biosafety.nre.gov.my>:*

*(Home>Country's Decision>Approval for Food, Feed and Processing)*

3.5 Notwithstanding requirements 3.1 to 3.3, no exemption of labelling for foods which contains, consists of or produced from GMO if the gene is derived from animal or substance that may cause hypersensitivity.

3.6 Notwithstanding requirements 3.1 to 3.3, no exemption of labelling for highly refined foods with altered characteristics. \*Altered characteristics mea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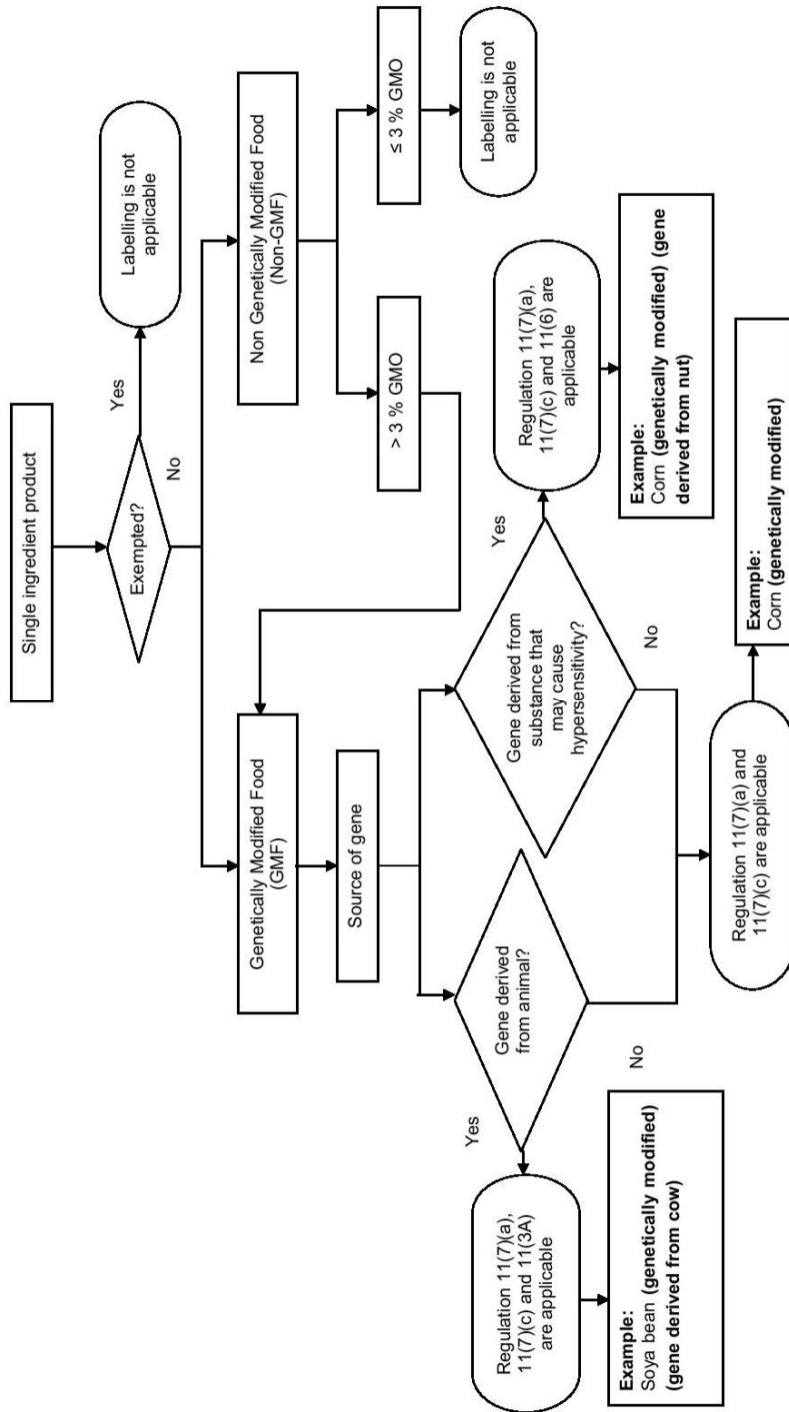
- The genetic modification has resulted in one or more significant composition or nutritional parameters having values outside the normal range of values for existing counterpart food not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
- The level of anti-nutritional factors or natural toxica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mparison to the existing counterpart food not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
- The food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 contains a new factor known to cause an allergic response in particular sections of the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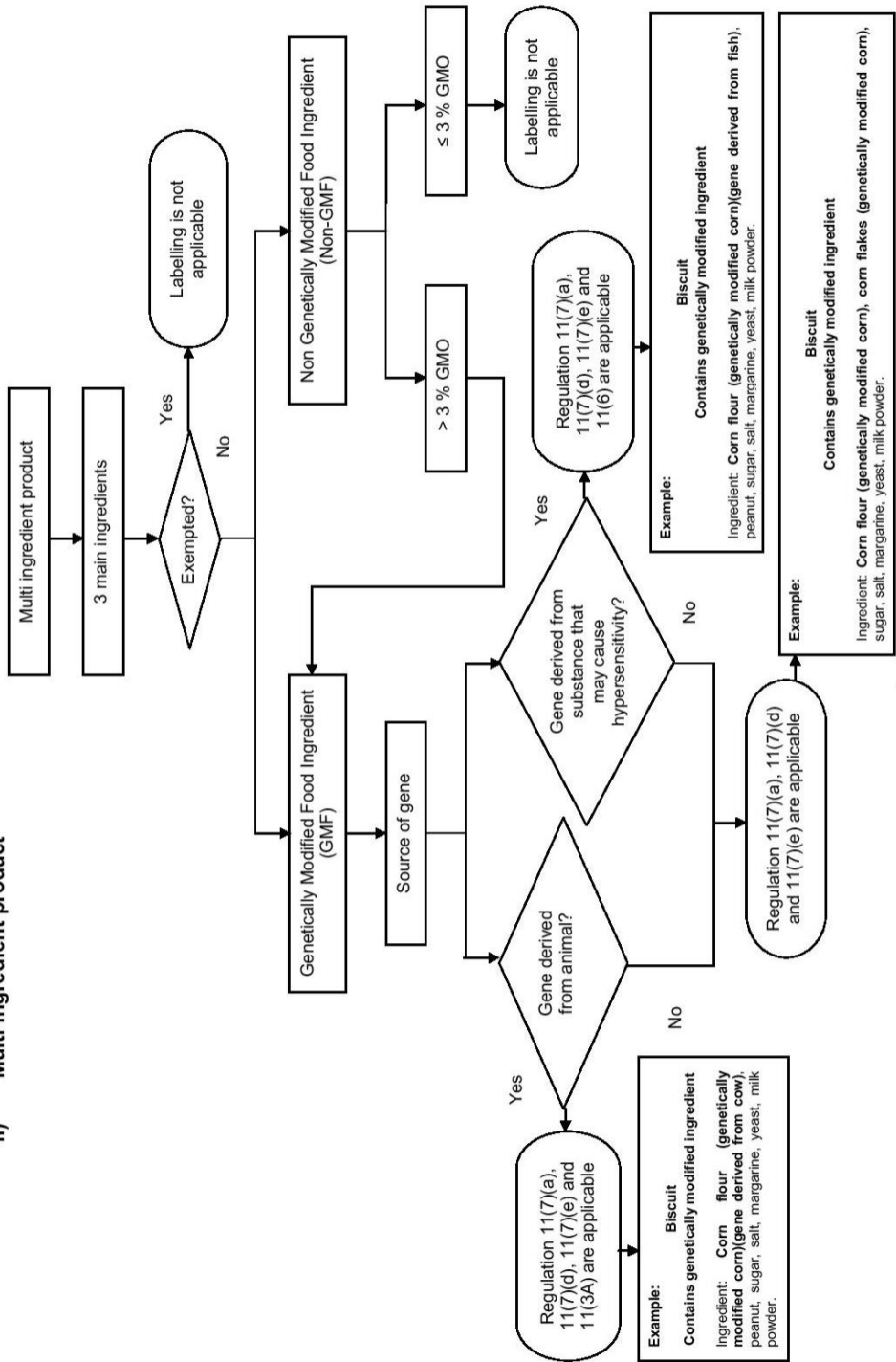
- The intended use of the food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 is different to the existing counterpart food not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
- 3.7 For the purpose of requirements 3.1 to 3.6, if the foods and f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are to be labeled, please refer to section 3.7.1. Please refer to section 3.7.2 for the examples of product label.

3.7.1 Flowchart

i) Single ingredient product



ii) Multi ingredient product



### 3.7.2 Examples of Product Label

#### i) Single ingredient product

<p><b>PQR®</b></p> <p><b>CORN</b></p> <p>(Genetically Modified)</p> <p>Storage instruction: Store in dry place.</p> <p><b>BEST BEFORE: 01/01/2013</b></p> <p>Packed by: PQR Sdn. Bhd. No.1, Jalan 123, Taman Perindustrian PQR, 58000 Kuala Lumpur</p> <p>Net weight: 1kg</p>
---

<p><b>STU®</b></p> <p><b>SOYA BEAN</b></p> <p>(Genetically Modified) (Gene Derived from Cow)</p> <p>Storage instruction: Store in dry place.</p> <p><b>BEST BEFORE: 01/01/2013</b></p> <p>Packed by: MN Sdn. Bhd. No.1, Jalan 123, Taman Perindustrian XY, 58000 Kuala Lumpur</p> <p>Net weight: 1kg</p>
--

ii) **Multi ingredient product**

**FGH®**  
**CORN BREAD**  
**Contains Genetically Modified Ingredient**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 size: 60g  
Serving per package: 12

	Per 100g	Per serving 2 slices (60g)
Energy	252kcal	151kcal
Carbohydrate	48.5g	29.1g
Protein	8.3g	5.0g
Fat	2.4g	1.4g
Calcium	250mg	150mg

Ingredient: Wheat flour, com flour (genetically modified corn), com (genetically modified), yeast, non fat milk, com oil, salt, butter.

Contains permitted preservative.  
Net weight: 360g  
Storage instruction: Store in dry place.

**BEST BEFORE: 01/01/2013**

Manufactured by:  
FGH Sdn. Bhd.  
No. 1, Jalan 123, Taman Perindustrian FGH,  
58000 Kuala Lumpur

**4.0 ENQUIRIES**

For further enquiries, please contact:

Senior Director for Food Safety and Quality  
Ministry of Health Malaysia  
Level 3, Block E7, Parcel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entre  
62590 Putrajaya  
MALAYSIA  
Phone: 603-8883 3888 Fax: 603-8889 3815  
Email: [fsg-division@moh.gov.my](mailto:fsg-division@moh.gov.my)  
Website: <http://fsg.moh.gov.my>

## 부록 7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인증 발급 및 기준 관련서류

1. 할랄인증서 발급 안내(KMF)
2. 할랄관리기준서-예시안
3. 협약서, 할랄원료보증

## 1. 할랄인증서 발급 안내(KMF)

### 할랄 인증서(HALAL CERTIFICATE) 발급 안내(2018년 1월 시행)

※ 접수방법 : 전자우편

※ 접수이메일 : kmfhalal@naver.com

※ 할랄인증신청서 KMF의 정해진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참조)

※ 신규/갱신 접수, 서류, 절차, 양식, 비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 • 할랄 인증 신청 서류

##### 1. 할랄인증 신청서 표지

- 반드시 KMF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대표자 직인과 정확한 회사명, 주소, 상품의 이름을 한국어 및 영어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할랄-할랄인증게시판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증 품목은 품목제조 보고서를 기준으로 구분 합니다.

동일 배합 비와 제조 방식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품목 제조 보고서가 다르면 각기 다른 제품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화장품 및 공산품의 경우: 원료는 모두 같으나 배합비가 다를 경우 다른 품목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배합비가 같고 용량 다른것은 한 품목으로 봄.)

##### 2. 사업자 등록증

##### 3. 공장등록증(할랄 인증 신청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

##### 4. 생산허가서 또는 영업허가서(영업신고증)

##### 5. HACCP, GMP, GHP, ISO 또는 기타 인증서의 사본

##### 6.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 7. 시험성적서

##### 8. 제품 제조공정도

9. 샘플(생산되는 최소단위) 및 제품 이미지

10. 동물성 원료 및 이슬람법에 위배되는 소재 혹은 공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할랄원료보증서 (계시판 양식 참고)

11. 주정미 제조공정에 0.5% 이내로 사용 된 경우 - 완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12. 제조 공정 중 효소를 사용 할 경우-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효소의 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 균주기탁서

13. 할랄 제품 생산에 관한 자체 규정 자료,

14. KMF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실무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수료증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 진행이 가능하며 추후 보완요청을 드립니다.)

15. 원 재료 표기 (실제 사용하는 원료를(표1 참고) 모두 표기) 성분 분석표의 양식은 협의 하에 세부 변형이 가능 합니다.

- 사용된 모든 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1차, 2차 등 모든 원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원료 제조 시 사용된 효소의 기원을 증빙하는 서류와 효소 배양액에 대한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를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하며 배양액에 사용된 원료확인에 따른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알코올(와인, 럼주 등)은 할랄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식품 첨가물로서의 알코올은 제조공정 중 0.5%이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종 제품의 알코올 함유량을 증명하는 분석데이터를 첨부해야 합니다. 용매로 사용한 경우에는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 안전기준에 준하여 사용된 양과 그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취하게 하는 물질 사용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반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인 경우, 완제품에서의 유해성분 검출여부에 관한 분석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합성된 화학물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화합물 원료 또한 이슬람법에 위배되



는 동물성 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소재 관련 첨부 서류

\* 사용 소재가 할랄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1. 사용된 원료의 품목제조보고서
2. 소재의 할랄 인증서(유효기간 확인 후 접수 요망)
3. 거래 명세서, 수입 신고 확인증

\* 사용 소재가 할랄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1. 수입 신고 확인증
2. 사용된 원료의 품목제조보고서
3. 사용된 원료의 제조공정도
4. 제조과정 중 효소를 사용 할 경우,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효소의 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 균주기탁서
5. 사용된 원료의 시험성적서
6. 납품회사의 동물성 원료 및 금지된 공정(예> 방사선 조사)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7. 수입원료 - 사용된 모든 원료의 각각의 수입신고 확인증
8. 국산농수축산물 - 원산지 확인 증명서, 농약, 중금속 시험서
9. 수입 농수축산물 - 원산지 확인 증명서, 농약, 중금속 시험서
10. 국내 수산물 및 일본산 생선품 - 방사능 확인 증명서(소금포함)
11. 주정미 제조공정에 0.5% 이내로 사용 된 경우 - 완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12. 동물성 유래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할랄 인증서를 제출(우유, 달걀 제외)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 국제적으로 Non-GMO 확인서가 필요한 원료의 경우 Non-GMO 확인서

예) 덱스트린 -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Non-GMO 확인서 필요

오일류의 경우 기원 원료의 유전자 분석 시험 성적서만을 인정합니다.

예) 옥수수기름-옥수수를 사용한 데이터만 인정하며 옥수수기름을 사용한 데이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Non-GMO 확인서가 필요한 품목]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대두, 사탕무, 알팔파, 쌀, 치커리, 파파야, 가지, 아마, 토마토, 밀, 멜론, 자두, 호박, 파프리카

-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시험성적서

#### ▪ 주의사항

1.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 후 1년 동안이며 1년 혹은 2년(갱신업체 限)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2. 할랄 인증 후 6개월 후 불시에 중간 모니터링을 행할 수 있으며 할랄 생산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랄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이슬람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할랄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면 중간 모니터링이 대체됩니다. (실사와는 별개)

4. 공장 내에 이슬람 율법에 의해 도살되지 않은 육류 및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동물성 원료가 함께 사용된다면 할랄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5. 원료입고에서부터 공장 내 생산라인(제조, 운송, 저장)은 할랄 전용이어야 하며 다른 생산라인과 분리 되어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6. 식용기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과 이슬람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동물의 기름만을 인정합니다.

7. 인증이후 제출한 서류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즉시 알리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할랄 식품생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랄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8. 할랄 인증서 발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서와 검증받은 분석기관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하청업체에서 공급받는 원료 또한 모두 할랄제품 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10. 할랄 인증을 받은 후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 될 경우 그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1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할랄 인증 부적합 또는 할랄 인증 접수 취소 요청 시 즉시 폐기 됩니다.

• **할랄로 인정하는 동물성 원료**

1. 한국이슬람교는 국내위에서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동물을 이용한 원료나 성분은 일체 할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입 동물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공인된 해외 할랄 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서를 가진 품목에 한하여 할랄 소재로 인정 합니다.

2. 모든 수산물은 처리과정 중, 동물성 원료가 사용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할랄 소재로 인정합니다. 다만, 방사능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할랄 인증서 유효기간을 숙지하시어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와 동시에 첨부된 양식(원재료 데이터 베이스)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 바랍니다.**

- 1. 할랄인증서류일체 이메일 전송**
- 2. 원재료 데이터 베이스 이메일 전송**
- 3. 접수비 및 공장실사비 입금 (아래 협조사항의 4.할랄인증료 참고)**

**위의 3가지 사항이 확인된 후에 서류 검토가 시작됩니다.**

**메일주소 : [kmfhalal@naver.com](mailto:kmfhalal@naver.com)**

※ 갱신의 경우도 신규와 같이 위의 사항이 적용되며 갱신 접수 시 만료된 KMF할랄 인증서

와 실무자 교육수료증 사본을 필히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발급인 경우는 기존 할랄 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분분석표(식약청 또는 시. 군. 구청에서 인증된 서류)는 기초 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과 제품 구성성분에 대한 각각의 요소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4. 할랄인증료 (부가세 10% 별도)**

- 접수비: 1품목당 10만원(서류접수시 선납) / 부가세 별도

- 실사비: 1인기준 서울,경기 20만원 / 충청25만원 / 강원,영남,호남 30만원 / 제주 35만원(서류접수시 선납) / 부가세 별도

실사는 2인1조로 진행됩니다.

- 인증료 : 품목 당 60만원 / 부가세 별도

예시)

1품목 인증 : 접수비10만+실사비(지역별 금액)+1품목 인증료60만

2품목 인증 : 접수비20만+실사비(지역별 금액)+2품목 인증료120만

5품목 인증 : 접수비50만+실사비(지역별 금액)+5품목 인증료300만

※ 서류검토 과정 중 인증이 불가하더라도 접수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5. 비용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또는 종교단체기부금(코드41) 영수증으로 발행 가능하며 중복 발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6. 접수비 및 실사비는 서류 접수시 납부해 주셔야 하며 인증료는 최종 인증 완료 후 청구됩니다.
7.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품의 할랄 인증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 될 경우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최초 납부하신 요금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8. 인증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2년 연장 발급시 <KMF할랄교육 이수, 할랄 전용라인 구축, 무슬림 고용, 2년 인증료 적용(1년 인증료\*2), KMF 인증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함>**
9. 구비서류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리며,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현장 실사는 업체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합니다.
10. 접수비 및 인증료 납부는 다음 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 재단법인 한국 이슬람교 / 026437-04-000994**
11. 모든 발급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12. 할랄 인증을 받을 받은 제품들의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을 보내 주시면 인증회사 및 제품 란에 게시 하겠습니다.

• 실사 방법

1. 회사 소개 및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프레젠테이션)
2. 질문에 대한 답변
3. 참고실사 : 할랄 원료와 비할랄 원료가 함께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별도보관)
4. 제조과정 실사 : 원료 투입부터 포장단계까지 실사 (포장 후 출고까지도 할랄 상 품과 비할랄 상품은 구별 및 별도 보관되어야 합니다.
5. 서류심사 : 제품에 사용된 원료와 제출한 서류의 원료를 비교 검토 합니다.

- 접수방법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 한국이슬람교 할랄위원회 앞

- 기타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02)793-690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1 사용된 원료 표기 방법(성분분석표)

구분	원재료				세부원료				기원	규격	첨부
	원료명	배합비 (%)	효소	용도	1차원료	배합비 (%)	2차원료	배합비 (%)			
1	물엿	10.95022	식물성 아밀라제		옥수수 전분	100			식물-옥수수		품목제 조보고서
2	복합유화중점제	0.19909		유화제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70			식물-팥		할랄인 증서 (IFANCA), 사용된 모든 원료 각각의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수입신고필증
					구아검	2			식물-구아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오스나 트롬	16			식물-나무펠프		
					로커스트 롱검	11			식물-카로브나무		
					카라기난	1			식물-해조		
					소계	100					
3	베론향	0.20090		착향료	베론향 베이스	15.4	Orange Oil	11.73	식물-오렌지		
							Potassium fatty acid	1.45	식물성 기름사용	식품첨가물 공전	
							Ethyl acetate	74.52	식물-파인애플	식품첨가물 공전	
							Maltol	1.5	식물-소나무잎	식품첨가물 공전	
							Ethyl alcohol	10.8	식물-쌀, 보리		
							소계	100			

- 성분 분석표의 양식은 협의 하에 세부 변형이 가능 합니다.

- 회사명, 품목, 원료, 제출서류목록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kmfhalal@daum.net](mailto:kmfhalal@daum.net) )

접수번호	김도자	회사명	품목	원료	제출서류목록	특이사항	발급 가/부
예시)		A주식회사	재래김	김, 옥배유, 천일염	Ex) 사업자등록증, 공정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성분분석표, 방사능시험성적서, Non GMO확인서, 원산지증명서		



## 2. 할랄관리기준서-예시안

---

목 차
-----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원칙
5. 할랄위원회 구성
6. 할랄 일반운영관리기준서
7. 할랄 기록문서

---

## 1. 목 적

본 기준은 HALAL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실무자들에게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본사(할랄제품생산업체: \_\_\_\_\_)에서 생산한 제품(인증제품명 \_\_\_\_\_)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RAM)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확실한 할랄(HALAL)제품을 생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HALAL관리기준서는(이하 “본 기준”라 한다)는 ((생산업체명) \_\_\_\_\_ (이하 “당사”라 칭한다) 당사 공장(공장주소: \_\_\_\_\_, OEM인경우 회사명 \_\_\_\_\_))에서 생산되는 HALAL 제품에 대해 원부자재 및 공정품, 완제품 등의 입고부터 가공, 보관, 출고, 유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RAM)에 관한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관리 적용범위고 한다.

## 3. 용어와 정의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항에서 규정되지 않는 용어와 정의는(재)한국이슬람교 할랄규정(KMF-BS2016)에서 정한 용어와 정의를 우선 적용한다.

### 3.1 하나님 (Allah)

진지전능함과 완전무결함에 관한 모든 속성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 3.2 꾸란(AI-Quran, 이슬람 경전)

아랍어로 예언자 무함마드(PBUH)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꾸란이라하며 총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꾸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관계, 상도덕에 까지 무슬림들의 삶에 지침이 되는 가르침이며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이다.

### 3.3 이슬람 규정

무슬림이 준수해야 할 이슬람 법 샤리아를 포함한 규정을 말한다.

#### 3.3.1 이슬람 법 샤리아(Shariah)

이슬람 법 샤리아는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신법으로 시작되어 시대와 민족,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무슬림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 법 해석 절차에 따라 해석된 샤리아 법은 실정법의 구속력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샤리아 법 해석 단계는 다음의 네 단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3.3.1.1 꾸란(AI-Quran), 예언자 무함마드(PBUH)가 받은 계시서로 이슬람 법을 해석하는데 모범으로서 근원이 된다. 꾸란에 의해 계시된 허용과 금기 규정은 확정된 것이다. 예) 음주,

---

꽤지고기 간음, 살인, 그리고 신앙의 실천 등,

3.3.1.2 하디스(AI-Hadith), 예언자 무함마드의 꾸란에 의거한 말들(Aqwāluhu)과 행동들 (Af'āluhu) 그리고 묵시적으로 인정(Taqirātuhu)한 모든 것을 총 망라하여 기록한 것을 하디스라고 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순나(Sunna)를 행한다고 한다. 꾸란 다음으로 이슬람 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3.3.1.3 이즈마아(AI-Ijmā'a), 동 시대의 이슬람 학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하여 법해석에서 합의(의견일치)를 이룬 것을 말한다.

3.3.1.4 키야스(AI-Qiyās), 꾸란과 하디스, 그리고 이즈마아에서 적합한 법 규정을 도출해 내지 못했을 때 이전 세 가지 단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대의 법학자가 유추 해석하여 만들어 지는 법을 말한다.

#### 3.4 이슬람 법 용어

3.4.1 할랄(Halal, 허용) 행위자에게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허용되는 것으로 행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3.4.2 하람(Haram, 금기) 금기된 사항을 의미하고 행위자에게 처벌이 부과되는 것으로 행하면 벌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 것.

3.4.3 만둡(Mandub, 권장) 권장된 것들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

3.4.4 마크루후(Makruh, 기피사항) 허용은 되나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3.4.5 무바하(Mubaha) 실천 여부와 무관한 것.

#### 3.5 할랄식품

할랄 식품은 이슬람 규정(3.3)에 따라 허용된 식품과 음료 그리고 그 성분재료를 뜻하며 그것이 소비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이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할랄 식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 1) 이슬람법에 따라 비할랄 동물의 부분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제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동물의 부분이나 그 제품 또한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2) 이슬람법에 따라 나지스(Najis, 불결한 것)로 분류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3) 소비하기에 안전하고 독성이 없어야 하며 취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 4) 이슬람법에 따라 나지스(Najis, 불결한 것)에 오염된 장비를 사용하여 조리, 가공, 또는 제조하지 않아야 한다.
  - 5) 이슬람법 샤리아에 사람 신체의 일부 또는 그 파생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6) 식품의 준비, 가공, 포장, 보관 및 유통과정 동안 1), 2), 3), 4) 또는 5)항에 규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모든 식품 또는 이슬람 샤리아에 따라 나지스로 규정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

---

### 3.6 나지스 (Najis, 불결한 것)

3.6.1 이슬람법 샤리아에 따른 나지스는 다음과 같다.

- 1) 개, 돼지 및 그 파생물
  - 2) 비 할랄로 오염된 할랄 식품
  - 3) 비 할랄과 직접 접촉한 할랄 식품
  - 4) 소변, 혈액, 구토물, 고름, 태반 및 배설물, 돼지와 개의 정액 및 난자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구에서 배설되는 모든 액체와 물체
- 주: 개와 돼지를 제외한 동물과 사람의 젖, 정액 및 난자는 나지스가 아니다.
- 5) 찢은 고기 또는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되지 아니한 할랄동물
  - 6) 카므르(Khamr)와 카므르를 함유하거나 혼합된 식품 또는 음료

3.6.2 이슬람 샤리아에 따라 불결한 것은 3가지 유형이 있다.

- 1) 심각한 오염(Najis Mughallazah): 개와 돼지의 배설구로부터 배설되는 모든 액체 및 물체를 포함하여, 개와 돼지로부터 파생된 물질. 이러한 심각한 나지스에 오염된 신체, 의복 및 장비는 반드시 의식에 따라 정화되어야 한다.
- 2) 중간 오염(Najis Mutawassitah): 가벼운 나지스를 말하며 구토물, 고름, 혈액, 알코올 및 찢은 고기와 같이 심각한 나지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오물이다. 냄새, 색깔, 그리고 맛이 더 이상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고 순수한물로 나지스를 정화한다.
- 3) 가벼운 오염(Najis Mukhaffafah): 모유 이외의 다른 음식을 섭취한 적이 없는 2세 이하의 남자 아이의 소변, 이러한 나지스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오물이 묻은 부분에 물을 뿌려 정화한다.

### 3.7 도축

이 인증에서 말하는 도축은 일반적인 도축이 아니라 동물의 방혈과 죽음을 신속하게 촉진하기 위하여 기도과 식도 그리고 경동맥 및 경정맥 모두를 자르는 이슬람법에 따른 도축 행위이다.

### 3.8 선행요건 프로그램(PREPs)

식품 사슬 전체의 각 단계별로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한 식품 또는 음식물의 생산, 취급 및 제공을 위해 적합한 위생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조건과 활동.

### 3.9 우수제조기준(GMP)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생산, 보관, 운반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인원 및 건물 등의 생산 또는 취급 환경을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활동.

---

---

### 3.10 우수위생기준(GHP)

식품 사슬의 각 단계별로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수단.

### 3.11 식품 안전

식품이 그 의도하는 용도에 따라 조리 또는 처리하여 섭취되면 소비자에게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개념.

### 3.12 식품 사슬

식품의 원재료와 이들의 수확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의 섭취에 이르기까지의 생산, 제조·가공, 포장, 보관, 운송, 유통 및 급식 또는 판매를 포함하는 식품 생산 및 공급의 모든 단계.

### 3.13 식품첨가물

식품을 원재료 또는 보조제로 사용하거나 최종 제품으로 가공 또는 조리하기 위하여 처리, 분별, 가공, 생산, 포장, 운송,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품의 보존이나 맛, 향 외관을 개선하거나 용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로서, 영양가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수 있고, 최종 제품에 그 잔류물 또는 유도체가 잔류하거나 잔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물질. 식품첨가물은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

### 3.14 냉장 유통망

식품 사슬을 통해 식품 본래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냉장 유통망에 요구되는 식품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인 일련의 냉장 및 냉동 보관, 운반, 진열, 유통 및 그 관련 활동.

### 3.15 유전자변형 식품(GMF)

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 얻어지는 제품(그리고/ 또는 그 부산물)을 함유하는 음식료품.

### 3.16 수생 동물

물속에서만 살고, 물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 독을 가지고 있거나 취하게 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것을 제외한 모든 수생 동물은 할랄이다.

### 3.17 양서류

땅 위와 물속에서 모두 살 수 있는 동물.

---

---

### 3.18 무스타말(Musta'mal)

사용했던 어떤 것

### 3.19 타스미야(Tasmiyah)

할랄 동물을 도축하는 동안 하나님(Allah)의 이름(Bismillahi)을 언급하는 행위.

### 3.20 타이얌뭉(Taiyammum, 대체세정)

물이 없거나 또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유해한 경우 물을 대신하여 깨끗한 흙에 손을 두드린 후 얼굴과 손을 문질러 부분세정(우두)과 전체세정(구슬)을 대체하는 행위.

### 3.21 카므르(Khamr, 취하게 하는 것)

취하게 하는 알코올류, 와인을 포함한 취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음료

### 3.22 다비하(Dhabihah)

이슬람법에 의한 도축.

### 3.23 무칼라프(Mukallaf, 성인)

사춘기 및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고 이슬람법을 준수해야하는 무슬림.

### 3.24 작업장(생산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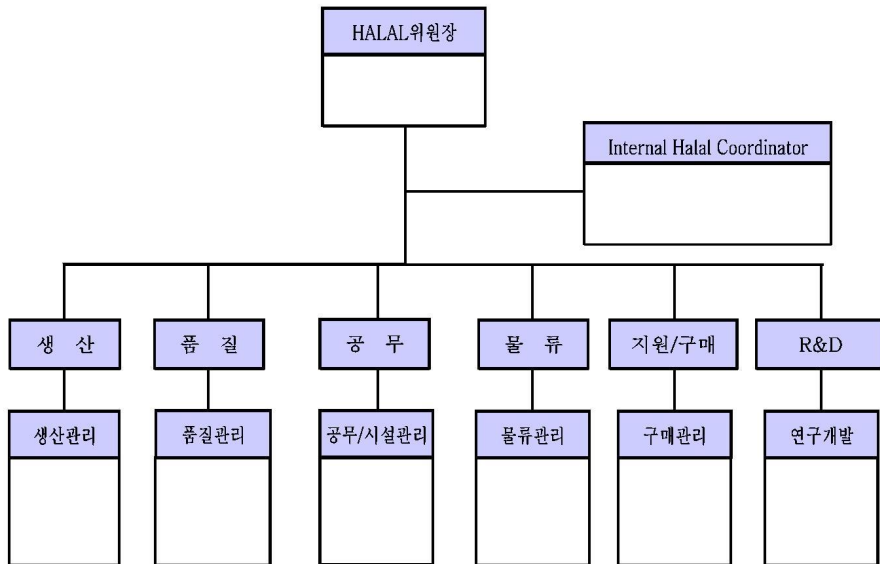
식품의 제조, 가공, 취급, 포장, 보관, 배송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나 구조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포함하여, 영구적이거나 식품 제조와 관련된 모든 건물이나 구조물을 말한다.

---

#### 4. 할랄위원회의 운영원칙(Principle)

- 4.1. 당 사 제품생산공장 할랄 인증 제품 생산라인은 (재)한국이슬람교(KMF)의 할랄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보증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4.2. 할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사항은 이슬람의 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 4.3. 모든 제품은 할랄원료를 기반으로 나지스(오염)와 하람(금기)에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생산관리하고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 5. 내부 할랄위원회의 구성 (Internal Halal Committee)



---

### 5.1. 경영자(생산총괄 임원)의 책임

경영진은 할랄제품을 생산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무슬림 수석인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내부 할랄 통제 시스템 실행의 유효성을 보장할 책임 있는 무슬림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해당 인원들이 할랄 원칙 및 그 적용에 대한 훈련과 할랄 통제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5.2. 할랄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내부할랄위원회는 할랄정책을 수립하고, 할랄보증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정기적인 검증과 교육, 기록관리를 통하여 할랄 제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 (1) 생산공장 할랄위원장

- 1) 할랄 생산을 위한 공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 2) 할랄보증시스템의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 3) 할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 (2) 내부할랄협의체(Internal Halal coordinator)

- 1) KMF할랄실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정규직으로 할랄과 이슬람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않고, 할랄관리기준의 실행과 운영을 객관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 4) 할랄보증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생산관리

- 1) 할랄제품 생산 시 할랄을 보증하기 위한 공정관리를 수립하여야 한다.
- 2) 하랍과 나지스로부터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3) 할랄원료와 그 외 원료를 분리하여 교차오염으로부터 예방관리 하여야 한다.

#### (4) 품질관리

- 1) 원료, 공정, 완제품에 대한 할랄보증을 위한 모니터링 및 검사를 계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2) 신규 원료 및 공정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내부할랄협의체 구성원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할랄관리기준서(Halal Assurance System)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5) 지원/구매관리

- 1) 경제된 할랄원료만 공급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에서 제공되는 원료의 세부사항 변경 시 품질관리와 내부할랄협의체의 즉시 협의하여 할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6) R&D(연구개발)

- 1) 할랄원료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6. 할랄 일반운영관리기준서

6.1. 작업장 및 시설설비

작업장은 제품의 나지스 및 하람으로부터 오염을 통제하고, 의도한 용도에 적합한 가공흐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1) 작업장의 레이아웃은 해충 침입 및 작업 간 교차오염에 대한 방비를 포함하여, 적절한 가공 흐름, 적절한 인원 흐름, 양호한 위생 및 안전 실무를 확보해야 한다.
- (2) 원재료 수령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제품 가공 흐름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3) 작업장은 세척작업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원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4) 적절한 위생관리 시설의 제공 및 유지 되어야 한다.
- (5) 적재 및 하역장은 부패 위험 제품의 효과적인 운송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6) 작업장은 해충의 출몰을 방지하고 또한 잠재적 번식 장소를 제거하기 위한 양호한 상태와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
- (7) 작업장은 인력 및 장비를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 축사 또는 그 가공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되고 양호하게 격리 되어야 한다.
- (8) 도축 및 가공 작업장은 오직 할랄 도축 및 할랄 가공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9) 뼈 분리, 절단, 포장 및 보관은 동일한 도축 동물 해체 가공작업은 도축 작업장과 같은 장소 또는 본 표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관할 당국이 승인한 작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10) 애완 동물 및 기타 동물은 작업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6.2. 기기설비

- (1) 할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장치, 용구, 기계 및 가공 보조물은 세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샤리아 법'에 의해 나지스로 정해진 물질로 만들어지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할랄 식품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2) 심각한 수준의 나지스가 사용되었거나 혹은 접촉된 장치, 용구, 기계 및 가공 보조물은 세척 되어야 하며, 세척방식을 '샤리아 법'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종교적 의식에 의해 세정되어야 한다.

---

---

### 6.3. 일반위생관리

- (1) 위생, 위생관리 및 식품 안전은 할랄 식품 제조에 있어 선결 요건이다. 여기에는 개인위생, 복장, 장치, 용구, 기계 및 가공 보조물 그리고 식품 가공, 제조 및 보관을 위한 작업장을 포함한
- (2) 할랄 제품 제조자는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1) 가공 전에 원재료, 성분 및 포장, 재료를 검사 및 분류해야 한다.
  - 2)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야 한다.
  - 3) 유해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할랄 식품과 분리 시켜야 한다.
  - 4) 기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유리 또는 금속 파편, 먼지, 유해가스나 배기가스 및 불필요한 화합물과 같은 외부 물질에 의해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5) 허용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과도한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 (3) 모든 위생/안전에 관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6.4. 구매 및 원료관리

- (1) 동물은 육상동물과 수상동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모든 육상동물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외하고, 할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 '샤리아 법'에 의거하여 도축하지 않은 동물
    - 2) 심각한 수준의 나지스 동물, 즉 돼지와 개 및 그 부산물
    - 3) 호랑이, 곰, 코끼리, 고양이, 원숭이 등과 같이 먹이를 죽이기 위해 사용되는 길고 날카로운 송곳이나 어금니를 가진 동물
    - 4) 독수리, 부엉이 등과 같은 발톱이 있거나 약탈하는 포식 조류
    - 5) 쥐, 바퀴벌레, 지네, 전갈, 뱀, 말벌 및 기타 유사 동물과 같은 해충 및 독성 물질을 포함하는 동물
    - 6) 이, 벼룩 등과 같이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생물
    - 7) 이슬람에서 살생이 금지된 동물(벌, 딱따구리 등)
    - 8)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지스로 사육된 할랄 가축. 그러나 당나귀나 노새와 같이 '샤리아 법'에 의거하여 식용이 금지된 그 외 동물.
  - (2) 식품은 독이 있거나 중독성이 있거나 또는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식품과 그 산출물 및 파생물은 할랄에 해당한다. 단, 가공되는 동안 독소나 독이 '샤리아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제거된 경우 그 제품은 할랄에 해당한다.
  - (3) 버섯 및 미생물은 독이 있거나 중독성이 있거나 혹은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제외한 모든 중
-

- 
- 류의 버섯 및 미생물(박테리아, 해조류 및 균류)와 그것들의 부산물 및 과생물은 할랄에 해당한다.
- (4) 천연 무기질 및 화학물질은 독이 있거나 중독성이 있거나 또는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제외하고 할랄에 해당한다.
  - (5) 음료는 독이 있거나 중독성이 있거나 또는 건강에 해로운 것을 제외한 모든 물과 음료는 음용으로서 할랄에 해당한다.
  - (6) 유전자 변형식품(GMF)'샤리아 법'에 의해 Non-Halal인 동물의 유전자 물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조직(GMO) 제품 및 그 부산물, 또는 식품과 음료는 할랄이 아니다.
  - (7)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공되는 동안 해당 독소나 독이 '샤리아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제거된 경우 유해 수산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은 할랄에 해당한다.

#### 6.5. 공정관리

- (1) 식품이나 그 성분은 '샤리아 법'에 따른 Non-Halal에 해당하는 동물의 일부나 제품 또는 '샤리아 법'에 의거하여 도축되지 않은 동물의 일부나 제품을 사용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 (2) 식품은 '샤리아 법'에 의해 나지스로 지정된 물질을 극소량이라도 사용하여 가공 되어서는 안 된다.
- (3) 가공 식품이나 그 성분은 안전하게 섭취될 수 있고, 독이 없으며, 중독성이 없고 또한 건강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 (4) 식품은 나지스로 오염되지 않은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여 조리, 가공 또는 제조 되어야 한다.
- (5) 그 제조, 가공, 취급, 포장, 보관, 배급 및 제공 동안 해당 식품은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식품 또는 '샤리아 법'에 의해 나지스로 지정된 다른 물질과 물리적으로 분리 되어야 한다.

#### 6.6. 보관/운반관리

- (1) 보관, 운송, 진열, 판매 및 제공되는 모든 할랄 식품은 할랄 라벨을 부착하여 분류 되어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구분하여 Non-Halal 물질과 섞이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심각한 수준의 나지스 제품은 전용 장소에 보관 관리 되어야 한다.
- (3) 운송 차량은 할랄 식품에 적합한 전용 차량이어야 하고, 위생 상태와 시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6.7. 포장 및 라벨링

- (1) 할랄 식품은 적합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재료는 그 성질에 있어 할랄이어야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1) 샤리아 법에 따라 나지스로 명시된 재료로 포장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서는 안 된다
  - 2) 샤리아 법에 따라 나지스 물질로 오염된 장비를 사용해 준비를 하거나, 가공, 제조를 해서는 안된다.
  - 3) 제조, 가공, 보관, 운송 과정 중에 식품은 앞의 항목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샤리아 법에 의해 나지스로 판명된 그 어떠한 기타 물질과도 물리적으로 분리 되어야 한다.
  - 4) 포장재는 할랄 식품에 독성을 미쳐서는 안 된다.
  - 5) 포장의 디자인, 표시, 로고, 명칭 및 삽화가 샤리아 법의 원칙을 호도하거나 샤리아 법을 저촉해서는 안 된다.
  - (2) 포장과정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또한 위생관리에 적합한 조건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 (3) 제품에 직접 접촉되는 방식의 라벨 부착 재료는 무해해야하며 할랄이어야 한다.
  - (4) 햄, 베이컨, 맥주, 럼주 및 기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Non-Halal 제품의 뒤에 할랄 식품 및 할랄 인공 향미료 표기를 하거나 또는 그 동의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5) 각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게 표기되거나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 (6) 광고는 '샤리아 법'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또한 '샤리아 법'에 반하는 부속 요소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 (7) 법정 요건제품은 그 외 부분에 있어 현재 시행 중인 기타 관련 법적요건을 포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8) 준수본 표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은 본 표준의 상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7. 할랄 기록문서

7.1. 원료 성분분석표 (KMF 제출서류)

7.2. 할랄 관리점검표 (생산일지로 대신할 수 있음)



## 할랄 원료 보증

항 목	내용	답변	
		O	X
1	동물성 원료 및 공정 중 위험 사항을 점검 하였습니다 Ex)동물성 배지, 이온교환 수지, 활성탄 등 기원 물질에 대한 확인		
2	제조 공정 중, 주정의 사용 량은 0.5%를 초과 하지 않습니다. 사용 되는 주정은 화학적 2차 가공이 이루어 진 것이며 GMO 및 허용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	할랄과 비할랄 원료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 하여 관리 하고 있 습니다.		
4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 혹은 이슬람 법이 허용하는 동물의 기름 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원료의 변동이 있을 시, 즉시 통보 하겠습니다.		
6	협력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원료는 할랄입니다.(원료 또한 할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 리 하고 있습니다.)		
7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은 안전 기준에 준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취하게 하는 물질은 사용 하지 않습니다.)		
8	방사능 오염에 대하여 법적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법적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식중독 균에 대하여 법적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GMO원료 사용에 대하여 법적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	중금속에 대하여 법적 기준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13	잔류 농약에 대하여 법적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 201 년 월 일

상호

주소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재) 한국이슬람교 할랄위원회 위원장 귀하







# 2018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말레이시아 종합보고서

---

2018년 12월 인쇄

2018년 12월 발행

편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TEL: (061)931-0709 FAX: (061)931-0799

---

본 책자의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획부(061-931-0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http://www.aTFIS.or.kr))을 통해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알림】

본지에 기재된 분석내용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견해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적 견해와는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책의 내용이나 각종 자료를 복제 및 전제하거나 웹상에 수집 및 게시하는 행위, 판매 등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